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979-01

연 구 보 고 서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구총서 2026-15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

A Study on Judicial Delay and Approaches to Its Management

연구책임자: 박 진 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5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목차

국문 요약 ····· xiii

Abstract ····· xv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Ⅰ.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 ····· 8

Ⅱ. 연구의 방법 ····· 9

1. 연구 방법론 채택하기 ····· 9

2. 문헌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 10

3.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 11

제3절 연구의 구성 ····· 13

제2장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 ····· 17

제1절 서설 ····· 19

제2절 재판지연의 개념 ····· 21

Ⅰ. 재판지연 개념의 사정(射程) ····· 21

1. 내용 ····· 21

2. 법적 성격 ····· 22

3. '신속한 재판'의 의미 ····· 26

4. 얼마나 지연되어야 재판지연인가 ····· 27

5. 선거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 ····· 27

Ⅱ. 재판지연 문제의 가치내재적 특성 ····· 29

Ⅲ. 재판지연 문제의 대응 방식 ····· 32

제3절 재판지연의 현황 ····· 35

Ⅰ. 재판지연의 현 주소 ····· 35

Ⅱ. 사법통계상 재판지연 실태 ····· 36
1. 민사 본안사건 ····· 36
2. 형사 공판사건 ····· 37
3. 2년 초과 사건 수 ····· 39
Ⅲ. 재판지연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 42
1. 재판지연과 관련한 변호사협회 불편 사례 설문조사 (2022) ····· 42
2.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2023) ····· 42
제4절 재판지연 문제 대응의 시도들 ····· 45
Ⅰ. 개요 ····· 45
Ⅱ. 입법적 시도 ····· 45
1.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 45
2. 민사재판 ····· 46
3. 형사재판 ····· 47
4. 판사 임용 및 증원에 관한 법안 ····· 48
Ⅲ. 사법제도의 개선 ····· 49
제5절 소결: 사법통계의 필요성 ····· 51

제3장 재판지연 문제 대응을 위한 일본의 시도 ····· 53

제1절 서설 ····· 55
제2절 사법통계 체계 개선의 배경 ····· 56
Ⅰ. 일본에서의 재판지연 문제 부상 ····· 56
1. 개요 ····· 56
2. 타카다 사건 ····· 57
Ⅱ. 사법개혁의 흐름 ····· 60
1. 개요 ····· 60
2. 사법제도 개혁의 배경 ····· 61
3. 사법제도개혁심의회 ····· 61
4. 민사소송 이용자조사 ····· 62
5. 사법제도개혁 추진법 ····· 65
제3절 신속화법의 제정과 검증검토회의 설치 ····· 69
Ⅰ. 신속화법 ····· 69
1. 제정 배경 ····· 69
2. 주요 내용 ····· 70

Ⅱ. 검증검토회 ····· 74
1. 개요 ····· 74
2. 진행 방식 및 주요 내용 ····· 75
3. 검토회 위원목록 ····· 82
4. 검토회의 주요 내용 ····· 82
제4절 검증보고서 ····· 89
Ⅰ. 개요 ····· 89
Ⅱ. 검증보고서의 법적 근거 및 작성 주체 ····· 89
1. 법적 근거 ····· 89
2. 작성 주체 ····· 90
Ⅲ. 역대 검증보고서의 내용 분석 ····· 90
1. 제1회 ····· 90
2. 제2회 ····· 91
3. 제3회 ····· 92
4. 제4회 ····· 94
5. 제5회 ····· 95
6. 제6회 ····· 95
7. 제7회 ····· 96
8. 제8회 ····· 97
9. 제9회 ····· 98
10. 제10회 ····· 99
Ⅳ. 제11회 검증보고서의 주요 내용 ····· 100
1. 개요 ····· 100
2. 목차 ····· 102
3. 실정조사 ····· 104
4. 재판절차의 디지털화 ····· 106
Ⅴ. 검증보고서의 특징 ····· 108
1. 검증보고서의 서술방식상 특징 ····· 108
2. 검증보고서의 내용상 특징 ····· 110
3. 그 외의 특징 ····· 114
제5절 기타 사법통계 자료 ····· 122
Ⅰ. 개요 ····· 122
Ⅱ. 사법통계연보 및 재판소 데이터북 ····· 122
1. 사법통계연보 ····· 122
2. 재판소 데이터북 ····· 123

3. 담당 조직 ····· 124
4. 서술방식상의 특징 ····· 125
제6절 국내 도입의 대상으로서의 신속화법 체계 ····· 128
Ⅰ. 신속화법 체계의 의의에 관한 평가 ····· 128
1. 개요 ····· 128
2. 신속화법에 관한 평가 ····· 128
3. 검증보고서의 의의 ····· 131
Ⅱ. 신속화법 체계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 ····· 134
1. 개요 ····· 134
2. 민사소송 이용자 설문조사 ····· 135
3. 신속화법 체계를 통한 제도의 개선 ····· 136
4. 평가 ····· 137
Ⅲ. 기반정비법으로서의 신속화법 체계에 관한 평가 ····· 138
Ⅳ. 소결 ····· 141

제4장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과 과제 ····· 143

제1절 서설 ····· 145
제2절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 ····· 146
Ⅰ. 법원 사법통계의 법적 근거 ····· 146
1. 통계 작성의 목적 ····· 146
2. 수집 ····· 146
3. 관리 ····· 147
Ⅱ. 사법통계 조직 ····· 148
1. 개요 ····· 148
2. 사법정보화실 ····· 149
Ⅲ. 사법통계 업무 ····· 151
1. 개요 ····· 151
2. 업무 유형 ····· 151
3. 업무정의 및 상세화 ····· 152
제3절 주요 사법통계 자료 ····· 154
Ⅰ. 사법연감 ····· 154
1. 개요 ····· 154
2. 법적 근거 ····· 155
3. 사법연감 업무 프로세스 ····· 155

4. 2025년도 사법연감의 주요 내용 ····· 157
Ⅱ. 법원통계월보 ····· 166
1. 개요 ····· 166
2. 업무 프로세스 ····· 167
3. 주요 내용 ····· 168
제4절 현행 사법통계 체계의 한계 ····· 176
Ⅰ. 개요 ····· 176
Ⅱ. 사법통계 조직 및 업무에 있어서의 한계 ····· 176
1. 개요 ····· 176
2. 인력 구성과 역할의 한계 ····· 177
3. 업무의 유기적 연계 결여 ····· 177
4. 과도한 수작업 의존 ····· 177
5. 충분한 권한의 부재 ····· 178
Ⅲ. 사법통계의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 ····· 179
1. 개요 ····· 179
2. 수치 데이터 중심 사법통계의 한계 ····· 179
3. 데이터 제공 방식의 한계 ····· 180

제5장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국내 도입방안 ····· 181

제1절 서설 ····· 183
제2절 국내 도입의 범위에 관한 검토 ····· 185
Ⅰ. 신속화법의 도입 여부 ····· 185
Ⅱ. 검증검토회 도입 여부 ····· 186
Ⅲ. 검증보고서 도입 여부 ····· 187
Ⅳ. 소결 ····· 188
제3절 국내 도입의 방안에 관한 검토 ····· 190
Ⅰ. 개요 ····· 190
Ⅱ. 구체적 방안에 관한 검토 ····· 190
1. (가칭)재판 적정 · 신속화에 관한 검증검토회 ····· 190
2. 검증보고서 작성 및 공표 방안 ····· 191
제4절 補論: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중장기적 과제와 개선방안 ····· 195
Ⅰ. 개요 ····· 195
Ⅱ. 사법통계 업무에 관한 과제 및 개선방안 ····· 195

Ⅲ. 단순반복 작업의 자동화 ····· 196
Ⅳ. 경험의 지식화, 지식의 데이터화 필요 ····· 197
제5절 소결 ····· 198

제6장 결론 ····· 201

제1절 주요 내용 ····· 203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 205

참고문헌 ····· 207

별첨 ····· 214

[별첨 1] 2025 사법연감 목차 ····· 216
[별첨 2] 2025 사법연감 세별표 ····· 231
[별첨 3] 검증보고서 목차 ····· 243
[별첨 4] 사법제도개혁추진법 국문번역문 ····· 252
[별첨 5]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국문번역문 ····· 255

표 목차

[표 1]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 ····· 6
[표 2] 연구방법론에 따른 주요 검토대상 ····· 12
[표 3] 민사 본안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 36
[표 4] 형사 공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불구속) ····· 37
[표 5] 평균 처리기간 및 민사본안 사건 수 ····· 39
[표 6] 평균 처리기간 및 형사공판 사건 수 ····· 40
[표 7]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 제개정된 법률의 목록 ····· 67
[표 8] 사건표 관련 개선 지적사항 ····· 77
[표 9] 각 기간별 회의 회차 및 일정 정보 ····· 83
[표 10] 검증검토회 기간별 주요 내용 ····· 87
[표 11] 재판의 신속화의 검증에 관한 검증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 ····· 89
[표 12] 제11회 검증보고서 세목차 ····· 102
[표 13] 재판절차 디지털화의 '3가지 e' ····· 108
[표 14] 민사 · 행정 사건의 신수, 종결, 미제 사건 수
: 모든 재판소 및 최고, 고등 · 지방 · 간이재판소 ····· 126
[표 15] 연도별 답변 비율 추이 ····· 137
[표 16]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 ····· 149
[표 17] 사법연감 업무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 155
[표 18] 2025년도 사법연감의 각 장과 그 내용 ····· 157
[표 19] 사건의 개황 ····· 158
[표 20] 사건의 추이(누년 비교) ····· 160
[표 21]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 ····· 165
[표 22] 법원통계월보의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 167
[표 23] 법원통계월보 주요 내용 ····· 168
[표 24]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 ····· 189
[표 25] 신속화법 체계 국내 도입의 예상 타임라인(2026-2033) ····· 199

그림 목차

[그림 1] 신속화법 체계의 구성 요소 ····· 8
[그림 2] 보고서의 구성과 흐름 ····· 15
[그림 3] 사건의 복잡성과 심리 기간의 관계에 따른 재판 유형의 분류 ····· 32
[그림 4] 삼각난제로서의 재판지연 문제 ····· 34
[그림 5] 민사본안 처리기간 추이 ····· 37
[그림 6] 형사공판 처리기간 추이 ····· 38
[그림 7] 민사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 ····· 40
[그림 8] 형사공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 ····· 41
[그림 9] 변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내용 ····· 44
[그림 10] 소송회피 이유 ····· 63
[그림 11] 재판기간의 평가 ····· 64
[그림 12] 시간 예측 ····· 64
[그림 13] 신속화법의 주요 내용 ····· 73
[그림 14] 개선 이후의 민사 제1심 사건표 ····· 78
[그림 15] 개선 이후의 형사 제1심 사건표 ····· 79
[그림 16] 최고재판소 조직 개요 ····· 81
[그림 17] 검증보고서의 흐름 ····· 102
[그림 18] 일본 재판절차 디지털화의 3단계 ····· 106
[그림 19] 사회적 요인의 검증 결과 일반 ····· 115
[그림 20] 법적 분쟁의 일반 동향 ····· 116
[그림 21] 재판 외 분쟁처리의 전반적 상황 ····· 117
[그림 22] 의료분쟁 ····· 118
[그림 23] 건축 분쟁 ····· 119
[그림 24] 유산 분쟁 ····· 120
[그림 25] '정리'의 개요 ····· 121
[그림 26] 디지털 종합정책실 조직도 ····· 125
[그림 27] 민사 제1심에서의 신규 접수, 처리완료, 미제 사건 추이 ····· 127
[그림 28] 연도별 답변 비율 추이 ····· 137
[그림 29] 법원행정처 조직도 ····· 148
[그림 30] 사법통계 조직 주요 업무 ····· 152
[그림 31] 사법통계팀 세부 업무 ····· 153

[그림 32] 사법연감 웹페이지 화면 ····· 154
[그림 33] 민사본안사건 제1심 처리기간별 분포 ····· 166
[그림 34] 법원통계월보 웹페이지 화면 ····· 173
[그림 35] 민사 제1심 단독 접수 · 처리 · 미제 ····· 174
[그림 36] 재판지연 문제 대시보드 예시 ····· 194

국문 요약

본 보고서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만 그 목적에 다가감에 있어서, 이 글은 해당 문제를 일소하기 위하여 특정 제도개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지연이라는 현상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터 잡아 재판지연이라는 문제가 내재하는 가치의존적 구조를 조명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접근방식과 수단을 취하는지에 방점을 둔다.

우선, 재판지연 문제를 복합적이고 가치의존적인 문제로 재구성한다. 재판은 신속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적정하고 충실하여야 한다. 신속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분쟁해결 기능을 위하여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절대화할 경우 충분한 심리와 절차적 보장을 희생하는 졸속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적정성과 충실성만을 강조하면 재판은 지연될 수 있고, 여기에 비용과 자원의 제약까지 더해지면 재판지연 문제는 신속성, 적정성, 비용이라는 세 요소가 서로 긴장하는 삼각난제의 구조를 띠게 된다. 따라서 재판지연은 단순히 특정 기간을 넘겼는지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조정과 선택을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 서면 재판지연은 일회적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판지연을 관리의 문제로 이해할 때, 사법통계가 비로소 그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게 된다.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 지연이 반복되는지, 어느 절차 단계가 병목이 되는지, 장기미제 사건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누적되는지, 그리고 개선 조치가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통계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단편적인 제도 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유형, 처리기간, 지연 요인, 단계별 소요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 분석할 수 있는 사법통계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재판지연에 대한 대응은 결코 개개인

의 경험이나 감각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구조적 진단과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체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우리 사법통계 체계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법부는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를 통하여 상당한 범위와 분량의 재판 관련 수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통계의 단순 나열에 머무르는 성격이 강하다. 그중에서도 사법연감은 법원과 재판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오랜 기간 동안 수치의 형태로 수록해 온 공식 통계이지만, 재판지연이라는 특정 문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나아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사법통계는 정보의 공개와 축적이라는 관점에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였으나, 정보의 분석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 본 보고서가 제기하는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는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이하 “신속화법”), 재판의 신속화 검증에 관한 검토회(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이하 “검증검토회”), 그리고 재판의 신속화에 관련된 검증에 관한 보고서(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이하 “검증보고서”)라는 세 요소가 서로 결합된, 소위 신속화법 체계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일본은 재판지연을 단순한 사법부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재판지연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사법부의 존립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인 사법개혁의 하나로 민사재판 제1심을 가능한 한 2년 이내에 종결한다는 목표를 담은 신속화법이 제정되었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내에 재판지연의 현황과 원인을 점검하는 검증검토회가 설치되었으며, 그 논의 결과는 2년마다 검증보고서의 형식으로 공표되었다. 즉 신속화법이 문제의식을 제도화하고, 검증검토회가 논의와 분석을 담당하며, 검증보고서가 결과를 공표하고 다시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점에서 일본의 경험은 단순한 입법례라기보다 재판지연을 관리하기 위해 사법부가 어떠한 제도적 그리고 인식론적 기반을 정비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운영체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가 가지는 특징의 하나는 그들이 단순히 평균 심리기간이나 사건 수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 가사, 소년, 건설, 의료 등 분야의 장기화 양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재판 경험을 가지는 법관이나 변호사, 검찰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수치의 이면에 놓인 사회 · 경제 · 문화적 배경까지 추적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들은 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을 재판지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강조하면서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과 보다 효율적인 재판절차를 위한 디지털화와 온라인 분쟁해결 수단까지 검토의 시야에 포함시킴으로써 재판지연 문제의 무대를 법원 내부에 한정시키지 않고 일본 사회 전체로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법통계의 작성과 해석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증거기반 정책결정 과정을 추종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물론 이 체계에 관한 일본 내부의 비판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신속화법의 핵심인 민사재판 제1심을 2년 내 종국시킨다는 목표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안되었고 자칫 신속성에 매몰된 나머지 재판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하물며 일본은 2003년 제정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속화법 체계를 운용해 왔지만 그 결과 민사 제1심의 심리기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신속화법 체계는 그것이 수립 · 운용 그 자체만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가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얻어야 하는 시사점은 그들의 신속화법 체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판지연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신속화법이라는 법률의 제정 자체보다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라는 운영 장치를 중심으로 기능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를 가지리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가칭 '재판 적정 · 신속화에 관한 검증검토회'를 설치하고, 그 논의 결과를 국내 검증보고서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별도의 완결형 보고서를 곧바로 만들기보다, 사법연감에 재판지연 관련 분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관련 조직 · 인력 ·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보고서로 발전시키는 점진적 도입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주제어: 재판지연, 사법통계, 사법연감, 신속화법, 신속화법 체계

Abstract

A Study on Judicial Delay and Approaches to Its Management

Jinyoung, PARK
Research Fellow

This report aims to explore appropriate approaches to addressing the problem of judicial delay. However, rather than proposing a specific institutional reform as a direct solution, the study begins by conceptually analyzing the phenomenon of judicial delay itself and, on that basis, elucidating the value-laden structure inherent in the problem. In doing so, the report adopts Japan as a comparative reference point and focuses on examining how the judiciary there has approached and managed this complex issue.

First, the report reconceptualizes judicial delay as a multidimensional and value-dependent problem. Judicial proceedings must be conducted expeditiously, yet they must also ensure fairness and procedural integrity. While timeliness is essential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and the proper functioning of dispute resolution, an excessive emphasis on speed may undermine thorough fact-finding and procedural safeguards, thereby risking superficial or unjust adjudication. Conversely, an exclusive focus on fairness and completeness may inevitably lead to excessive delays. When constraints of cost and resources are taken into account, judicial delay assumes the structure of a trilemma, in which timeliness, fairness, and resource limitations are in tension with one another. Accordingly, judicial delay should not be understood merely as a matter of whether a certain time threshold has been exceeded; rather, it must be viewed as a structural issue requiring continuous balancing and adjustment among competing values. From this perspective, judicial delay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resolved through a one-off institutional reform, but one that must be continuously monitored and managed.

Once judicial delay is understood as a matter of ongoing management, judicial statistics emerge as an indispensable tool. It is only through the systematic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such as case types, processing times, stages of delay, and underlying causes—that the actual conditions of delay can be properly diagnosed and the effectiveness of reforms can be assessed. Accordingly, this report argues that a rational approach to judicial delay does not lie in fragmented institutional changes, but in the establishment of a statistical framework capable of continuously tracking and analyzing the dynamics of delay. In other words, responses to judicial delay should not be guided by intuition or anecdotal experience, but must be grounded in a data-driven system that enables structural diagnosis and evidence-based policymaking.

Nevertheless, the report expresses skepticism as to whether the current judicial statistical system in Korea is fully capable of fulfilling this role. While the Korean judiciary regularly publishes a considerable volume of statistical data through the Judicial Yearbook and Monthly Court Statistics, these materials largely remain compilations of numerical data rather than analytical tools. In particular, although the Judicial Yearbook has long served as the primary official repository of statistical information on 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it has yet to evolve into a framework capable of systematically analyzing specific policy issues such as judicial delay, identifying their structural causes, and suggesting concrete avenues for reform. In this respect, the current system may be said to have achieved a certain level of success in data accumulation, but still falls short in terms of data utilization and policy applic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report turns to Japan's "expedited trial system" as a case study. Japan has treated judicial delay not merely as an internal administrative issue, but as a broader social concern closely tied to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l system. As part of judicial reform efforts, Japan enacted the Act on Expediting Trials, which sets a general target of concluding first-instance civil proceedings within two years. At the same time, it established a Review Committee under the Supreme Court Secretariat to examine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judicial delay, and introduced a mechanism for publishing the results of such reviews in biennial reports. In this system, the statute provides the formal framework, the Review Committee conducts analysis and deliberation, and the reports disseminate findings and facili-

tate feedback. Thus, the Japanese model represents an integrated system in which legislation, analysis, and disclosure operate in a mutually reinforcing cycle.

A notable feature of this system is that it does not confine itself to presenting aggregate indicators such as average case duration or case volume. Instead, it analyzes patterns of delay across different categories of cases—including civil, family, juvenile, and specialized matters such as medical and construction disputes—and seeks to identify the structural and social factors underlying those patterns. Moreover, it extends its scope beyond courtroom procedures to include pre-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ocial perceptions, and even digital transformation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this sense, the Japanese approach does not reduce judicial delay to a question of procedural inefficiency, but situates it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social dispute resolution structures.

At the same time, the report does not endorse the Japanese system uncritically. In particular, the statutory target of concluding first-instance civil cases within two years, while symbolically significant, has not necessarily led to a substantial reduction in overall case duration. Critics within Japan have questioned whether this benchmark was grounded in sufficient empirical analysis, and have raised concerns that an excessive focus on speed could compromise fairness and procedural integrity. Indeed, the accumulation of review reports over an extended period has not unequivocally demonstrated a dramatic improvement in case processing times. These observations suggest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Japanese system lies less in the statute itself than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continuous process of monitoring, analysis, and feedback.

Based on this analysis, the report argues against the wholesale transplantation of Japan's legislative model into the Korean context. Given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already guarantees the right to a speedy trial, the enactment of a similar statute may risk redundancy or symbolic legislation. Conversely, imposing rigid statutory deadlines could interfere with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discretion necessary for case management. Instead, the report proposes a more selective approach, focusing on the functional elements of the Japanese system —namely, the review committee and the reporting mechanism.

In particular, the report suggests establishing a “Review Committee on Trial Fairness and Efficiency” (tentative title) within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omposed of judges, prosecutors, attorneys, and experts in law and statistics, as well as, where appropriate, representatives from civil society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The committee would be tasked with periodically analyzing judicial data, identifying structural bottlenecks, and proposing policy recommendations. Its findings would be compiled into a domestic equivalent of a review report and publicly disclosed on a regular basis. At an initial stage, such reporting could be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Judicial Yearbook, with a view to gradually developing an independent reporting system as institutional capacity improves.

Beyond its immediate policy implications, the report also highlights a broader methodological shift. It argues that the judiciary must increasingly rely on data-driven and evidence-based approaches in addressing complex institutional challenges. While socio-legal and empirical methods have gained prominence in contemporary legal scholarship, their application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 remains relatively limited. In this regard, the development of a robust judicial statistical system is not merely a technical reform, but a foundational step toward enabling empirical research and informed policymaking. As emphasized in academic and policy discussions, including recent public hearings on judicial reform, reliable and well-structured data is indispensable for accurate diagnosis and effective institutional design.

Finally, the report acknowledges its own limitations. In particular, it has not been able to fully examine the internal operational guidelines and practices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Secretariat, which would be essential for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system in practice. Moreover, the proposed institutional reforms remain at a conceptual level and would require further elaboration in terms of data governance, organizational design,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Nevertheless, the report’s principal contribution lies in reframing judicial delay as a structural and manageable problem and in emphasizing the central role of judicial statistics in addressing it.

In sum, this report argues that judicial delay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simple temporal issue, but as a complex phenomenon arising from the interaction of competing values, re-

source constraints, and evolving case structures. It further suggests that effective responses to such a problem cannot be achieved through isolated legislative measures alone, but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continuous system of monitoring, analysis, disclosure, and feedback. Ultimately, the report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a data-driven governance framework through which the judiciary can diagnose, learn from, and systematically improve its own performance.

Keywords: Judicial Delay, Judicial Statistics, Japan, the Act on Expediting Trials, the Expedited Trial System

제1장

서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지연 문제의 개념, 즉 그것의 외연과 내포를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무엇이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인가를 도출해야 한다. 누군가가 재판이 지연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민사 제1심 종국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한다면 6개월이 걸린 판결은 지연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판결의 선고라는 재판과정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송달, 변론, 증거조사 등 심리의 각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지연된 재판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 재판인지 단언하기 힘들다. 이것이 재판지연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다.

또 다른 요인은 재판지연 문제는 결코 하나의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이라는 과정에 종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의 재판지연 요인을 개선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날뿐더러 오히려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재판지연 문제는 한 번의 제도개선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재판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개개인의 직감에 의존하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까닭에 본 연구는 **사법통계**가 여기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법통계는 사법에 관한 모든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숫자로 기록하는 것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나침판이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법정책과 재판제도는 반드시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하기에 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법통계를 살펴봐야 한다.[1] 다시 말하자면,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이 가치들을 실현해야

1) 물론, 재판에 있어서의 신속과 공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에 그것이 완벽히 통계수치로 환원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마땅하지만 이를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함에 있어서는 사법통계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우리 사법부는 사법통계 체계의 구축의 일환으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최초의 사법연감은 1954년도에 발간되었으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그 이후 1976년도에 이르러서야 다시금 발간되었고, 이것이 사실상의 초판이라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우리 사법연감은 약 50년의 세월 동안 법원의 거의 모든 정보를 수치로 수록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사법연감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형식이나 내용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왕왕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연감이 단순 통계의 나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판의 핵심 가치인 신속성과 공정성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 체계를 세련(洗練)할 필요성이 크다.[2)]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판지연이라는 문제가 진지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한 동시에 이를 사법통계라는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사법부가 떠안고 있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돌파구로 삼고자 한다.[3)]

II. 연구의 필요성

적절한 사법통계 체계의 정립은 두 가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주창된다.

첫 번째 필요성은 일반론적 차원에서 법원의 존재 이유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주지하듯이 법원은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원에 의한 법적 분쟁의 해결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과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2)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제4장에서 국내 사법통계 체계를 살펴보고 상술한다. 일단은, 김두얼 · 유형웅,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김두얼 · 정필문, "법원 업무의 현황과 과제", 법경제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4). 다만, 위 연구에서의 비판이 모두 적확한 것은 아님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예컨대 위 보고서는 항소율을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추산하지만,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3) 일본의 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에서도 거듭 제기된 바 있다. 박미영, "'재판 신속화' 일본사법제도 벤치마킹해야", 법률신문 (2020. 12. 21.); 차기현, "일본 '재판신속화'의 실질은 항소심 기간 단축", 법률신문 (2023. 9. 24.); 김자현, "'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 동아일보 (2023. 8. 24.) 등.

비용이 소요된다면, 그것은 법원에게 맡겨진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법(司法)이라는 분쟁해결 방법의 한 축에 심각한 기능적 우려가 발생한 것이며, 단순히 사법부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운용의 대원칙 중 하나인 법의 지배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4]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자원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법원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제약 아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하는 만큼,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사법통계이다.

다른 한편, 두 번째 필요성은 보다 실천적 차원에서 나타난다. 법원이 맞닥뜨린 재판지연이라는 난제의 해결이 바로 그것이다. 재판지연 문제의 해소는 법원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과제이다.[5] 그럼에도 그 중요성과 심각성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국내의 법조계 및 학계에서도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6] 대표적으로 2024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지연 문제는 **재판외 요인**과 **재판내 요인**으로 그 원인을 구분할 수 있며,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7]

---

4) 재판지연 문제가 비단 현대에서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으로는, 김용섭,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법률신문 (2022. 8. 15.). 또한 재판지연이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도 왕왕 발생한다는 지적으로는, Tom R. Tyler, “The Quality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Outcomes: Measurement Problems and Possibilities”, 419 Denver Law Review (1989) 참조.

5) 조상희, “사법행정가로서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일감법학 제27호 (2014), 564-565면.

6)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찾을 수 있다. 공진성,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기본법상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독일 입법례와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116권 (2025); 박용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이론과 실무 – 미국법상 동 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2024); 손인혁,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재판부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40권 제3호 (2024); 김성규, “형사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와 그 시사점”,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2024); 정한중,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소송법적 구제방안 – 대법원 2021도16798 사건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2022); 김주상, “소송지연의 방지책”, 사법논집 20집 (1989); 가재환, “소송지연의 해소책”, 사법연구자료 5집 (1978); 이병용, “소송지연과 신속한 재판”, 사법행정 20권 12호 (1979); 홍명성, “소송지연의 원인과 대책”, 사법행정 12권 11호 (1971); 채수인, “소송지연에 관한 통계상의 고찰”, 법정 23권 4호 (1968) 등.

7)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4).

[표 1]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

재판외 요인	재판내 요인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의 증가	잦은 인사이동,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빈번한 재판부 교체
변호사 수의 급증	목표 사건처리건수(선고건수)의 하향
미미한 법관 증원	적시제출주의 불준수와 변론 속행
법관의 노령화	변론 · 공판의 집중 실패와 기일의 변경 · 연기 · 추후지정의 통제 미흡
법조일원화(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 실시)	민사 · 형사재판의 신속절차 부재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사법행정권의 소극적 행사	
코로나19 사태	

다만, 재판지연은 위 표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그 원인을 명쾌하게 꼬집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이 문제는 재판절차 내부에 존재하는 요인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에서 사법부가 놓인 정치 · 사회 · 경제적 여건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의료 · 과학기술 · 외교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 기존에는 법적 문제화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새로운 법리와 문언의 해석 · 적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소위, 어려운 사건(hard case)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 있다.[8] 나아가 가치관의 극단화로 인한 정치의 사법화 경향이 증폭되면서 재판지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9]

8) 이근아, ""의료 감정 때문에 하세월"…대법원, 재판 지연 해소 획기적 대책 내놓는다", 한국일보 (2025. 2. 1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21611120003052 (2026. 7. 1. 최종확인); 강민우 · 박준형, "과학으로 접근하는 美 법 · 규제로 옭아매는 韓", 매일경제 (2024. 11. 29.), https://www.mk.co.kr/news/society/11181864 (2026. 7. 1. 최종확인); 박진영,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7. 23.). 한편 새로운 법리와 해석 · 적용이 종종 등장하는 사례로는 환경분야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홍식, "환경법 소묘 –환경법의 원리, 실제, 방법론에 관한 실험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2호 (2000).

9) 중앙일보, "말로는 "신속한 재판" 이재명 대표, 행동으론 지연 꼼수" (2025. 2. 6.); 윤지원 · 김나연, "윤석열 '재판 지연 작전' 펼치나", 경향신문 (2025. 1. 26.); 황윤기 · 한주홍, "1심만 39회 윤미향 재판 4년여만에 끝…'지연된 정의' 비판도", 연합뉴스 (2024. 11. 14.); 심우삼, "나경원 1심만 6년째…"국힘, 야당 재판지연 비판할 자격 있나"", 한겨레 (2025. 1. 15.) 등의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재판지연 문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아쉽게도 재판지연이 발생하는 원인과 정도,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는 구체적 분야 등에 관한 명확한 진단이 가능할지에 관해서는 선뜻 긍정하기 어렵다. 이 단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선방안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음에도 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범과 도그마틱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을 넘어, 적어도 사법제도 및 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는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비롯한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사회과학이 가지는 실증주의(positivism)적 특성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험에 터 잡은 어림짐작이 아닌,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동시에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0] 그리고 이는 적절한 사법통계 체계의 정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를 증폭시키는 중핵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0) 법학과 사회과학의 분야적 비교에 관한 연구로는, 이철우,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2006), 60-61면.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방식의 필요성은, 山本和彦 · 川山泰弘 · 榎本光宏 · 相澤眞木 · 中尾正信,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とデジタル世代につなぐ理念 ―民事訴訟を中心に―", 判例タイムズ No.1517 (2024. 4.) 참조.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노력들, 그 중에서도 **신속화법 체계**를 검토한다. 이 체계는,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이하, "신속화법")과 이를 기반으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설립 · 운영되는 **재판의 신속화 검증에 관한 검토회**(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이하, "검증검토회"),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공개하는 **재판의 신속화에 관련된 검증에 관한 보고서**(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이하, "검증보고서")를 포괄한다.[11] 본 연구는 각각을 별도로 검토함과 동시에 신속화법 체계 자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림 1] 신속화법 체계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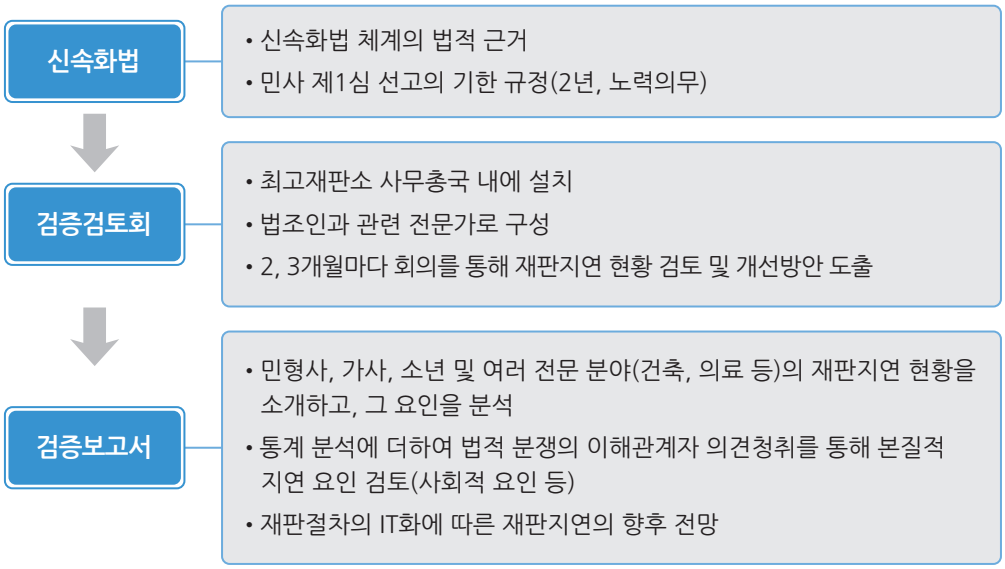

11) 본 보고서는 이 세 가지가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라 간주하며, 향후 **신속화법 체계**라 칭한다. 이하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신속화법 체계는 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재판지연 문제는 비단 우리와 일본에 한정되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임에 틀림이 없지만,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을뿐더러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진취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가 상당하리라 기대된다. 물론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삼기 위해선 그들의 재판지연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견해는 ―적어도 본 보고서의 의의에 비추어보면―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사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사건를 다루지만 보다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고 한들, 이 보고서는 그 원인이 되는 특정 재판 관련 제도나 절차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사법부가 놓인 여러 여건 속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사법통계 체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지연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사법통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우리와 일본의 특정 제도가 어느 정도의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였나에 관한 검토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보다, 일본이 사법통계를 활용하여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한 사법통계 체계 전반의 개선을 동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으로 다가오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단순히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사법통계를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는지 살펴보고, 그로부터 얻어진 시사점을 우리의 사법통계 체계에 직접 적용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1. 연구 방법론 채택하기

이 연구는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를 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과 의의를 검토하여 평가한 후, 해당 체계를 국내에 도입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구체적 범위와 방안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의의로 삼는다. 그렇다면 본 연구는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라는 특정 제도의 맥락과 배경, 내용, 그리고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사례연구**(case study)의 방법론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이 방법론은 특정 사건 · 제도 · 조직 등 구체적 대상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이유나 방법을 탐색하는데 용이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례를 깊이 이해하거나 다른 사례와 비교하는 등 2차적 단계로 나아가기도 적합하기 때문이다.[12)]

2. 문헌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사례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서 일본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내 사법통계 체계를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사법통계 시스템과 관련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신속화법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는 신속화법,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 각각에 관한 문헌이 포함된다. 특히 신속화법의 경우는 일본의 사법개혁의 일환에서 출발한 논의이자 결과물인만큼 당시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사법개혁의 배경과 흐름, 나아가 결과물로서의 신속화법에 관하여 당시의 입법자료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검증검토회는 신속화법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25년 10월까지 총 74회 회의가 진행되었고 각 회의마다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최고재판소 웹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13)] 이 자료들은 본 보고서의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검증보고서는 2005년 7월에 제1회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매 2년마다 7월에 차기 보고서를 공개하여 최신으로는 2023년에 제11회를 기록하고 있다.[14)] 이와 더불어 일본 학계 및 실무계에서 신속화법 체계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도 풍부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속화법 체계가 일본에서의 재판지연 문제의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에서의 견해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검토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겠다.

다른 한편 국내의 사법통계 체계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12) 이원석,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의 특성", 질적연구 제21권 제2호 (2020), 89면.

13) 最高裁判所,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https://www.courts.go.jp/saikosai/iinkai/zinsokuka_kentoukai/index.html (2026. 7. 1. 최종확인).

14) 지금까지의 일정에 2025년 7월에 제12회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0월 2일에 개최된 제74회 검증검토회에서 실정조사가 종료되는 2026년 7월경에 제75회 검증검토회를 개최한다고 소개한 만큼 검증보고서의 발간 역시 이에 맞추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最高裁判所, 第7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2025), 15면.

단순히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도입의 무대이자 토양이 되는 국내의 사법통계 체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사법연감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사법연감의 주요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하여, 일본의 검증보고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사법연감의 내용과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법통계 관련 업무와 조직 등 체계 전반을 살펴본다.

3.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한 이유로, 이 연구는 단순 문헌조사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15] 검증검토회와 사법연감과 같은 결과물은 실제 그것이 발간되기까지의 과정에 존재하는 제도와 조직, 그리고 규칙에 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에 더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 대한 대면 · 비대면 인터뷰를 추가하여 연구의 설득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검증검토회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그 결과물인 검증보고서의 발간 주체가 되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담당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속화법 체계의 핵심이 되는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에 관한 최고재판소 내부의 절차나 규칙,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검증검토회의 실질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좌장인 야마모토 카즈히코(山本和彦) 쥬오대학교(中央大学) 로스쿨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추가하여 검증검토회의 진행방식 그리고 그 진정한 의의 및 한계에 관한 함의를 제공받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전술하였듯이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에 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의 나카오 마사노부(中尾正信) 변호사이다. 본 연구는 해당 인물의 견해를 청취하여 신속화법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반영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의 사법통계 체계에 관한 비(非)문서적 정보가 필수적인 바, 대법원 사법정보화실 소속으로 사법연감 및 사법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5) 질적 연구방법론의 분야에서는 특정 사례가 완전히 독립된 경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게 된 맥락과 유관 제도 및 조직 등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암묵지(暗默知) 또는 경험적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등의 방법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원석,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의 특성”, 질적연구 제21권 제2호 (2020), 90면.

이처럼,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해당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비롯한 질적 연구를 함께 활용하여 보고서 내용의 의의를 더욱 굳건히 함과 동시에 보다 실천적인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2] 연구방법론에 따른 주요 검토대상

유형	주요 검토 대상	
	한국	일본
양적 검토	• 사법연감 • 사법통계월보 •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등	• 신속화법 내용 및 입법 관련 자료 • 검증검토회 회의록 및 검증보고서 •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등
질적 검토	• 사법정보화실 신유정 사무관	• 나카오 마사노부 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검증검토회 참석자) • 쥬오대학교 야마모토 카즈히코 교수(검증검토회 좌장) • 와타히키 토모코 판사(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기획법관)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필요성, 범위, 그리고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서론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왜 재판지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그 중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제2장은 이후 재판지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반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주로 재판지연의 개념과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국내에서의 해결 시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재판지연 문제가 하나의 제도 개선으로 일소(一掃)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무수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임을 조명한다. 그러므로 해당 문제의 **해결**이 아닌 **관리**의 관점에서 사법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제3장은 본격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어떠한 배경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사법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포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노력의무이긴 하지만 민사 제1심 판결의 선고 기한을 규정한 신속화법은 상당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진 정치적 · 사회적 요인을 면밀히 살펴본다. 또한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 관련 통계의 분석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일본은 검증검토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조계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재판의 지연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의 방식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라는 형식으로 2년마다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벤치마크한다고 하면, 선결되어야 하는 의문은 그것이 실제 일본에서의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로 연결되었는지에 관한 평가일 것이다. 또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증보고서의 발간을 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어떠한 조직과 절차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닌게 아니라 일본은 검증보고서 외에도 우리의 사법연감에 해당하는 사법통계연보도 별도로 발간하기 때문에 신속화법 체계만의 의의를 두드러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가 가지는 진정한 의의를 모색하고, 이를 우리 사법통계 체계 및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시사점으로 삼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논의는 우리의 현행 사법통계 체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국내의 사법통계에는 어떠한 자료가 있으며 이를 발간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제4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사법연감과 사법통계월보를 발간하지만 그 대부분이 단순한 수치 통계의 나열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재판지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 상태로부터 재판지연 문제의 관리를 위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과제가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선 논의에 터 잡아, 제5장은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의 국내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다. 특히 전술한 신속화법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신속화법,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를 각각 어느 수준까지 도입할 것인지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사법통계 체계가 나아가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와 방향을 보론으로나마 덧붙여 보고서의 실질적 함의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6장은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 보고서의 구성과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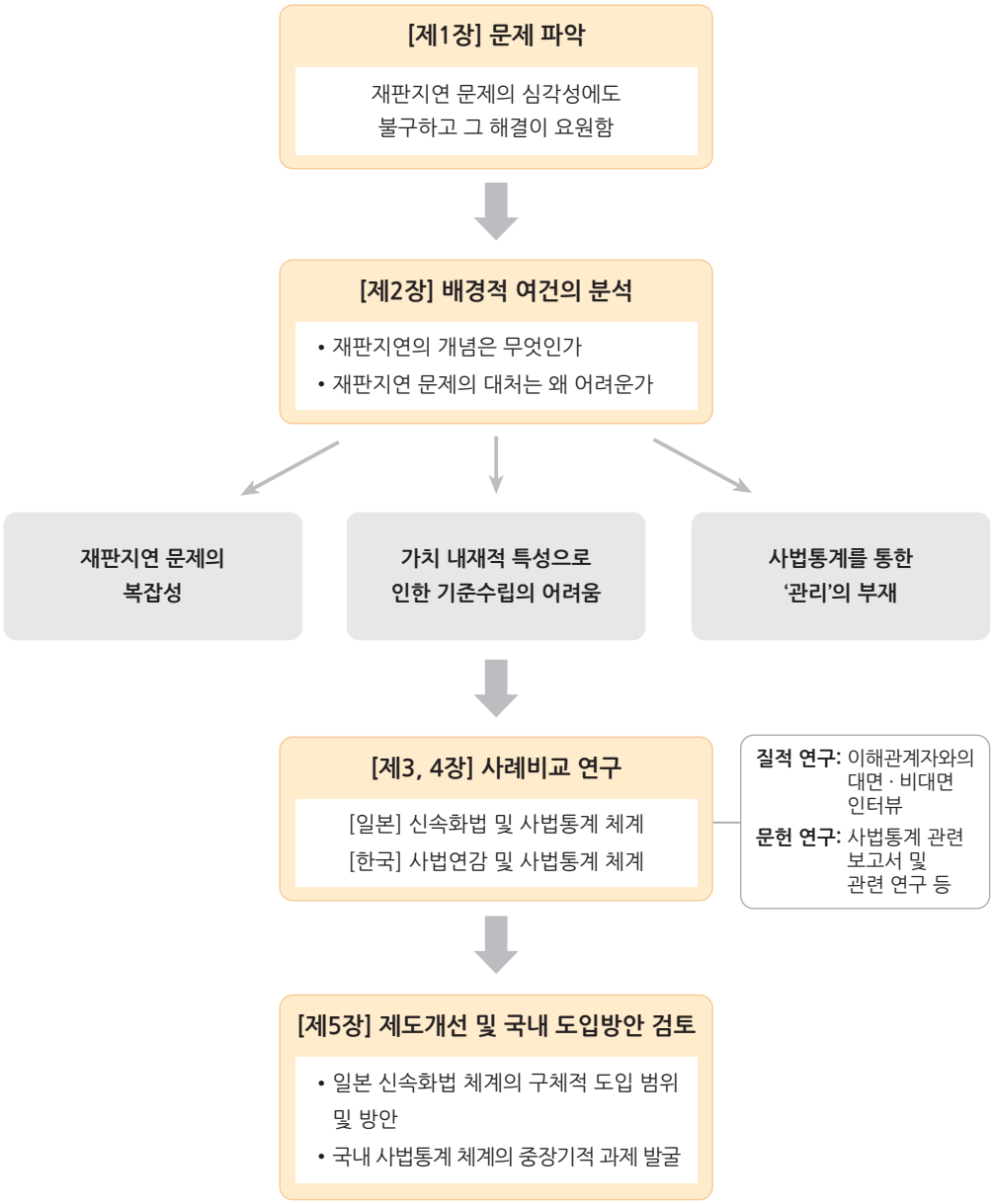

제2장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서설

이 장에서는 재판지연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몇 가지 검토를 수행한다. 무엇보다 재판지연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지연 문제는 우리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쟁점의 하나이다.[16] 이는 재판 실무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주제이므로,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7] 다만 두 영역에서 제기되는 재판지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그것의 존재와 정도, 그리고 지연된 재판에 대한 구제, 나아가 문제의 해결 방안에 몰두되어 있을 뿐, **재판지연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쏟고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재판지연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고자 시도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어느 정도 지연되어야 재판지연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논자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연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해야지만 이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현상임에도 말이다. 10시 5분에 도착해야 할 예정인 기차가 10시 30분에 도착했다면 이는 25분의 지연을 의미하고, 설사 10시 6분에 도착했다고 한들 1분이 지연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10시 5분을 넘겨 10시 10분에 도착하던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지만 비로소 도착시간이 신속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재판이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재판이 지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어떠한 판결을 두고 그것이 당사자의 이익과 권리, 나아가서는 공익을 심사숙고하여 내려진 신중한 재판인지 혹은 단순히 절차적으로 지연된 재판인지의 여부는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16) 이보라, "3년째 재판 지연…애끓는 해고 노동자는 생계 잃고 암까지 걸려", 경향신문 (2024. 3. 5.), https://www.khan.co.kr/article/202403051520001 (2026. 7. 1. 최종확인); 방극렬, "민사 1심에 평균 437일… '지연된 정의'가 국민들 분노 불렀다", 조선일보 (2025. 1. 2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25/BRHUUCQQKRDR3N6MFVWWVH4CY4/ (2026. 7. 1. 최종확인).

17) 이종민, "얽히고설킨 재판 지연… "법관증원 · 상고제 개선으로 풀어야"", 세계일보 (2023. 9. 27.),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26519640 (2026. 7. 1. 최종확인); 이근아, ""의료 감정 때문에 하세월"…대법원, 재판 지연 해소 획기적 대책 내놓는다", 한국일보 (2025. 2. 1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21611120003052 (2026. 7. 1. 최종확인);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4).

두고 재판의 지연이라 평할 수 있을까.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여기서의 '재판'이 제1심의 선고를 의미하는지 혹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선고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요컨대, **재판지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느 기준에 비추어 지연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심급의 선고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설사 기준이 마련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의 유일한 정답이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에서는 제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를 두고 이를 재판지연이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최종심이 내려지기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도 지연된 재판이라 칭하지 않을 수도 있다.[18)]

이처럼 재판지연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재판지연 문제의 개념을 탐구하여 재판지연 문제의 기준점을 발굴하고자 시도하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개별 법률도 다수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결과 결정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자료를 검토하여 재판지연 개념의 경계를 획정짓고, 그 개념을 엿보고자 한다(제2절). 아울러 국내에서 재판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현상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판지연 문제의 현황(제3절)과 그 해결을 위한 시도들(제4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법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을 맺고자 한다(제5절).

18) 후술하는 재판지연 문제의 가치내재적 특성이 이 문제적 상황을 더욱 증폭시키곤 한다.

제2절 재판지연의 개념

I. 재판지연 개념의 사정(射程)

1. 내용

우리는 헌법 제27조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재판지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207조는 '소 제기 후 5개월 이내의 선고'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는 형사 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아예 선거범의 재판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2. 법적 성격

위 헌법과 법률은 재판지연의 기준과 준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그것이 구체적인 권리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바라본다. 예컨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법적 성격을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사건의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특정 기간(6개월, 4개월, 180일 등)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의 기간을 한정한 위 조항들은 모두 훈시적 규정이라 설시하였다.[19]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2042490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건의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특정 기간(6개월, 4개월, 180일 등)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조항은 모두 훈시규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심리에 필요한 기간이란, 구체적 사건에서의 복잡성과 쟁점의 난이도, 중요성, 재판의 진행 경과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인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이 기한을 미리 예측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사건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역시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19) 판결문의 인용에서 추가된 강조 및 밑줄은 모두 저자에 의한 것이며, 이하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결론을 찾아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구체적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복잡성, 법률적 및 헌법적 쟁점의 난이도와 중요성,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방을 통한 소송진행의 경과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제반여건(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의 총계, 그중 우선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수, 인적 · 물적 시설 등)의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심판기간을 미리 예측하여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나아가,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함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으로부터 판결의 기한내 선고라는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노력의무에 그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들 수 있다**. 이 법규정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판결의 선고를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 처분취소사건들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러나 이 법규정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이고, 법원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위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의 선고가 위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법규정외에는 청구인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신속한 판결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법률상의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규정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바, 원심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거나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7조 등은 모두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전원재판부 결정[각하]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결정과 판결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심판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20) 물론 이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3항이 훈시규정이 아닌, 구체적 의무성을 지닌다고 본 견해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재판관 김종대와 재판관 조대현 모두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 헌법 조항의 의무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예측가능성을 저하시켜 법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획일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헌법재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오히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에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률적인 심판기간을 한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기관이 개별사건마다 재판의 공정 및 적정과 신속의 요청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을 도모하는 가운데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조대현 재판관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강제규정의 문언을 사용하고,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특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나 방침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중략)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에 제재를 과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규범력이 없다거나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지키기 어렵고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결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될 우려가 있다.

김종대 재판관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문언상 명백한 의무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이를 훈시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을 전환시키고 규범수범자인 헌법재판소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법률해석의 문언적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성격상 규범수신자인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을 함에 있어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 결정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게 심판기간의 준수에 대한 어떠한 강제성도 갖지 아니한 단순한 임의적 재량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법 제38조 단서에서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법 제28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의 보정기간은 심판대상조항 상의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강제규범적 성격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인 위 본문규정을 처음부터 훈시규정으로 본다면 무의미하게 위 단서규정이나 법 제28조 제4항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개별 사안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에 핵심적 사안이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현실과 괴리되어 불합리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 조항 자체에 문제점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특정 개별사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 할 것이고, 향후 다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종국결정의 선고가 180일을 넘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록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 · 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신속한 재판'의 의미

유사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도 다루기도 하였다. 즉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실체적 권리가 가능한 한 적정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여기서의 **신속**의 의미는 얼마나 빨라졌는가는 단순히 심리기간 자체가 단축되었는가 또는 특정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가에 의존하지 않고, 재판절차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가도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재판지연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기한을 염두에 둘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다.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4헌마93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집행절차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실체적 권리가 가능한 한 적정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권리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사법행위는 권리보호 또는 분쟁해결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 해결의 시간적 단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얼마나 지연되어야 재판지연인가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연의 의미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이 설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다시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심리기간이 소요되어야 마땅한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에는 법치주의의 이념상 본질적 요소인 동시에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재판의 공정 및 적법절차의 요청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 내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신속한 재판'이라 함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5. 선거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

선거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신속성을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삼는다. 선거재판의 경우 그 절차가 지연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당선인이 장기간 공직을 수행하여 민의가 왜곡되거나 정당하게 당선된 공직자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실제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제목하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각 심급별로 법정 재판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선거범 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서도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22]

21) 박영욱,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6), 24-25면.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선거소송에서 신속한 심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신속성은 단순히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가를 의미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는가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보충의견)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 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 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

22) 다만,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도3558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1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34 판결 등 참조). [박영욱,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6), 25면에서 재인용].

II. 재판지연 문제의 가치내재적 특성

앞서 재판지연 문제를 개념짓기 위하여 이에 관한 실정법과 판결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지연된 재판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사건의 다양성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심리기간에 대한 일률적 기준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에 관하여 한 발 더 들어가 살펴보자.

재판지연의 기준 수립이 어려운 배경은 그것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침해되는 가치는 무엇이며, 재판지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그 속의 내재된 또 다른 가치는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언제까지나 요원한 난제로 남을 것이다.

재판 결과가 신속하게 내려져 분쟁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 당사자가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경시할 수 없고, 그것이야말로 재판의 최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율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되는 형사재판은, 절차적 적정성과 방어권 보장이 재판의 핵심적 가치로 기능하는바, 단지 신속한 결론 도출만을 이유로 이를 희생할 수는 없다.[23] 법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이 울부짖듯이 기계적인 법률과 법원칙의 적용을 통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접근은, 자칫 사건의 구체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 판단에 그칠 위험을 내포한다. 오히려 판단 과정에서의 숙고와 일정한 지체는 정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부합하는 판단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24] 따라서 재판의 신속성은 독자적 가치라기보다, 적정한 절차와 공정한 심리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상대적 가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실현의 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

23) 하태훈,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법치국가이념", 안암법학 제7권 (1998), 149면; 박용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이론과 실무 – 미국법상 동 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2024), 218면.

24) 정영지, "형사재판에서 법적 판단의 시간성에 대한 소고", 법조 제74권 제4호 (2025), 157–158면. [재판의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재판부가 사실관계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사건의 구체적인 요구를 배제할 위험이 존재한다. 법률과 법원칙에 기계적으로 입각하여 사건에 즉각적이고 수단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 앞에서 충분히 망설이고,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지금'의 구체적 맥락에 머무른 채 사건을 음미하는 태도는 정의를 회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이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재판에서 법관이 '멈춤'과 '느림'의 감각을 수용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재판지연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는 없다. 절차적 적정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재판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는 오히려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재판의 장기화는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재판은 신속성과 적정성이라는 두 가치가 긴장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긴장은 재판지연 문제를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충하는 가치 간의 조정 문제**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25]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재판은 단순히 빠른 재판이 아니라, 적정한 절차를 전제로 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 다시 말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기간 내에 종결되는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이 발생한다면, 그 지연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인 규명과 제도적 대응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26]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재판의 지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재판의 이해관계인, 더 나아가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의 관점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재판이 사회 전체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 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지연 여부에 관한 평가는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어떠한 수준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기대하는가라는 문제와 분리하여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대변한다. 일본은 재판지연 문제를 단순한 사법부 내부의 사건관리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실제로

---

25)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4), 4–5면; 정영지, "형사재판에서 법적 판단의 시간성에 대한 소고", 법조 제74권 제4호 (2025), 156면. [이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여 법적 안정성과 사법 처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하는 규정으로, 분쟁이 미확정의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을 종결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서 재판의 '지연', '지체', '불확정'은 '신속', '합리적 기간', '법적 안정성'과 대비된다.**]. 이 논지는 신속한 재판과 재판의 지연이 그 속에 내재한 가치의 문제임을 함의한다.

26) 실제 우리 대법원도 신속, 공정, 적정, 지연과 같은 표현보다 **적시처리**와 같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사건에 따라 보다 짧은 심리기간을 요하는 사건과 보다 긴 기간을 요하는 사건이 공존하므로, 이를 간과하고 심리기간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함의를 엿볼 수 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기간 내의 재판을 요구하는 권리로 바라본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결정]. 유사한 맥락에서, 정영지, "형사재판에서 법적 판단의 시간성에 대한 소고", 법조 제74권 제4호 (2025), 158면. [전략적 시간성의 재량이 반드시 사법부를 권력 기계로 환원시키는 반법치적 경향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고의 전환이 가능한 지점이다. 그렇다면 **전략적 시간성의 구사는 일률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무언가로서가 아니라, 사안의 구체성과 개별적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荒木伸怡, 迅速な裁判を受ける権利, 成文堂 (1993), 288–289면 참조.

그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주체가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재판부가 어떤 사안에 관하여 지연 여부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단의 결과와 내용이 일반 국민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7] 일본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통하여 심리기간의 목표를 명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형성하려는 입법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재판의 지연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일반 국민의 추상적 기대에만 맡길 수도 없다. 재판의 신속성에 관한 국민적 기준은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되지만, 개별 사건에서 요구되는 심리의 밀도와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결국 당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법관의 전문적 판단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지연의 판단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관점이 제시하는 외적 기준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관의 관점이 제공하는 내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재판지연의 개념은 국민의 기대와 법관의 전문적 판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다시 재판지연의 개념으로 돌아가면,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지연된 재판이란 그에 상응하는 복잡성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 기대되는 범위를 넘어선 심리기간이 소요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아래와 같이 뚜렷한 비례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건의 복잡성을 계량화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심리기간을 사전에 상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재판이 얼마나 복잡하며,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결국 당해 사건의 심리를 직접 진행하는 법관이 가장 밀도 있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판단 역시 재판의 상대방이자 이용자인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둘러싼 가치의 긴장과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7)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4), 5면.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신속하지 못한 재판을 참아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법관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 기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림 3] 사건의 복잡성과 심리 기간의 관계에 따른 재판 유형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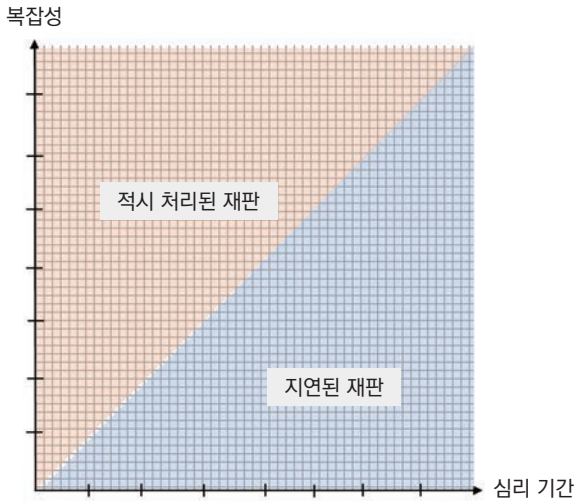

III. 재판지연 문제의 대응 방식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재판지연에 관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란 사실상 어렵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이를 재판지연이라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단일하고 확정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재판지연 문제 내부에 다양한 가치가 중층적으로 내재해 있고, 바로 그 점이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라면, 재판지연이 단순히 시간의 장단(長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충하는 가치들의 조정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은 재판지연이라는 개념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방식을 선택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은 서로 동일한 가치척도로 통약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하나를 자명하게 우월한 대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단일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28] 예컨

28) 가치의 통약불능성과 비교불능성에 관해서는,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의 규범학(I)",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163, 167-168면. [가치의 통약불능성이 가지는 의미는, 위와 같이 '무엇이 권리인가'의 문제에서보다 '무엇이 公益인가'의 문제에서 더 크다 (...) 가치의 다원성은, "우리가 사

대 재판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건 처리기간에 관한 통계를 정교하게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일선 법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건관리와 문서작성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나아가 사건 처리기간의 목표나 상한을 법률 등에 명시하여 일정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29]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각각 신속성과 적정성, 사법의 독립, 예측가능성, 행정비용 등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차원 위에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신속성과 적정성을 함께 제고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30] 그러나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법관 증원을 비롯하여 재판지연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은 경제성이라는 변수를 현저히 확대하지 않거나 적어도 점진적으로만 증가시키는 조건 아래에서, 신속성과 적정성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로 귀착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즉 재판지연 문제는 적정성, 신속성,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세 요소가 서로 긴장하고 충돌하는, 이른바 **삼각난제**(trilemma)의 구조를 띤다고 할 수 있다.[31]

물, 사건, 그리고 관계를, 어떤 더 크고 더 포괄적인 하나의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중함"을 의미한다. 반면 통약불능성은, 그런 가치들이 "하나의 잣대로 평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가치를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통약불능성은, 인간이 동일한 사물, 사건, 관계 등을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방식, 즉 '가치판단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는 신속한 재판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수준의 기간 내에 결론이 내려지는 재판이라 정리하려 해도,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수준의 기간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이 여전히 잔존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한 하나의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그 문제의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무엇으로 하여금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수준의 기간 내에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하는가에 관한 해결방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일한 정답이 없음을 떠올리게 한다.

29) 이재홍, "재판지연 해결을 위한 노력들", 법률신문 (2024. 2. 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426 (2026. 7. 1. 최종확인); 공성윤, "판사들 쥐어짜도 안 나올 재판 지연 해결책, 여기 다 있습니다", 시사저널 (2024. 5. 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336 (2026. 7. 1. 최종확인); 김자현, "'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 "獨-日처럼 신속 재판 입법 필요"", 동아일보 (2023. 8. 2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4/120836313/1 (2026. 7. 1. 최종확인).

30) 연합뉴스, "올해 80명 늘어난 법관 하급심 집중배치…재판지연 개선될까" (2026. 2. 13.),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154900004 (2026. 7. 1. 최종확인).

31) 김두얼,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9-10면.

[그림 4] 삼각난제로서의 재판지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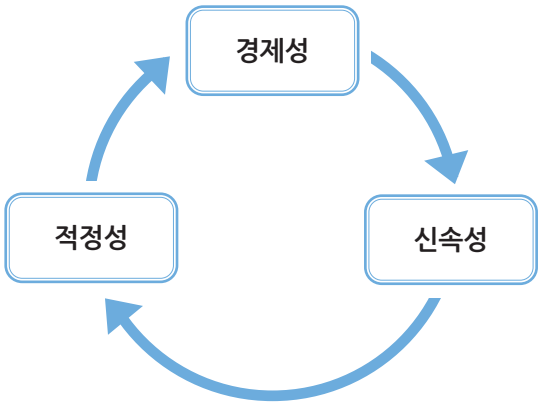

이러한 삼각난제는 결코 하나의 정책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해결 그 자체가 요원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 난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다. 즉 현재 난제의 강화나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문제의 관리자가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법원에 제기되는 사건들이 어떠한 종류의 것들이며, 그것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지, 만약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등의 정보는 모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을 때에만 수집 ·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32)]

32) 위와 같은 취지는, 김두얼,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3면 참조.

제3절 재판지연의 현황

I. 재판지연의 현 주소

재판지연에 관한 국내 통계는 여러 연구 등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금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33] 더욱이 이 연구는 재판지연 문제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의 일본의 검증보고서를 비롯한 사법통계 체계에 대한 검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가에 관한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평균 처리기간**이다. 민사본안과 형사공판사건에서 재판, 특히 제1심 판결이 내려진 평균 처리기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판결 선고 기간이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재판지연 여부를 엿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재판지연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변호사, 검사 및 소송 당사자, 그리고 법률 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그 현황을 개별적으로나마 확인하고자 한다.

33) 대표적으로,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4).

II. 사법통계상 재판지연 실태

1. 민사 본안사건[34)]

[표 3] 민사 본안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연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합의	단독	소액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	단독 (소액포함)
2014	252.3	160.8	108.4	286.1	215.8	203.9	121.6
2015	284.9	174.6	119.1	295.5	218.8	202.1	120.1
2016	322.3	187.5	116.9	282.3	220.2	169.1	106
2017	293.3	204.3	120.4	255.1	220.2	147.5	97.4
2018	297.1	210.1	119.4	244.2	235	162.5	105.1
2019	298.3	211.1	134.8	236.2	248.8	257.2	122.2
2020	336.6	214.1	139.7	292	279.4	209.6	123.4
2021	369.9	225.9	142.3	300.9	303.1	181.8	120.2
2022	420.1	229.3	138.4	315.6	324.2	189.9	123
2023	473.3	222.2	133.3	323.8	329.4	164.7	115.7
2024	437.3	222.1	134.1	313.8	327.5	172	99.9

34) 연도별 사법연감, '형사공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5] 민사본안 처리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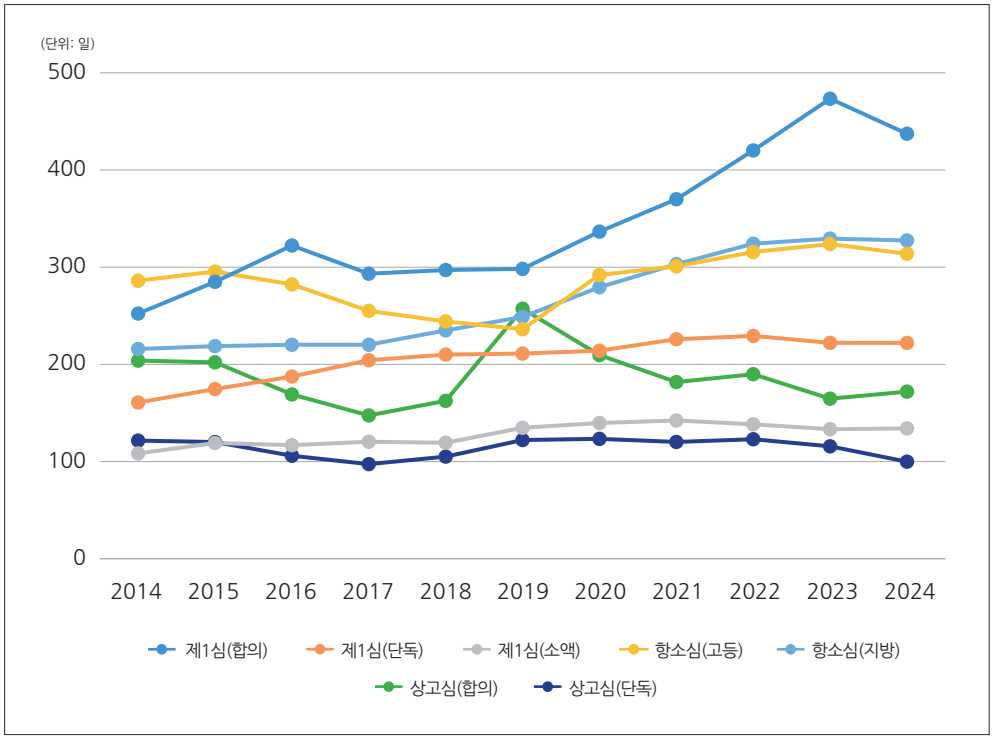

2. 형사 공판사건

[표 4] 형사 공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불구속)[35]

(단위: 일)

연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합의	단독	고등법원	지방법원	1심 합의	1심 단독
2014	173.2	116.1	198.8	147.5	286.5	135.4
2015	173.5	119.6	159.1	167.2	166.9	104.2
2016	175	123.6	145.9	176.3	205.8	104.9
2017	168	128.9	141.6	169.9	184.6	95.1

35) 연도별 사법연감, '형사공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연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합의	단독	고등법원	지방법원	1심 합의	1심 단독
2018	159.6	137.7	168	171.8	191.6	99.5
2019	174	146.6	179.1	194.7	157.7	109.4
2020	194.2	159.4	204.5	233.6	196.1	120
2021	217	178	204.2	241.2	220.8	118.8
2022	223.7	182.5	191.7	274.8	173.9	101.4
2023	228.7	180.7	194.9	290.2	155.1	98.2
2024	219.7	189.2	205.8	286.4	139.8	95.1

[그림 6] 형사공판 처리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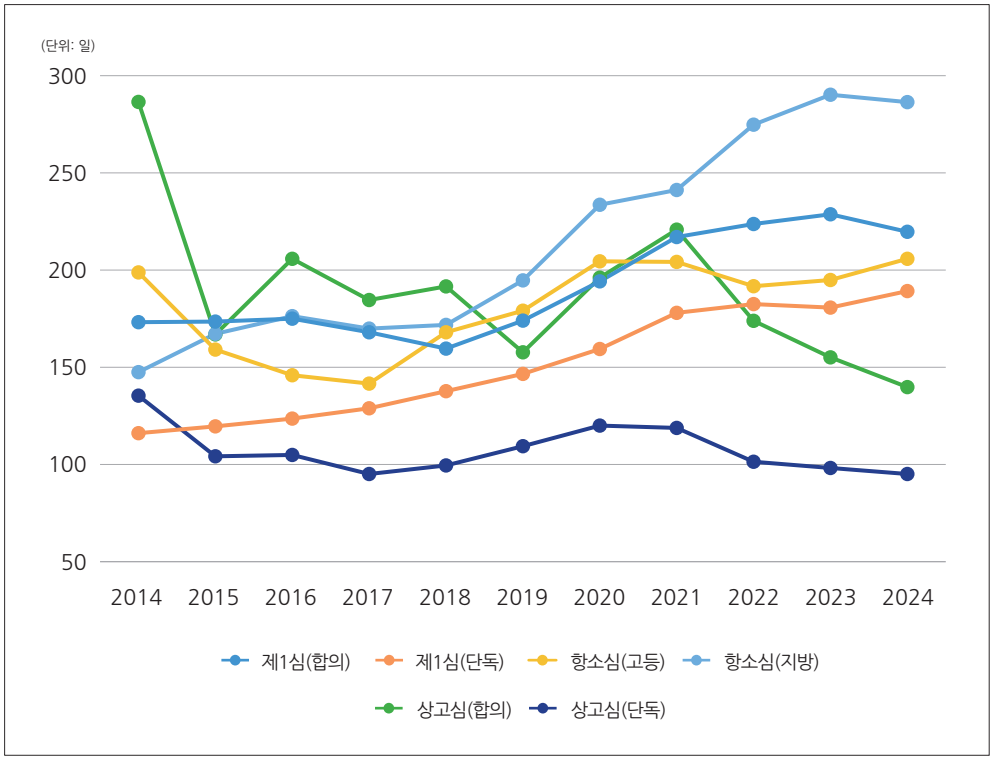

3. 2년 초과 사건 수

[표 5] 평균 처리기간 및 민사본안 사건 수[36)]

(단위: 개월)

연도	제1심				항소심			
	합의		단독		고등법원		지방법원	
	2년 이하	2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2014	57,040	2,047	1,063,100	2,378	16,053	471	37,049	262
	8.4		4.1		9.5		7.2	
2015	48,478	2,479	966,189	3,027	17,417	613	40,765	249
	9.5		4.5		9.9		7.3	
2016	37,277	3,181	916,736	4,086	17,891	621	41,672	379
	10.7		4.5		9.4		7.3	
2017	39,311	2,929	982,810	4,656	17,388	521	44,597	353
	9.8		4.6		8.5		7.3	
2018	37,892	2,787	892,926	5,603	13,988	402	44,195	400
	9.9		4.6		8.1		7.8	
2019	44,213	3,201	874,411	6,298	15,589	484	42,665	351
	9.9		5.1		7.9		8.3	
2020	35,965	3,854	857,655	7,248	10,387	389	41,728	455
	11.2		5.3		9.7		9.3	
2021	36,349	4,897	805,203	8,697	10,984	494	43,052	708
	12.3		5.5		10		10.1	
2022	31,669	5,925	720,189	10,115	11,656	593	43,891	971
	14		5.5		10.5		10.8	
2023	24,683	7,026	726,224	10,938	12,518	722	43,853	1,289
	15.8		5.4		10.8		11	
2024	23,228	6,228	745,219	11,410	13,555	695	44,183	1,386
	14.6		5.5		10.5		10.9	

36) 연도별 사법연감,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 – 심급별'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7] 민사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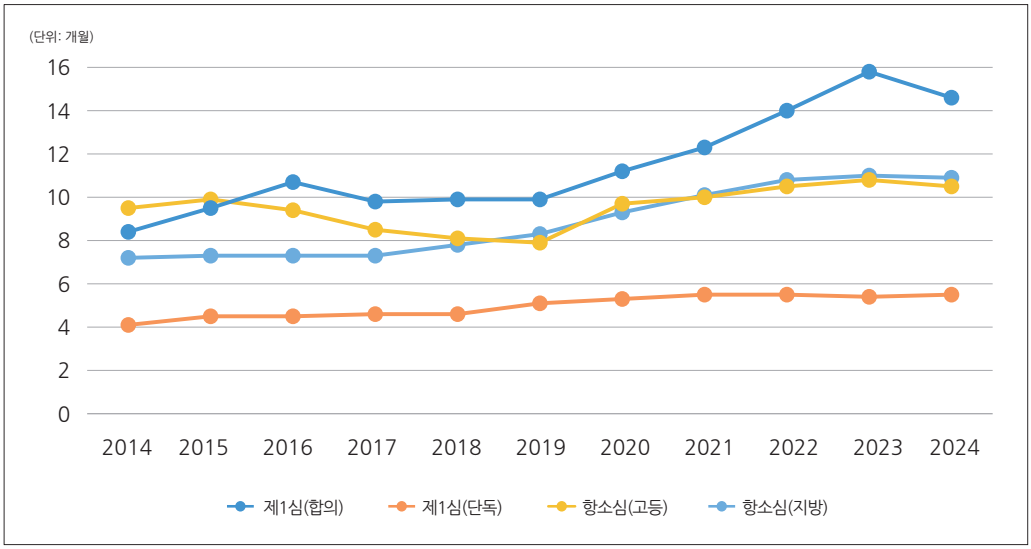

[표 6] 평균 처리기간 및 형사공판 사건 수[37]

(단위: 개월)

연도	제1심				항소심			
	합의		단독		고등법원		지방법원	
	2년 이하	2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2014	20,835	480	243,974	1,788	10,085	329	58,352	150
	5		3.8		5		4.2	
2015	19,381	293	236,829	1,481	11,340	81	67,479	143
	5.0		3.8		4.5		4.6	
2016	20,546	393	245,753	1,818	10,510	43	73,077	129
	5.1		4.0		4.1		4.8	
2017	19,411	324	244,944	1,754	10,400	26	76,578	156
	5.0		4.2		4.2		4.7	

37) 연도별 사법연감,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 – 심급별'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합계에서 2년 초과를 제외한 사건수를 기재하였다.

연도	제1심				항소심			
	합의		단독		고등법원		지방법원	
	2년 이하	2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2018	19,072	271	216,978	1,378	9,401	56	66,583	193
	4.9		4.5		4.7		4.7	
2019	17,780	291	215,848	1,968	9,370	68	60,126	289
	5.3		4.7		4.9		5.2	
2020	16,524	345	226,011	2,108	8,400	91	60,094	204
	5.9		5.2		5.3		6.0	
2021	17,596	367	213,211	2,316	8,666	140	59,415	234
	6.6		5.8		5.4		6.3	
2022	19,088	712	200,413	3,291	9,111	90	60,487	348
	6.8		5.9		5.2		7.2	
2023	21,409	1,034	204,613	3,871	11,412	96	62,457	524
	6.9		5.8		5.3		7.5	
2024	21,797	880	202,777	3,038	12,202	133	67,920	500
	6.6		6.1		5.5		7.5	

[그림 8] 형사공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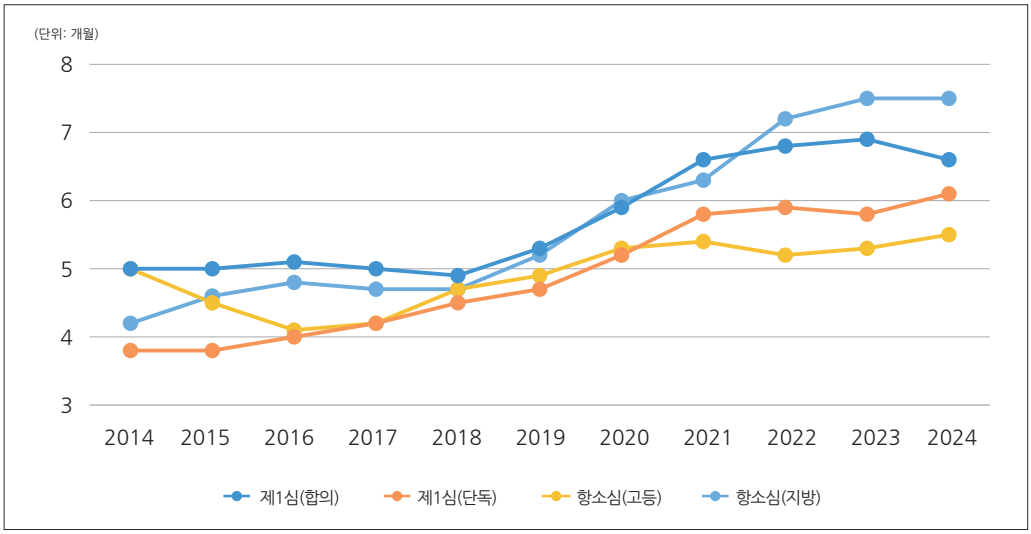

III. 재판지연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1. 재판지연과 관련한 변호사협회 불편 사례 설문조사 (2022)

소송절차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22년 9월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6명 중 89%는 최근 5년간 재판지연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통상 소장 제출 후 첫 변론기일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 이 3개월 이내라는 답변은 16%에 불과했다. 3~6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으나, 6개월~1년 이내라는 응답도 24%로 적지 않았다. 소장 제출 후 1심 선고기일 까지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1년~1년 6개월 이내라는 답변이 54%로 가장 많았고,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32%에 달했다. 1년 이내라는 답변은 14%에 불과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들이 겪는 피해 양상은 다양했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가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다거나 사업체가 파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막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패소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가사사건이 지연되면서 당사자와 자녀가 고통받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버려 양육비 소송이 의미 없어지는 등 신속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해 겪는 피해도 확인되었다.

2.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2023)

이처럼 재판지연에 관한 법조계 안팎의 불만이 거세지자, 법원행정처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민사재판 진행이 과거와 비교하여 실제 느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이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사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법관과 변호사, 그리고 법관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법관 6인(지방법원 부장판사 3인, 지방법원 단독판사 1인, 고등법원 판사 1인), 변호사 8인(대형 법무법인 6인과 중소 법무법인 소속 2인), 교수 2인(민사법 전공) 등 총 16명이고, 이메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합의 사건의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38] 그 대부분은 비효율적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실제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39] 그리고 그 원인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제기되었다고 한다. 하나는 승진이나 급여와 같은 인센티브의 부재이며, 다른 하나는 각급 법원에서 재판지연에 관한 적절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40] 무엇보다 앞으로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해 검토해야 하는 서류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지연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다.[41]

두 가지 모두 재판지연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로 제기되곤 하지만,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그다지 큰 주목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의하면, “제도와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긴급”하며, “핵심은 재판지연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체제에 있다고 비판하였다.[42] 그리고 재판에 대한 수치적 통계를 적절히 공개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사, 재판부, 법원별 통계 지표를 일정 주기로 법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데이트 게시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43]

38) 전휴재,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용역 보고서 (2023), 302면.
39) 전휴재,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용역 보고서 (2023), 303면.
40) 전휴재,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용역 보고서 (2023), 306면.
41) 전휴재,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용역 보고서 (2023), 306-307면.
42) 전휴재,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용역 보고서 (2023), 309면.
43) 전휴재,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용역 보고서 (2023), 315-316면.

[그림 9] 변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내용

귀하는 최근 5년간 재판지연 사례를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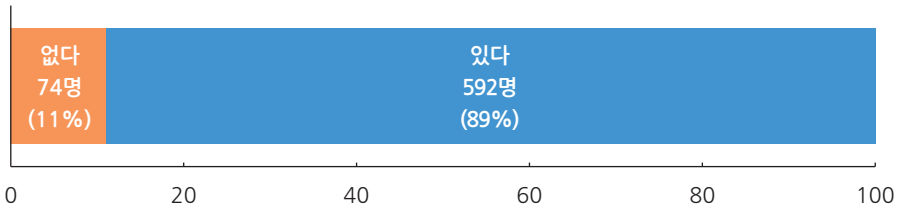

통상 소장 제출 후 얼마 후에 제1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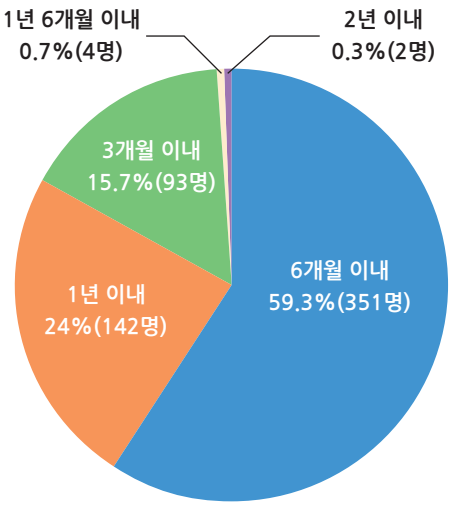

제4절 재판지연 문제 대응의 시도들

I. 개요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입법적 시도와 법원의 자체적 시도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입법적 시도

1.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2024년 9월 5일자로 제안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371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판결의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법정기간을 경과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소송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41조 규정을 담고 있다.[44]

> **제41조(신속한 재판의 신청)**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할 수 있다.
> 1.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4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경우
> 2.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제21조[46]에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4) 이 법안은 2024년 12월 6일, 소위에 회부되었다.
45)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46)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2조(재판지연의 보상 청구) ① 제41조에 따라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지연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43조(보상의 결정) ① 제42조에 따라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소송의 내용, 재판지연의 사유 등에 비추어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당한 보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절차,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기간,[47]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기간[48]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첫 번째로 판결을 선고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 개별사건의 특수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재판지연에 대하여 법원에 보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법원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하여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오히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49]

2. 민사재판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5)에 의하면, 우리 법원이 현행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훈시규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지연된 정의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다. 이에 동 법안은 당사자가 기일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47)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48)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9) 이화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4.12.), 9-10면.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해야 하며(안 제165조 제3항), 재판 중 선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변론조서에 적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99조 제2항). 또한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안 제199조 제3항 및 제208조 제1항 제4호).[5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민사소송에서 지연된 재판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취지의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제기되었다(의안번호 2210416).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터 잡아, 판사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고 보았다.

> **제199조의2(선고지연에 대한 보상)** ① 법원의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것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선고지연과 당사자가 입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형사재판

한편 형사재판의 경우, 2025년 4월 23일 제안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안 제365조 제2항).[51] 그 외에도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205582)에서는 법관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제16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 따라 상급법원이

50) 이 법안은 2025년 4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51) 이 법안은 2025년 4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제16조의3, 제92조 제3항 및 제4항).[52]

유사한 맥락에서, 2026년 5월 6일 법제사법위원장에 의해 대안 제안 · 통과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8)은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4. 판사 임용 및 증원에 관한 법안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가장 자주 그리고 본질적 해결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안 역시 제안된 바 있다.

하나는 판사의 임용 경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에 관해 다양한 법안이 상존했으나, 2024년 9월 26일,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발의가 제안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6일 공포되었다(의안번호 2204309). 이 법안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법원조직법을 일부 개정하여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제42조 제2항).

또한, 판사의 정원에 관한 법안도 제안 · 공포된 바 있다.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0)에 따르면, 소송의 복잡화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관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는 취지로 법률을 제정하였다(안 제1조).[53]

52) 이 법안은 2025년 3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53) 2025년 1월 7일 공포되었다.

III. 사법제도의 개선

국내에서 재판지연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제안되고 있다. 우리 법원은 2025년 사법연감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우리 법원의 주요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재판지연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그 대강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54]

우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한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법관의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총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 1. 7.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12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고, 2026년 증원되는 정원 370명 중 80명을 하급심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이다.[55] 또한 「법원조직법」상 재판연구원 정원에 대한 제한이 2023년부터 해제됨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023년 1월 31일 350명으로, 2024년 1월 25일 4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판연구원규칙」을 개정하였고, 2025년 1월경에는 48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잦은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심리의 단절이 발생하고, 재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1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재판장이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였다. 이를 통해 원숙한 재판능력을 갖춘 법원장 등이 재판을 직접수행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재판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56] 실제 합의부에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3년을 함께 동행하며 장기 미제 처리율과 사건 종국률을 눈에 띄게 높였다는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57]

---

54) 대한민국 법원, “2025 사법연감 발간” 보도자료 (2025. 9. 23.).
55) 대법원,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6. 2. 12.).
56) 대한민국 법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4. 1. 19.).
57) 구속 사건은 평균 2022년 116.5일에서 2023년 95.7일, 2024년 97.2일로 단축되었으며, 불구속 사건도 같은 기간 172.8일, 117.1일, 102.2일로 줄었다고 한다. 법률신문, “[인터뷰] “같은 재판부서 3년 일하니 장기

여기에 덧붙여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로 인해 감정이 필요한 전문분야 사건이 증가하면서 감정이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감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때때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감정결과가 도출되어 사법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곤 하는 바, 감정인의 전문성 및 감정절차의 충실성 ·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절차 관리제도, 의료감정 및 문서감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58]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가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지에 관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합의부의 미제 처리율과 종국율이 향상되었으나 그것이 해당 제도개선에만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라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도― 사법통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적체 사건 거의 해결" – 정성민 부장판사 · 김은지 판사" (2025. 8. 2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8 (2026. 7. 1. 최종확인).

58)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의 감정제도에 관해서는, 이정현,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특히 제5장 참조.

제5절 소결: 사법통계의 필요성

지금까지 재판지연 문제의 특성, 그 현황, 그리고 문제해결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재판지연 문제는 그 복잡성과 가치 내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는 특정한 제도의 신설이나 일부 제도의 개선만으로 결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소위 말하는 삼각난제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법원의 정책담당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를 단번에 해결할 방안을 찾는 일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그 관리의 핵심에 사법통계가 자리한다.[59]

새롭게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건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가운데 실제로 처리된 사건의 수는 어떠한지, 그러한 흐름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재판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적 · 제도적 시도가 필요한지에 관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다만 이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종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60] 재판지연 문제를 예로 든다면, 특정 분야에서 제1심 판결의 처리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포착하고, 그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원인은 결코 직접적이거나 단일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상상력과 통계적 전문성이 함께 요청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61]

이처럼 재판지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법원이 마주한 다양한 난제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법통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62] 이러한 작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파악하기조차 어려

59) 김두얼,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10-11면.
60) 김두얼,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10-11면.
61) 국내에서 사법통계를 기반으로 제도적 개선을 도출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홍보람,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2. 14.); 이보연, "소송 장기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3) 등.
62) 김두얼,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12면.

울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재판에 관한 통계수치의 체계를 꾸준히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도가 결여된 개선방안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양상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법통계, 특히 그 분석을 통한 원인의 규명과 해법의 제시가 강조되는 가운데,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재판지연 문제 대응을 위한 일본의 시도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서설

이 장에서는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여 온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은 재판지연을 사법개혁이 요청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사법통계의 수집 · 분석 · 공표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재판지연 문제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방안인 동시에, 그 해결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접근방식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지연이라는 단일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그 방식이 사법통계 데이터의 단순한 수집과 공표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판지연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발굴하려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일본이 어떠한 배경에서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는지(제2절), 그 대응체계의 한 축인 신속화법의 제정과 검증검토회의 설치 · 운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제3절),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검증보고서의 내용 · 특징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제4절)를 차례로 살펴본다. 아울러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발간하는 기타 사법통계 자료인 사법통계연보와 재판소 데이터북 역시 함께 검토하고 상호 비교한다(제5절).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일본의 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우리 법제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후속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제6절).

다만 일본에서의 검증검토회의 설치나 운용 그리고 검증보고서의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에 관해서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제도를 관장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담당 재판관과 검증검토회의 좌장인 야마모토(山本和彦) 쥬오대학(中央大学) 로스쿨 교수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충하였다.

제2절 사법통계 체계 개선의 배경

I. 일본에서의 재판지연 문제 부상

1. 개요

일본에서의 재판지연 문제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1940년대 후반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판의 지연이 지적되었고, 이에 1950년에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에서 '계속심리'를 규정하고 1958년에는 집중심리방식이 고안되었다. 그 결과 장기 미제사건은 일시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재판지연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예컨대, 재판지연을 이유로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하였다. "재판 지연이 담당 재판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관은 사법행정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이 되고, 나아가 제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파기환송될 것이고 그러면 재판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헌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소의 이유도 없다고 하겠다."[63]

다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련의 폭력 사건과 공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건의 재판은 심각하게 장기화되곤 하였다. 당시의 사건들은 증거나 기록이 매우 방대할뿐더러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사안들이거나, 통상적인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가 조작되어 사실인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 심리가 장기간 중단되는 것들이었다.[64]

그러한 가운데 1975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37조를 위반하였

63) 最判 昭和23年12月22日 昭和23年(れ)第1071号.

64) 첫 번째 유형의 대표적 사안이 메이데이 사건, 히라(平) 사건, 오오스(大須) 사건, 스이타(吹田), 히라카타(枚方) 사건 등이며, 두 번째 유형은 야카이(八海), 타츠노(辰野), 니호(仁保) 사건 등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이 바로 타카다 사건과 하치오지직안(八王子職安) 사건이다. 이 구분은, 笹倉香奈, "迅速な裁判の要請", 刑事弁護 93号 (2018), 126면 참조.

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린, 소위 타카다 사건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지면서 일본 법학계와 실무계에서 재판지연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65]

2. 타카다 사건

가. 사실관계

타카다 사건이란, 6.25 전쟁 2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발생한 조선해방구국투쟁과 관련된 일련의 공안 사건을 총칭한다. 이 투쟁에 참여한 자는 약 40여명으로, 1952년 6월 26일 나고야 시내의 타카다 파출소 등에 벽돌과 화염병 등을 투석하여 습격하였다. 그로 인해 약 31명이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취급벌칙 위반, 방화, 그리고 상해 등 순차 입건되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1952년 11월 13일에 열렸으며, 이후 위 폭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사 사건들과 병합 및 분리를 거듭하는 와중에, 1953년 6월 18일 제23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가 중단되었다. 이후 1969년 6월 10일 공판절차가 재개되면서 약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피고인 중 다수가 본 건과 연관된 오스기(大杉) 사건에도 피고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을 우선하여 심리하고, 그 이후 본 사건을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66] 그럼에도 오스기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본 사건의 심리가 계속되지 않은채로 방치되었다.

이후 심리가 재개된 이후 내려진 제1심은 신속한 재판을 보장한 헌법 제37조 제1항이 단순한 프로그램 규정에 그치지 않고 형사 피고인의 구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임을 확인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37조 제4호에 의해 피고인 등을 모두 면소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선고하였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과 동일하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헌법 조항은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고「형사소송법」에서도 재판지연을 면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

6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일본의 판례 변화와 학문적 논의의 흐름은 아래에서 조망할 수 있다. 羽渕清司, 迅速な裁判/裁判の公開, 信山社 (2007).

66) 荒木伸怡, 迅速な裁判を受ける権利, 成文堂 (1993), 258-259면.

나. 판결 요지

최고재판소는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제1심의 면소판결을 확정하였다. 최고재판소의 요지는 크게 헌법 제37조 제1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구제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우선, 해당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해당 조항은 단순히 신속한 재판을 일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상 및 사법행정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내용에 명백히 반하여 심리의 현저한 지연 결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처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도 그 심리를 중단한다는 비상구제수단이 취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형사 사건에서 심리의 지연이 헌법상 보장에 반하는 사태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지연의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지연의 원인과 이유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연이 피치 못하다고 인정되는지, 그리고 헌법의 보장 조항이 수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침해되고 있는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당사자주의를 고도로 받아들인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아래, 검찰 및 피고인 측에도 적극적인 소송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적어도 검찰의 입증이 끝날 때까지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는 등 심리를 촉진시키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추정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위의 논리에 따라 "본 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등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조항에 의해 수호되어야 하는 피고인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 본 건은 1969년 제1심 판단이 공판절차를 갱신한 단계에서 이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명확하게 위반한 사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터 잡아 최고재판소는 "형사 사건이 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사이에 신속한 재판을 보장한 조항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심리를 중단할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앞서 언급한 심리경과를 거친 본 건에 있어서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언하기에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다. 이후 동향

타카다 사건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일본 최고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73년 7월 20일에 내려진 다이도 제철(大同製鋼) 사건의 판결은 문제가 된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지병으로 심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후 등기 변경을 통해 대표가 변경되었음에도 재판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약 9년 동안 심리가 중단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소는 피고가 등기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으로 이는 피고인의 귀책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67]

한편 1974년 5월 31일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기소 후 3차 공소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 약 21년 동안 6번의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다.[68] 그 동안 제3차 공소심에서 재판소가 기록을 수리한 이후 제1심 공판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에 관해 최고재판소는 "해당 항소심은 유죄 취지의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며, 이는 곧 피고인 측이 심리 촉진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 2월 7일 내려진 최고재판소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자. 이 사건은 소위 미네야마(峯山) 사건이라 불리며 일본에서도 불합리한 재판지연을 상징하는 사안으로 회자되곤 한다. 이 사안은 1953년 9월 19일에 제기되었고 약 25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은 지병을 이유로 심리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의 공범에 관한 심리가 분리 · 진행되면서, 그중 하나의 심리가 종결된 이후인 1962년 6월 2일이 되어서야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었다고 한다.[69]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내려졌으나, 상고와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것이었으

67) 最判 昭和48年7月20日 刑集27巻7号 1322頁.
68) 最判 昭和49年5月31日 判時745号 104頁.
69) 最判 昭和55年2月7日 昭和53(あ)第1654号.

며, 공범에 대한 심리 역시 본 건의 피고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만큼 그 중단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판의 지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타카다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심리의 중단은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라 보았다.[70]

이처럼 타카다 사건은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그 이후 일본 최고재판소는 여전히 헌법 제37조 제1조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모든 사건의 반대의견에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판단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II. 사법개혁의 흐름[71]

1. 개요

타카다 사건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으면서, 일본 법학계 및 재판실무, 나아가 사법행정에서도 해당 권리의 내용과 법적 효력이 간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그 속에서의 배경적 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일본에서의 사법개혁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재판지연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에서야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법제도 개혁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그 논의가 지금의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 그리고 그 기초가 된 신속화법의 제정으로 이어져왔음을 고려하면 개혁의 배경과 논의 등 당시의 상황을 다소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사법제도개혁심의회(司法制度改革審議会)와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를 중심으로 각각의 근거가 된 법률과 논의의 결과물을 살펴보고, 신속화법의 제정 배경과 그 내용으로까지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

70) 最判 昭和55年2月7日 昭和53(あ)第1654号.

71) 이 부분은 松永邦男, 司法制度改革概説(1): 司法制度改革推進法・裁判の迅速化に關する法律, 商事法務 (2004)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후 별도의 각주는 생략하고자 한다.

2. 사법제도 개혁의 배경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헌법의 제정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위헌입법심사권이 부여된 재판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구축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전후 50년의 세월이 흘러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일본 사회는 복잡화와 다양화, 그리고 국제화를 경험하였고 그와 함께 사회경제적인 기반의 구조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법이 일본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조 관계자에 그치지 않고 사법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가깝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단적으로, 1997년 1월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야마자키 타쿠(山崎拓) 의원이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 하시모토(橋本龍太郎) 내각총리대신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하는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는 동시에 사회 ·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의 장(場)에서 법적 분쟁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합한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법이란 것은 이러한 요청에 충분히 대답해야 합니다. 정부로서도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사법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해 갈 생각입니다."

이후 같은 해 6월께 자유민주당에 '사법제도 특별조사회'가 발족되었고 11월에는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방침'(司法制度改革の基本的な方針 ―透明なルールと自己責任の社会に向けて―)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8년 6월에는 특별조사회로부터 '사법제도특별조사회 보고 ―21세기의 사법의 명확한 방침―'(司法制度特別調査会報告―21 世紀の司法の確かな指針―)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3. 사법제도개혁심의회

1998년 11월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법무부회와 사법제도특별회의 합동회의에서 신속하게 정부에게 사법제도심의회 설치 법안을 제출하고 사법제도심의회의 설치를 위한 결의가 이루어져, 그 취지가 당시 오부치(小渕恵三) 총리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총리

는 총리실을 통해 법안 작성 작업에 돌입하였고, 1999년 2월 5일,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동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같은 해 4월 22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6월 30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을 거쳐 성립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1999년 7월 27일,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司法制度改革審議会)가 설치되었고, 교토대학교 사토우 코지(佐藤幸治) 명예교수를 회장으로 하는 총 13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절반 이상인 7명이 법학자 또는 법조인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1999년 12월 12일 쟁점정리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후, 2001년 6월 12일까지의 2년 간 총 63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 —21세기의 일본을 지탱하는 사법제도—'(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 —21 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라는 결과 보고서를 내각에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의 골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 '사법제도를 지탱하는 법조의 이상향', '국민적 기반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내세우고 각각에 관한 구체적인 제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그 핵심적 조건이 바로 **재판의 충실화와 신속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01년 6월 15일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에 관한 대처방침'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3년 이내에 강구할 것을 약속하였다.

4. 민사소송 이용자조사

가. 개요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사법제도 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9월부터 10월까지 민사소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보고서로 발표하였다.[72)]

이 조사는 실제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에게 면접방식으로 그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민사소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는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이라 한다. 특히 재판기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는 까닭에 일본 사회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 생각되므로, 이하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72) 司法制度改革審議会, 「民事訴訟利用者調査」 報告書 (2000).

나. 결과

재판지연과 관련하여, 해당 조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에 응소함에 있어서, 주저한 경향이 있었는지 존재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관하여 약 46.2%가 주저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의 대부분이 비용과 시간에 관한 내용이었다.[73]

[그림 10] 소송회피 이유[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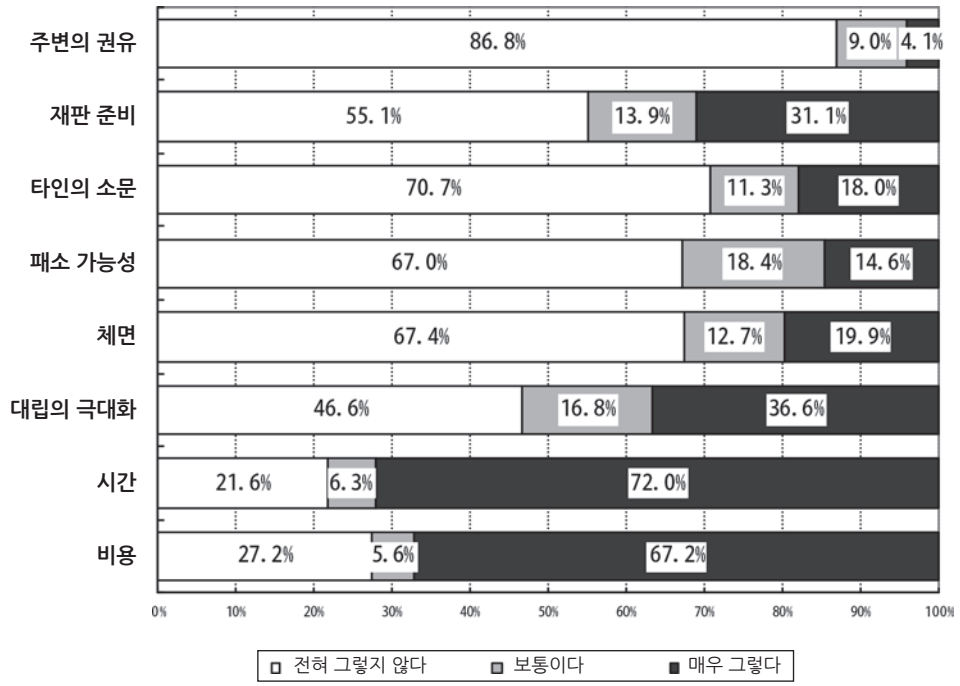

물론, 주저를 경험한 응답자가 절반에 미치지 않는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소송을 제기하고자 결심한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에서, 이를 국민 일반으로 확대하면 그 영향은 더욱 크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75]

---

73) 司法制度改革審議会, 「民事訴訟利用者調査」 報告書 (2000), 10-11면.
74) 司法制度改革審議会, 「民事訴訟利用者調査」 報告書 (2000), 11면.
75) 司法制度改革審議会, 「民事訴訟利用者調査」 報告書 (2000), 12면.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벽이 소송의 제기 그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이 보고서는 침묵한다. 佐藤岩夫, 菅原郁夫, 山本和彦, 利用者からみた民事訴訟―司法制度改革審議会「民事訴訟利用者調査」の2次分析―, 日本評論社 (2006), 107면.

한편, 재판이 시작된 후 그 전반적인 과정에서 걸린 시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약 28%가 **합리적 범위** 내라고 답한 반면, **다소 길다** 및 **너무 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

[그림 11] 재판기간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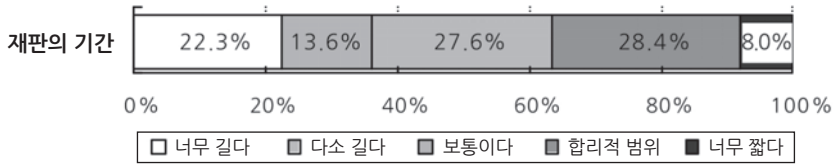

또한, 법인이 아닌 자연인 응답자에 한정하자면 약 60%가 재판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하였다. 참고로 심리기간을 **합리적**, **다소 길다**, 그리고 **매우 길다**고 답변한 자의 평균 심리기간은 각각 175일, 334일, 461일이었다고 한다.[76]

[그림 12] 시간 예측[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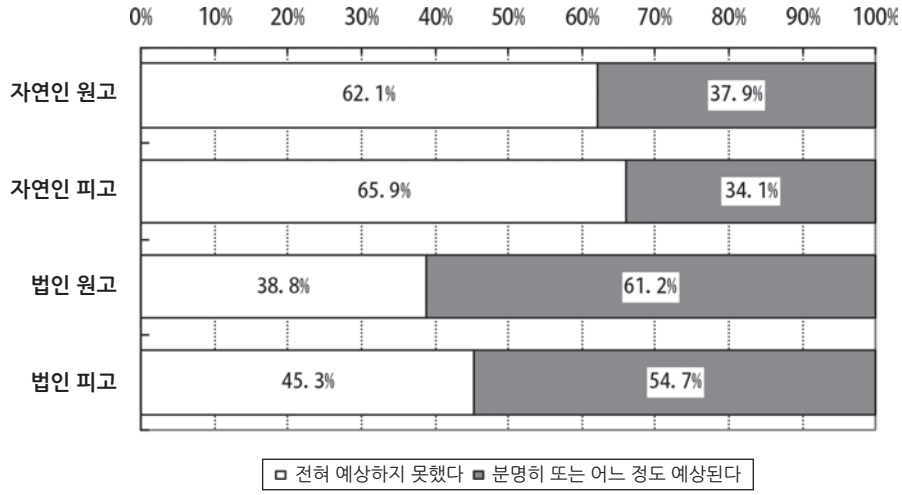

76) 司法制度改革審議会,「民事訴訟利用者調査」報告書 (2000), 21-22면.
77) 司法制度改革審議会,「民事訴訟利用者調査」報告書 (2000), 13면.

5. 사법제도개혁 추진법

지금까지의 논의의 일환에서 정부는 2001년 7월 1일에 내각관방(内閣官房)[78]에 '사법제도개혁추진 준비실'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9월 28일에는 제153회 국회에 「사법제도개혁추진법안」을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10월 30일과 11월 9일 각각 중위원 본회의와 참위원 본회의에서 가결 · 성립되어, 같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안의 시행과 동시에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가 설치되었고, 당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여, 내각관방장관 및 법무대신을 부본부장, 그 외 모든 국무대신을 본부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의지는 고문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투영되었는데, 예를 들어 2002년 3월 7일과 2002년 7월 5일에 개최된 제3회와 제5회 고문회의에서의 총리 발언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79]

내각총리대신 인사 요지

(2002년 3월 7일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제3회 고문회의)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저는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는 사회라는 것은 노력하는 자가 보상받는 사회,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정당한 자가 구제되는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친숙, 그리고 정의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추억의 사건을 재판하는 최고재'라는 센류(川柳)[80]를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였다.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국민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한 센류라 생각하였다. '추억의 사건을 재판하는 최고재', 역시 조금 더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이 사법개혁을 고민해주십사.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78) 내각관방은 내각의 서무, 주요 정책의 기획 · 입안 · 조정,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하는 사무처이다.
79) 모두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아울러 사용된 밑줄과 강조는 모두 저자에 의한 것이다.
80) 센류는 5-7-5의 총 17개 음을 사용하는 일본의 정형시 중 하나이며, 원문 표현은 "思い出の事件を裁く最高裁"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센류에 관한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britannica.com/art/senryu (2026. 7. 7. 최종확인).

내각총리대신 인사 요지

(2002년 7월 5일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제5회 고문회의)

1. 이전 이 장소에서 '추억의 사건을 재판사는 최고재'라는 센류를 언급하였다. 이는 재판에 시간이 걸려 사법제도가 국민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꼬집은 것이라 봐야 한다.
2. 개혁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사법을 국민의 손에 닿는 곳에 두는 것이다. 전국 3,300곳의 시구정촌(市区町村)의 85%에는 변호사가 1명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예를 들어 나의 고향인 요코스가시에는 23명의 변호사가 있는 한편, 미우라시에는 1명도 없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은 인재를 육성하고 법조인구를 늘리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전국 어느 곳에 살아도 법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다음으로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사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결, 신속한 권리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2년 이내에 나올 수 있도록 개혁하고 싶다. 형사 · 민사 모두 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드는 현상은 과도하다. 급속한 시대의 변화나 수명의 증가로부터 보아, 일본의 사법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상의 사법절차나 사법현장에서의 운용상 2년 이내라는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그 집행에 의해 권리의 실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쟁취할 수 없다. '사후 체크 · 구제형 사회'가 요구하는 신속하고 힘있는 사법으로의 개혁이 착실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4. 저는 사법개혁이야말로 구조개혁의 근거를 이룬다고 믿는다. 사법에게 요구되는 지식이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한층 더 다종다양한 인재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일본의 법조계도 경쟁에 의한 활성화의 길을 선택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사법개혁을 결코 '그림의 떡'으로 끝내선 안 된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 쾌적한 것이 아니다. 현상에 안주한 채 개혁을 주저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분야가 유사하다. 국민에게 친숙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법의 실현에는 저도 전력을 쏟을 결의가 있다. 오늘, 고문회의로부터 국민을 향한 명쾌한 어필을 느껴, 저 스스로도 개혁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이 어필의 취지에 따른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힘써주시길 바란다.

이처럼 고이즈미 총리는 재판지연 문제를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형사 모두 제1심 판결의 결과가 2년 이내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 인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재판 신속화 논의의 기준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법제도개혁추진법」은 일본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에 필요한 계획으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司法制度改革推進計画)을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제도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제159회 국회(2004년 통상국회)까지 추진본부로부터 16건, 그 외 관계부처로부터 6건이 제출되었다.

[표 7]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 제개정된 법률의 목록

국회 회기	법률명
제154회 (2002. 1. ~ 7.)	• 「사법서사법 및 토지가옥조사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변리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155회 (2002. 10. ~ 12.)	• 「학교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사법시험법 및 재판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법률」
제156회 (2003. 1. ~ 7.)	• 「법과대학원에의 재판관 및 검찰관 그 외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인사소송법」 •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재판소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담보물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중재법」
제159회 (2004. 1. ~ 6.)	• 「변리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노동심판법」 • 「형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제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 「종합법률지원법」 • 「행정사건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국회 회기	법률명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법」 •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판사보 및 검사의 변호사직무경험에 관한 법률」
제161회 (2004. 10. ~ 12.)	• 「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재판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3절 신속화법의 제정과 검증검토회의 설치

I. 신속화법

1. 제정 배경

2001년 당시 지방재판소의 제1심 통상소송[81]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이 민사의 경우 8.5개월, 형사는 3.3개월이었으며, 심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비율이 민사의 경우 7.2% 그리고 형사의 경우는 0.4%였다. 게다가 2003년 지방재판소 제1심 통상소송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민사 8.2개월과 형사 3.2개월이었다. 이처럼 일본의 재판 기간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거나 증인신문 등을 필요로 하는 사건, 복잡 · 전문화된 사건, 국민이 주목하는 중대사건 등에서는 심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82]

2001년 6월 12일 내각에 제출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축으로, 민형사 재판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 취지는 「사법제도개혁추진법」에서도 민형사에 관한 '재판소 절차의 충실 및 신속화'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에서도 민사소송의 심리기간을 대체로 반감(半減)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획심리의 추진, 증거수집 수단의 확충 등의 방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충실한 쟁점정리를 위한 새로운 준비절차의 창설 및 증거개시의 충실 및 연속적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83]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역시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2002년 3월 7일 개최된 제3회 고문회의에서 본부장인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추억의 사건을 재판하는 최고재'라는 센류를 언급하였다. 이를 받아, 같은 해 5월 16일에 개최된 제4회 고문회의에서는 본부장 보사인 후루카와(古川貞二郎) 관방 부

81) 통상소송(通常訴訟)이란,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60만엔 이하의 소액소송, 어음이나 수표에 관한 어음수표소송, 이혼이나 인지에 관한 소송 등 부부나 친자 등의 관계에 관한 인사(人事)소송, 행정소송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裁判所, 裁判手続 民事事件Q&A, https://www.courts.go.jp/saiban/qa/qa_minzi/index.html#main-contents (2026. 7. 1. 최종확인).

82) 松永邦男, 司法制度改革概説 1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商事法務 (2004), 319면.

83) 松永邦男, 司法制度改革概説 1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商事法務 (2004), 319-320면.

장관으로부터, 예를 들어 2년내에 결심(結審)해야 한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의가 있었다.[84]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사무국에서 재판의 신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2002년 10월 2일에 개최된 제6회 고문회의에서 야마자키(山崎潮) 사무국장이 "제1심 재판의 결과가 2년 이내에 나와야 한다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그 출발점이 되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이에 관하여 2003년 통상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무국 주도로 신속화법의 입법 작업이 진행되었고, 같은 해 11월 11일에 개최된 제7회 고문회의와 12월 9일 제8회 고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85]

이후 2003년 2월 6일, 제9회 고문회의와 같은 달 18일의 제5회 본부회의의 검토를 거쳐, 3월 14일, 신속화법안이 제156회 국회에 제출되었다. 본 법안은 5월 9일과 13일에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5월 16일에 공포 · 시행되었다.

2. 주요 내용

가. 목적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법을 통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적절한 동시에 충실한 절차 아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내외적인 사회경제 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이에 신속화법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의 신속화에 관하여 그 취지와 국가의 책무, 그 외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심 소송절차를 시작으로 하는 재판소의 절차 전체를 한층 더 신속화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제1조).

84)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 第4回 顧問会議 (2002. 3.).
85) 松永邦男, 司法制度改革概説 1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商事法務 (2004), 321면.

나. 재판의 신속화

(1) 심리기간 목표 등

재판의 장기화 원인에는, 사건의 성질이나 내용에 내재하는 요인과 당사자에 관한 요인, 재판소에 관한 요인 등 다양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판의 신속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고문회의에서의 어필이나 고이즈미 전 총리의 인사말에서도 표출되듯이, 신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향한 운용면과 제도 · 체제면에서의 종합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이 법에서는 제1심의 소송절차를 2년 이내라는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와 함께 충실한 절차의 시행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그리고 체제적인 정비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여기서 심리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그것이 바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점과 동시에, 체제 및 제도적 정비를 통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제1심 소송 절차의 심리기간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2년 이내라면 심리기간이 장기화되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절차를 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재판의 신속화가 졸속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충실한 절차의 시행', 즉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다하는 등 재판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철처히 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절차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신속성을 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지를 담기 위하여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기존의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에 더하여 '충실'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86]

(2) 제도와 체제의 정비 등

이 법은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제도와 체제의 정비, 소송절차 외의 재판소 절차의 정비, 법조인구의 대폭적인 증대, 재판소와 검찰청의 인적 체제의 충실화, 국민이 이용하기 용이한 변호사 체제의 정비 등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그리고

86) 中尾正信, "裁判迅速化法と検証, その意義とは: 検証検討会委員を終えて", 自由と正義 第71巻 9号 (2020), 9면.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이나 본 법률에 근거한 최고재판소 검증 결과 등을 기초로 진행될 것이다.

(3)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

재판의 신속화가 졸속한 재판을 초래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본 법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실한 절차의 시행이 필수불가결한 재판의 목적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제2조 제3항).

다. 국가의 책무 등

(1) 국가의 책무 등

우선 국가는 재판의 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책정 및 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제3조). 그와 동시에, 정부 또한 이러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제4조). 여기서 말하는 시책이란 제2조 제2항에 의거한 제도와 체제의 정비에 관한 것들도 포함된다.

(2)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책무

다음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판의 신속화에 관하여 국민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호사의 태세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제5조).

(3) 재판소와 당사자 등의 책무

한편, 재판의 신속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제도와 체제면에서의 정비와 함께, 개별 사건에 관한 운용의 측면에서도 관계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관하여, 수소(受訴) 재판소 및 그 외 재판소에서 절차를 담당하는 자는, 가능한 충실하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6조).

또한 당사자, 대리인, 변호인, 그리고 그 외의 재판소에서 절차를 담당하는 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절차상 권리를 성실히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7조 제1항).

라. 최고재판소에 의한 검증

이 법에서 최고재판소는 재판절차에 소요된 기간과 장기된 재판의 원인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재판의 신속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동시에 다각적으로 재판의 신속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는 2년마다 공개해야 한다(제8조 제1항). 게다가 그 검증의 결과는 재판 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 시책의 책정과 시행에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제8조 제2항).

또한 본 법률의 시행으로 「재판의 신속화에 관련된 검증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제1조에서 해당 검증에 관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이 검토회를 개최하여,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재판의 신속화에 관련된 검증에 관한 검토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림 13] 신속화법의 주요 내용[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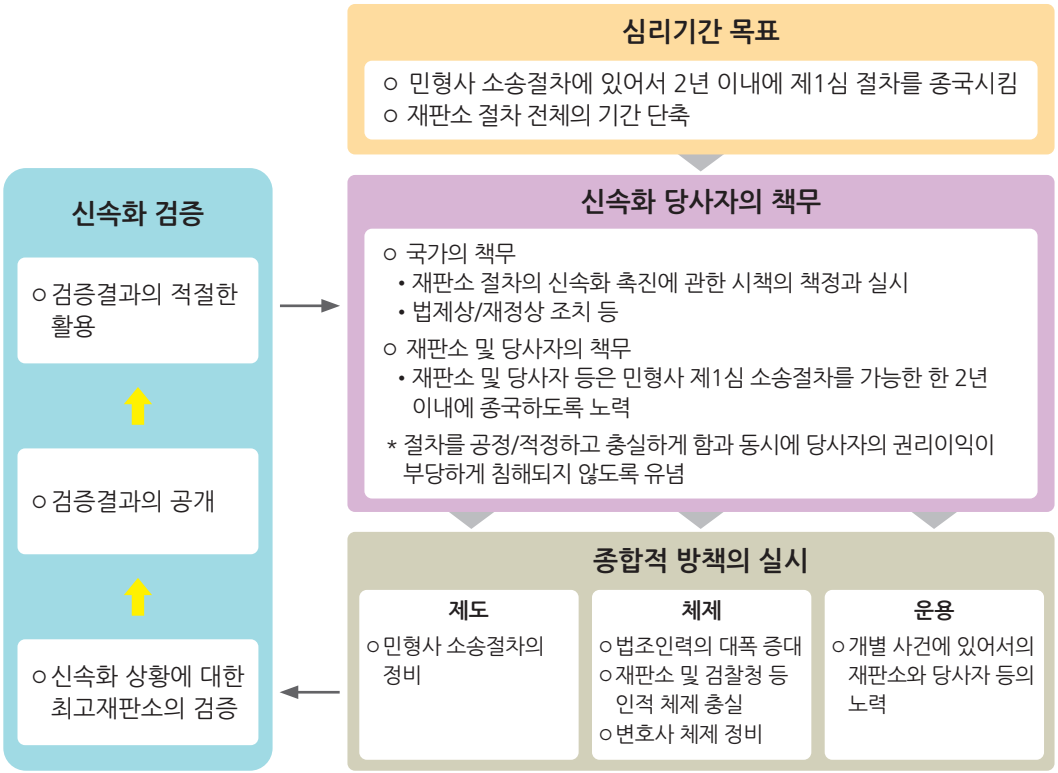

87) 松永邦男, 司法制度改革概説 1：司法制度改革推進法・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商事法務 (2004), 323면을 토대로 저자가 작성한 것이다.

II. 검증검토회

1. 개요

가. 목적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 그리고 충실한 심리를 수행하면서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신속화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최고재판소는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법률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폭 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고, 검증검토회는 이러한 목적 아래 설립되었다.

나. 법적 근거

신속화법은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로 하여금 재판절차에 소요된 기간, 장기화 요인과 그 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사 · 분석하여 재판 신속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하고, 이를 2년마다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속화법 제8조 제1항). 신속화법 규칙 제1조에 따르면, 최고재판소가 신속화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이 재판절차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회를 개최하여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및 학식이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증검토회는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의 자문회의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재판지연이 발생하는 요인에 관한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재판 신속화를 향한 방책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재판소에 의한 검증은 이러한 신속화에 관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심리기간을 장기화하는 요인을 밝혀, 그 개선을 위한 방책의 구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신속화법도 검증의 결과는 재판의 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 책정 및 시행에 관한 적절한 활용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검증 작업은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동시에 다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심의에서 검증에 관한 법조계의 협력이나 전문가의 관여를 요구한다는 부대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증작업은 재판절차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법조실무가

외 법조 이외의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검증작업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증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재판 신속화에 관한 검증에 관한 세칙(2003년 최고재판소규칙 제26호)」(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規則) 제1조에서도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이 검증검토회를 개최하고,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진행 방식 및 주요 내용

검증검토회는 신속화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재판 현황을 검증한다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다룬다. 현재 검증검토회는 2003년 12월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25년 10월 기준 총 74회의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모든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최고재판소 웹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각각의 회의가 모두 중요한 만큼 모든 내용을 살펴보되, 아래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가. 검증검토회의 진행

검증검토회는 최고재판소 심의관이 진행을 하고 총무국 참사관과 기획관이 이를 보좌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 또한 민사국, 행정국, 가정국, 형사국의 과장과 참사관들이 관계관으로서 회의에 참가하고, 매번 20명 전후의 각 국 소속의 판사보(局付判事補)[88]가 방청한다.

위의 참석자들과 함께, 검증검토회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우선, 민사국, 행정국, 가정국, 형사국의 담당자들이 민형사 제1심 소송 사건, 가사조정 · 심판 사건, 인사(人事)소송 사건[89] 등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한 후, 이 자료를 토

88)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들 중 재판소에 소속되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달리, 사무총국의 각 국에 소속되어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을 지칭한다.

89) 일본 「인사소송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인사소송이란 다음에서 말하는 소송 그 외의 신분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혼인의 무효 및 취소소송, 이혼소송, 협의이혼의 무효 및 취소와 혼인관계의 존부의 확인에 관한 소송
2. 적출부인, 인지, 인지의 무효 및 취소, 「민법」 제773조에 의한 부(父)의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실친자(実親子) 관계의 존부의 확인에 관한 소송
3. 양자 결연의 무효 및 취소, 이연(離縁), 협의상 이연의 무효 및 취소 소송 그리고 양친자(養親子) 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송

대로 그에 대해 설명하고 검증검토회 위원들로부터 의견이 개진된다.[90] 그러나 검증검토회 위원들로부터 제기되는 의견만으로 재판지연의 원인 파악이나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 더하여 사무국이 매년 현장 실정조사를 진행하고 그 개요를 보고하는데, 이를 통해 검증검토회 위원들이 실무적 감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91]

전술한 바와 같이 검증검토회는 재판소 차원에서 수집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판의 신속화가 구현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이를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그런데 현행의 통계 시스템은 재판기간의 신속화라는 목적 아래 구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통계 수집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검증검토회는 사건표(docket)의 개선에 주목하였다. 그 논의의 결과,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92]

90) 주요 데이터 사항은 아래와 같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제1심 소송사건수, 평균심리기간, 기일횟수, 개정횟수, 기일간 간격 또는 개정 간격, 증인 수 도는 조사자 수 등; 형사의 경우 종국 인원, 평균 심리기간이나 평균 개정횟수, 평균 개정 간격, 2년 초과 사건의 비율, 평균 조사증인 수, 변호인 선임률, 부인률이나 죄명별 종국 인원 등; 가사사건은 제3회 보고서부터 포함되었으며 주로 유형별 사건 수나 평균 심리기간, 종국 구별별(조정성립, 조정에 대신하는 심판, 취하, 부인, 각하 등)의 종국 사건 수; 인사소송에 대해서는 조정, 심판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국 사건 수, 평균 심리기간, 종국 구분별 사건 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평균 기일 횟수, 평균 기일 간격, 쟁점정리 절차 실시 건수, 증인조사 실시률, 평균 증인 수 등이 그것이다. 이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담당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제공받았다.

91) 이러한 사실은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담당자 및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나카오 마사노부(中尾正信)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사법통계 체계 및 상황에 대한 비판보다는 가벼운 평가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中尾正信, 韓国大法院司法政策研究院 質問に対する回答要旨, 사법정책연구원 내부자료 (2025. 11. 5.), 4면].

92) 最高裁判所, 第12回 検証検討会議事録 (2005), 22면.

[표 8] 사건표 관련 개선 지적사항

구분	내용
형사	공판전 정리절차 및 기일 간 정리절차의 실시 상황 관련 항목 추가
	추가 기소 상황, 청구인별 증인 수,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질문을 실시한 공판 횟수, 합의사건 및 단독의 부인사건 심리 기간 관련 항목 추가
민사 · 행정	의료 · 건축 분야의 사건표 일본화
	증인조사의 개시일과 종료일 그리고 기일 횟수 추가
	항소 사건을 포함한 상소 유무 항목 추가
	가정재판소의 민사 제1심 사건에 조사명령 및 부(付)조정[93] 관련 항목 추가
	소장 보정명령 유무 관련 항목 추가

이후 실제 개선된 민형사 제1심의 사건표는 아래와 같다.[94]

93) 부조정은 법원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제도로, 우리의 조정회부결정에 해당한다.

94)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7回 検証検討会 議事録 (2006) 資料 3-1 '改訂後の事件票'. 아래의 개정된 사건표 중 형광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그림 14] 개선 이후의 민사 제1심 사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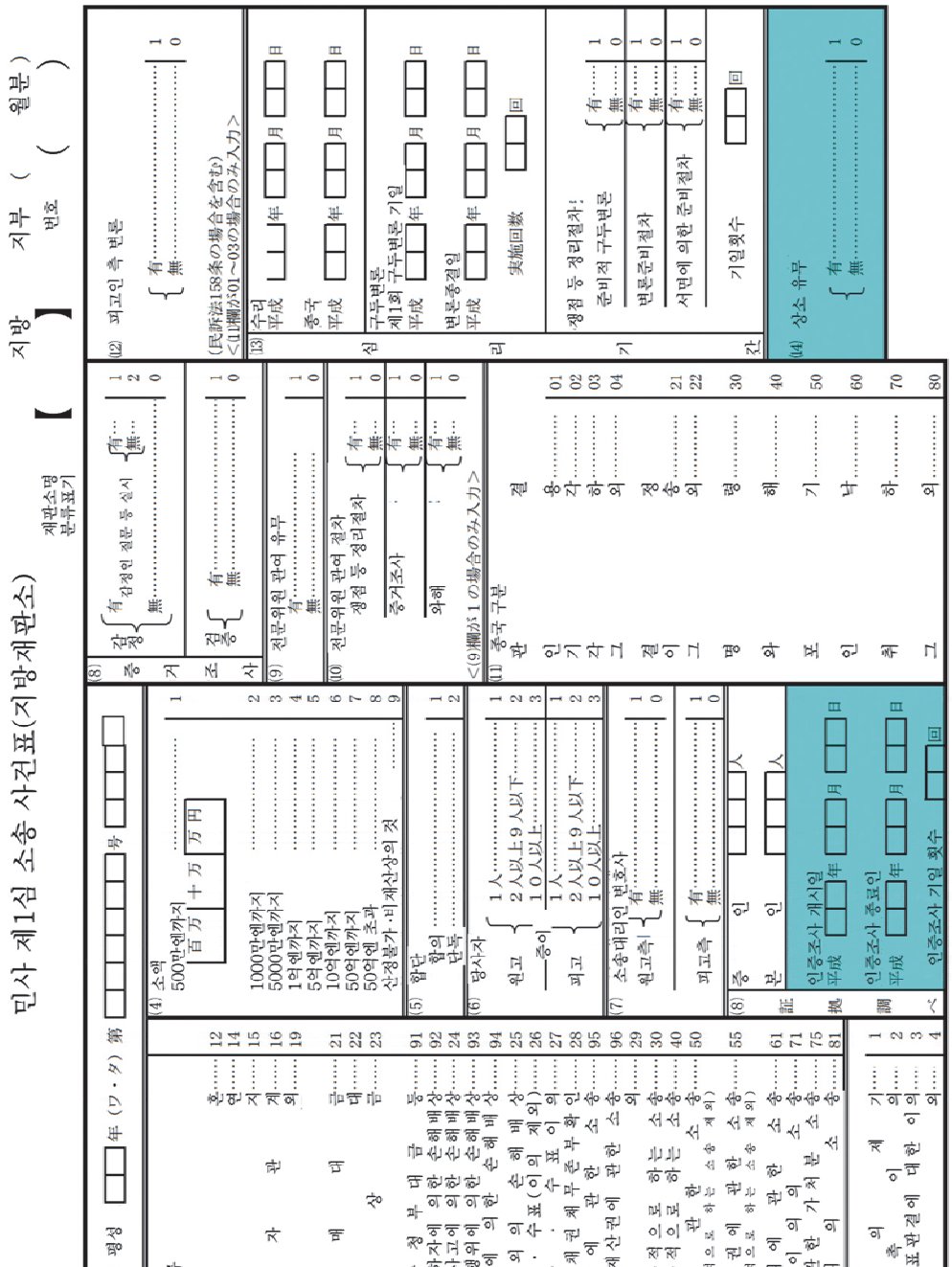

[그림 15] 개선 이후의 형사 제1심 사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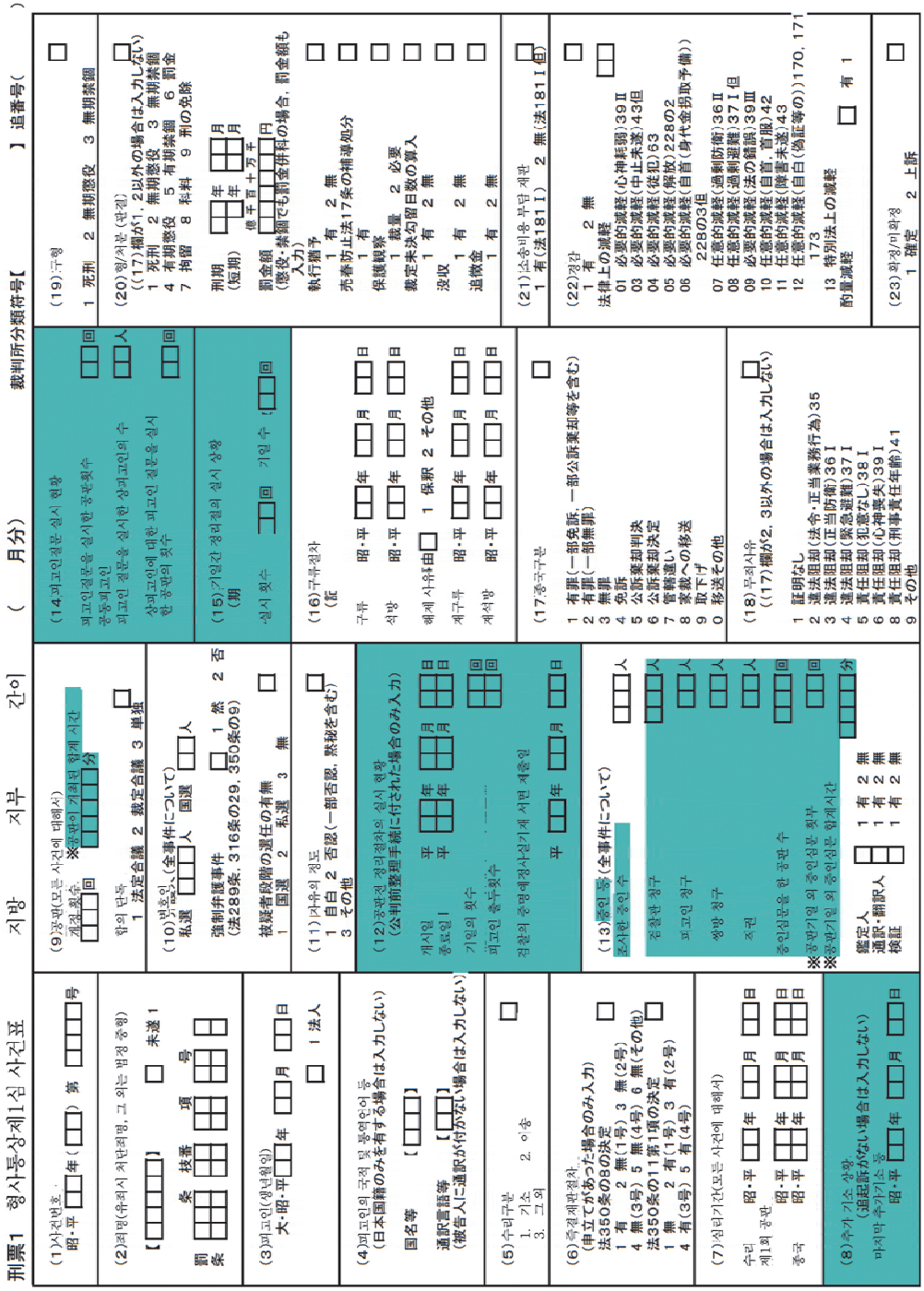

나. 검증검토회 자료의 작성

검증검토회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작성 · 공유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증검토회에는 민사국, 행정국, 가정국, 형사국의 과장단과 참사관들이 참석하고 각 분야에 관한 통계 수집 · 분석을 각 국에서 수행한다고 한다. 예컨대 민사국에는 제1과에 사건계(係)와 디지털화 추진계가 있으며 형사국에는 제2과에 디지털화 추진계와 제3과에 사건계를 두고 있다. 이들이 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수집하고 검토 · 분석하는 것이다.[95] 특기할 부분은 해당 담당자가 통계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아니라, 대부분이 서기관 또는 재판관 신분의 직원이라는 점이다.[96]

다만 자료의 작성이 오롯이 각 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후술하듯이 사법통계연보를 담당하는 부서와 검증검토회의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사법통계연보를 담당하는 부서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디지털 종합정책실로부터 각 국으로 사법통계연보의 작성을 위해 정리된 자료가 공유될뿐더러, 필요에 따라서는 디지털 종합정책실에서 자료가 작성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검증검토회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를 받아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추후 검증보고서의 작성에 활용한다고 한다.[97]

95) 이 정보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담당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제공받았다.
96) 이 정보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담당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제공받았다.
97) 이 정보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담당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제공받았다.

[그림 16] 최고재판소 조직 개요[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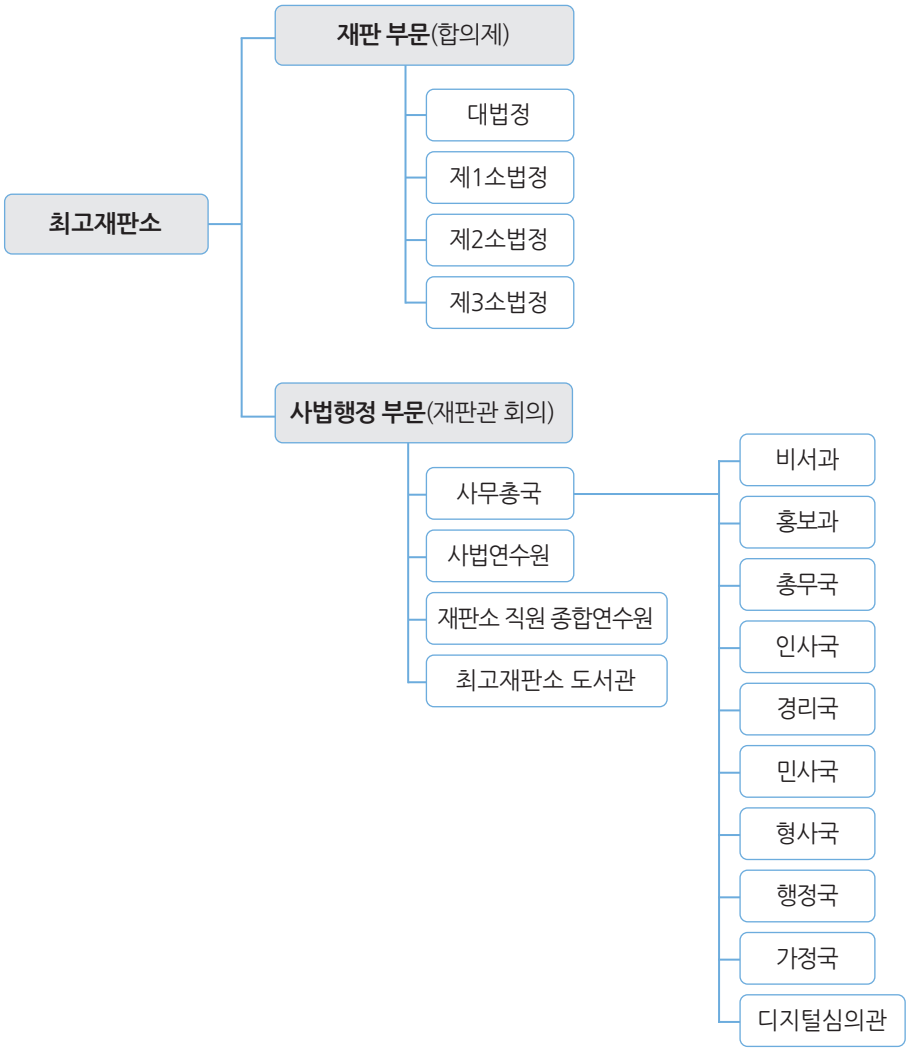

98) 최고재판소 웹페이지의 조직도를 저자가 번역한 것이다. https://www.courts.go.jp/saikosai/about/sosiki/index.html (2026. 7. 1. 최종확인).

3. 검토회 위원목록

2025. 9. 1. 기준

성명	직함	소속
이케다 사치코 (池田知子)	판사	도쿄지방재판소
이노우에 유스케 (井上裕介)	변호사	아이치현 변호사회
우에츠카 마유 (上塚真由)	부장	산케이신문 동경본사 총무본부
오쿠야마 신이치 (奥山信一)	교수	도쿄과학대학 환경 · 사회이공대학원
카키우치 슈스케 (垣内秀介)	교수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카와이데 토시히로 (川出敏裕)	교수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사코 카즈에 (佐古和恵)	교수	와세다대학 기간이공학부 정보이공학과
시마도 쥰 (島戸純)	판사	도쿄지방재판소
하타나카 요시히코 (畑中 良彦)	부장검사	최고검찰청 공판부
하라 타쿠미 (原 琢己)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야마모토 카즈히코 (山本 和彦)	교수	쥬오대학 법무연구과

4. 검토회의 주요 내용

일본의 재판신속화 검증은 단순히 재판이 빠른지 느린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제도가 어떤 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해명해 온 장기적 검증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검증검토회는 제1회부터 제73회까지 총 11개의 기간으로 나뉘어 운영되었고, 각 기간은

하나의 검증보고서를 중심으로 문제의식, 분석 대상, 방법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겨지는 과제를 축적해 왔다.[99] 이 과정은 “재판이 지연되어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 “어떤 재판 구조가 적정하고 충실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표 9] 각 기간별 회의 회차 및 일정 정보

기간	회차	일정
1	1 - 10	2003. 12. - 2005. 5.
2	11 - 20	2005. 7. - 2007. 5.
3	21 - 30	2007. 7. - 2009. 5.
4	31 - 40	2009. 7. - 2011. 5.
5	41 - 50	2011. 7. - 2013. 5.
6	51 - 53	2013. 9. - 2015. 2.
7	54 - 58	2015. 5. - 2017. 5.
8	59 - 60	2017. 10. - 2018. 7.
9	61 - 65	2019. 2. - 2021. 5.
10	66 - 69	2021. 10. - 2023. 5.
11	70 - 73	2023. 10. - 2025. 5.
12	74 -	2025. 10. -

가. 제1기간 (제1–10회)

이 기간은 재판 지연이라는 문제를 인상이나 정치적 주장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의 문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초창기 회의에서는 “재판이 정말로 느린가”를 먼저 입증할 수 있어야 이후의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평균 심리기간, 사건 수, 장기 사건 비율 등 기초 통계가 대대적으로 정리 · 공개되었다.

99)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하나의 검증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의 회의 내용을 통합하여 그 결과로서 발간된 제1회 검증보고서는 정책 처방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현황을 보여주는 진단 결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이후 모든 검증은 공통의 사실 인식을 전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나. 제2기간 (제11–20회)

제2기간에서는 검증의 초점이 현황 진단에서 재판 장기화의 원인 규명으로 이동하였다. 평균 심리기간이라는 결과 지표를 넘어서, 당사자 수, 증인 수, 사건 유형, 절차 단계별 소요 기간 등 심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해하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체 사건 중 소수에 불과한 2년 초과 사건이 전체의 평균 기간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장기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라 분석의 중심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1심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항소심으로 이월되며 전체 심리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기간을 통해 재판 지연은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 · 구조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다. 제3기간 (제21–30회)

제3기간은 검증 대상이 사건 유형의 차원으로 확장된 시기였다. 민사와 형사 중심의 분석에서 나아가, 유산분할을 포함한 가사 사건과 의료 그리고 건축 등 전문 사건이 정식으로 검증 대상에 포함되었다. 몇몇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감정과 전문지식에 크게 의존하고, 그 결과 절차가 구조적으로 장기화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기화의 핵심 원인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 전후의 쟁점정리 실패와 절차 관리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 나아가 법원과 변호사의 업무 부담, 전문성 축적 정도 등 조직 및 인력 기반 문제도 심리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본격화되었다. 이 기간의 말미에 개최된 회의에서 장기화 요인이 충분히 실증되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정책적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라. 제4기간 (제31–40회)

제4기간은 정책적 대응이 제시되는 단계로 전환된 시기였다. 제3기간까지 축적

된 원인 분석을 전제로, 쟁점정리 강화, 합의부 및 전문부 활용, 인력 · 물적 기반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다. 다만 쟁점정리 강화 방식과 방어권 보장 사이의 긴장, 합의부 확대와 인력 제약 사이의 현실적 한계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재판 신속화가 단일 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제도, 운영, 조직 기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과제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이 기간에 작성된 제4회 검증보고서는 이후 모든 검증의 기준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마. 제5기간 (제41–50회)

제5기간에서는 검증의 시야가 재판 내부에서 재판 외 사회적 요인으로 확장되었다. 고령화, 가족 구조 변화, 보험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확산 등이 재판 사건의 양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사건 수 감소가 곧 분쟁 감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분쟁이 재판 이전 단계에서 흡수되거나 다른 경로로 해결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재판에 유입되는 사건의 질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제5회 검증보고서는 약 10년에 걸친 검증의 중간 총정리로서, 이후 검증 방향을 정책 제안 중심에서 운용 실태 점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다.

바. 제6기간 (제51–53회)

제6기간은 정책 제안 단계에서 사후 점검 단계로 본격 진입한 초기 구간이다. 이 시기에는 제4기간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하려는 접근이 채택되었다. 민사 사건에서는 쟁점정리가 여전히 병목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사. 제7기간 (제54–58회)

제7기간은 사후 점검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건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된 시기이다. 사건 수는 줄어드는데 평균 심리기간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단순한 운영 실패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특정 사건군이 명확히 지목되지는 않았고, “사건의 질이 변하고 있다”는 추상적 인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쟁점정리의 어려움 역시 노력 부족이 아니라 사건 성격 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 기간은 이후 비정형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 분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의식 형성기로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다.

아. 제8기간 (제59–60회)

제8기간은 사건의 질이 변화한다는 문제가 구체적 사건 유형에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각 회의에서는 사건 수 감소와 평균 심리기간 상승이라는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비정형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사건이 명시적으로 지목되었다. 이 사건군은 법적 구성과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쟁점정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비정형 손해배상은 이 시점부터 관찰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이로써 이 기간은 “사건의 질 변화”가 추상적 인식에서 실증적 분석 주제로 전환된 결정적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자. 제9기간 (제61–65회)

제9기간에서는 재판 운영의 세부 단계가 심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일 전 · 기일 간 준비, 구두 협의의 기록 범위, 기일 간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각 회의에서는 기존 통계 지표로는 이러한 운영상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는데, 특히 디지털화 이전과 이후의 운영 방식 차이가 평균 지표에 왜곡된 형태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차. 제10기간 (제66–69회)

제10기간은 디지털 전환, 특히 민사 IT화 도입의 효과를 점검한 시기였다. 디지털 도구가 쟁점정리 방식과 재판 운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심리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운용 개선만으로는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재차 확인되었다. 형사 사건에서는 주장의무와 증거 개시를 둘러싼 구조적 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논의되었다. 즉 이 기간

은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새로운 과제임을 분명히 한 단계였다.

카. 제11기간 (제70–73회)

제11기간에서는 디지털 절차가 재판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민사에서는 쟁점정리의 기록화와 가시화가 심리의 충실성과 당사자의 이해를 높인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구두 협의 내용이 어디까지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형사 사건에서는 SNS 대화 등 디지털 증거의 폭증이 공판 전 정리 절차를 구조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아울러 가사 사건에서는 기일 간격 문제와 웹조정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되었다.

타. 제12기간 (제74회–)

제12기간은 제11기간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 검증 주기의 방향을 설계하는 전환 단계이다. 제74회 회의에서는 페이즈 3 전후 비교를 위한 정점 관측 방식(point-of-peak observation)의 실정조사,[100] 동일 법원에 대한 시점별 조사, 그리고 민사 · 형사 · 가사 전반에 대한 검증 대상 확장이 논의되었다. 특히 디지털화, 코로나 이후 재판 환경의 변화, 약 25년에 이르는 검증 성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기간은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검증 사이클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표 10] 검증검토회 기간별 주요 내용

기간	주요 내용
제1기간 (실태 진단 단계)	• 재판 지연 인식의 사실 여부를 통계로 먼저 입증할 필요성 • 평균 심리기간 지표의 한계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통계 공개 선택 • 제1회 보고서를 정책 처방이 아닌 '현황 진단'으로 성격 규정
제2기간 (장기화 요인 분석 단계)	• 현황 진단에서 장기화 원인 규명으로 검증 초점 전환 • 당사자 수 · 증인 수 · 사건 유형 등 구조적 요인 분해 분석 • 1심-항소심 간 쟁점 이월 구조가 장기화에 미치는 영향 인식

100) 이는 고정된 특정 시점에서 특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의 분석법이다.

기간	주요 내용
제3기간 (사건 유형 확장· 구조 분석 단계)	• 가사 사건과 전문 사건을 정식 검증 대상으로 확장 • 감정 자체보다 감정 전후 쟁점정리 실패가 핵심 병목이라는 인식 • 법원·변호사의 업무 부담과 전문성 축적 문제가 장기화 요인으로 부각
제4기간 (정책적 대응 제시 단계)	• 원인 분석에서 정책적 대응 제시 단계로의 명확한 전환 • 쟁점정리 강화, 합의부·전문부 활용 등 구체적 정책 방안 논의 • 인력·물적 기반 없는 정책의 한계 인식 및 기준점 보고서 확립
제5기간 (사회적 요인·중 간 총정리 단계)	• 고령화·ADR 등 재판 외 사회적 요인을 검증 범위에 포함 • 사건 수 감소 ≠ 분쟁 감소라는 인식 확산 • 약 10년 검증의 중간 총정리 및 이후 방향 전환
제6기간 (정책 사후 점검 단계)	• 정책 제안에서 실제 작동 여부 점검으로 검증 성격 전환 • 민사 쟁점정리의 지속적 병목과 의사소통 문제 확인 • 사건 난이도 상승과 운용 개선의 지역 편차 문제 부각
제7기간 (사건의 질 변화 인식 단계)	• 사건 수 감소와 평균 심리기간 재상승 현상 인식 •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닌 사건 구조 변화 가능성 제기 • '사건의 질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 형성기
제8기간 (형사 사건 실정조사 확대 단계)	• 비정형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특정 • 해당 사건군이 쟁점정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 • 사건의 질 변화가 추상적 인식에서 실증 분석 주제로 전환
제9기간 (재판 운영의 세부 단계 분석)	• 기일 전·기일 간 준비, 기일 간격 등 운영 세부 단계 집중 검토 • 구두 협의의 기록 범위와 쟁점정리 불안 문제 부각 • 기존 통계 지표로 운영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 확산
제10기간 (디지털 전환 효과 점검 단계)	• 민사 IT화 등 디지털 전환 효과 점검 • 디지털 도구가 쟁점정리·재판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운용 개선만으로는 장기화 해결에 한계 존재 재확인
제11기간 (디지털 상시 운영 단계)	• 디지털 절차가 재판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정착 • 민사 기록화와 비기록 원칙 간 긴장, 형사 디지털 증거 폭증 문제 • 신속화를 '기간 단축'이 아닌 '충실한 재판 구조'로 재정의
제12기간	• 제11기간 논의 종합 및 다음 검증 주기 설계 • 정점 관측 방식의 실정조사 도입 • 약 25년 검증 성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렬

제4절 검증보고서

I. 개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고재판소는 신속화법에 따라 재판의 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판소 절차에 소요된 기간의 상황, 그 장기화 요인과 그 외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동시에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2년마다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신속화법 제8조). 이것이 바로 검증보고서이다.

II. 검증보고서의 법적 근거 및 작성 주체

1. 법적 근거

「재판의 신속화에 대한 검증에 관한 규칙」(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規則) 제1조에 따르면, 최고재판소가 신속화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 절차의 상황에 대한 검증에 대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이 검토회를 개최하여,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및 학식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리고 제3조에서 그 결과를 인터넷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2005. 9. 24. 개정된 「재판의 신속화의 검증에 관한 검증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の運営に関する細則)은 검토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11] 재판의 신속화의 검증에 관한 검증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

1. 검토회의 인원은 총 15인 이내로 한다. 또한 검토회 발족시 위원은 재판관 2인, 검찰관 1인, 변호사 2인, 그 외 학식을 갖춘 자 5인의 총 10명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좌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좌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중 좌장대리를 지명할 수 있다.
2. 검토회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 외의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검토회는 검증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검토회는 원칙적으로 최고재판소에서 개최한다.
5. 검토회에서는 재판절차 유형마다의 특성에 따라 재판절차의 상황 및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결과에 따른 분석 내용 및 방법, 그 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6. 검토회의 개최 결과 개요를 작성한다. 또한 개최 결과 공표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7. 검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이 처리한다.

2. 작성 주체

검증보고서의 작성 주체에 관한 규칙 등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심의관실, 총무국 참사관, 기획관, 민사국, 행정국, 가정국, 형사국의 관계관, 국부 판사보 등 최고재판소 사무국 인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검증검토회 사무국이 존재하여, 이들을 주축으로 검증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보인다.[101] 사법통계연보는 이와 달리 디지털 종합정책실이 담당하므로, 양자는 그 성격이나 작성 주체, 방식 등이 상이한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역대 검증보고서의 내용 분석

1. 제1회

검증의 첫걸음은 재판이 정말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실제 통계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회

101) 中尾正信, 韓国大法院司法政策研究院 質問に対する回答要旨, 사법정책연구원 내부자료 (2025. 11. 5.), 5면.

검증보고서는 정책적 평가나 제도 비판으로 곧바로 나아가기보다, 우선 재판의 실제 처리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은 주로 지방재판소 제1심의 민형사 사건으로 설정되었고, 약 10년에 걸친 장기 검증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강조되었다.

제1회 보고서는 평균 심리기간, 사건 수, 장기 사건 비율 등 기본적인 통계를 중심으로 재판 운영의 전반적 모습을 정리하였다. 다만 평균 심리기간이라는 지표가 직관성을 지니는 반면, 소수의 장기 사건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함께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고서는 지표를 지나치게 축약하거나 해석을 서두르기보다, 가능한 한 많은 원자료와 분포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수백 개에 이르는 표와 그래프를 통하여 사건 유형, 절차 단계, 증거 조사 여부 등에 따른 심리기간의 차이가 시각적으로 제시된 점은 이러한 태도가 잘 나타난다.

민사 사건에서는 증거 조사나 감정이 수반되는 경우 심리기간이 현저히 길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인적 증거가 많거나 감정이 실시되는 사건에서는 평균 심리기간뿐 아니라 기일 수와 기일 간격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형사 사건에서도 증인 수, 부인 여부, 구속 여부에 따라 심리기간에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판 지연이 단지 재판부의 운영 태도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사건 구조와 절차적 요소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보고서는 사건 수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재판 부담의 완화로 연결하지는 않았다. 일부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특정 사건군은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전체 평균에 구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1회 검증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디까지나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렀고, 그 원인을 단정하거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해당 보고서가 제시한 재판지연의 원인은 ①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내재하는 요인, ② 당사자에 관한 요인, ③ 재판소에 관한 요인, ④ 그 밖의 요인이었다. 결국 제1회 보고서는 재판신속화 논의를 위한 공통의 사실 인식을 형성하는 기초 자료이자, 이후 모든 검증의 기준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2. 제2회

제2회 검증보고서에 이르면서 검증의 관심은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

는 질문에서 '무엇이 재판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하였다. 제1회 보고서가 현황을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면, 제2회 검증보고서는 재판의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사건표가 개정되었고, 민사 사건에는 인적 증거 조사 횟수가, 형사 사건에는 공판 전 정리 절차의 실시 여부 등 새로운 통계 항목이 추가되었다.

민사 제1심 사건 분석에서는 인적 증거 조사와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리기간이 뚜렷하게 길어지는 경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증인 수가 증가할수록 기일 수와 기일 간격도 함께 늘어나 전체 심리기간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의료, 건축, 노동 관련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후 전문 사건 분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형사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 전 정리 절차가 실시된 사건을 중심으로, 증인 수와 피고인 수가 늘어날수록 심리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을 비교하면, 부인 사건에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심리기간도 장기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형사 재판의 장기화 역시 단순한 재판부 운영의 문제라기보다 사건 내용과 절차 구조에 깊이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회 보고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제1심에서 충분히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행할 경우 전체 재판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이는 재판의 신속성을 단일 심급 차원에서만 논할 수 없고, 심급 간 연계 구조까지 함께 시야에 넣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2년을 초과하는 장기 사건이 전체 평균 심리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전체 사건 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수의 장기 사건이 평균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도 구체적 해결책이나 제도 개편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제2회 검증보고서는 장기화의 원인을 보다 구조적 · 분석적인 차원에서 해명함으로써, 제1회 보고서가 마련한 사실 인식의 토대 위에 본격적인 원인 분석의 층위를 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3. 제3회

제3회 검증보고서의 의미는 분석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 있다. 제1회와 제2회 보

고서가 주로 민사와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 장기화 현상을 파악하였다면, 제3회는 그 범위를 가사 사건과 전문 사건으로 확장함으로써 문제의 외연과 내연을 동시에 확대하였다. 이는 재판 장기화가 일부 특수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전환이었다.

가사 사건 가운데서는 유산분할 사건이 대표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졌고, 이 사건군에서 평균 심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장기화가 단순한 절차 지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감정적 대립, 재산 평가의 복잡성, 조정과 심판의 관계와 같은 사건의 본질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심판 단계로 이행할 경우 심리기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전문분야 사건의 분석에서는 의료, 건축, 노동 관련 사건이 다른 민사 사건에 비해 구조적으로 장기화된다는 점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들 분야는 감정과 전문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증거 조사 단계가 복잡해지고, 그 결과 기일 수와 기일 간격이 모두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보고서는 장기화의 원인을 감정 자체에만 귀속시키지 않고, 감정 전후에 이루어지는 쟁점정리와 절차 관리의 어려움까지 함께 문제 삼는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회차에서 재판 장기화 논의가 사건 구조의 문제를 넘어 법원과 변호사의 업무 환경, 조직 운영, 전문성 축적의 한계와 같은 제도적 · 조직적 요인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재판관 1인당 사건 부담이나 변호사 측 준비의 질적 편차 역시 심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재판 지연을 개인의 역량 문제로 환원하지 않는 시각이 분명해졌다.

한편 전체 사건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가사 · 전문 사건과 같은 난도 높은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평균 심리기간의 변화는 단순한 운영 효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사건 구성 자체의 질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제3회 보고서 역시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처방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장기화의 유형과 원인이 상당 부분 축적 · 정리된 만큼 이후 단계에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제4회

제4회에 이르러 검증보고서는 비로소 진단의 단계에서 처방의 단계로 옮겨 간다. 제1회부터 제3회까지가 재판 장기화의 실태와 원인을 실증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이었다면, 제4회는 그 분석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답변을 시도한 보고서이다. 여전히 통계 분석이 중심축을 이루지만, 그 목적은 현상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민사 사건에 관해서는 쟁점정리 단계가 재판 장기화의 핵심 병목으로 지목되었다. 통계와 사례 분석 모두, 쟁점이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증거 조사와 기일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심리기간도 구조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쟁점정리, 기일 전 준비의 충실화, 심리 계획의 명확화 등이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보고서는 쟁점정리 강화가 방어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한다.

전문분야 사건, 특히 의료 · 건축 사건에서는 합의부나 전문부를 활용한 집중 심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건군은 감정과 전문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단독 재판으로는 심리 부담이 크다는 점이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부 확대가 인력과 재정의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현실 역시 분명히 인식되고 있어,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은 강행적 처방이라기보다 조건부 방향 제시에 가까웠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 전 정리 절차가 확대되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서는 다소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였다. 제1회부터 제3회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증인 수, 피고인 수, 부인 여부 등이 심리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공판 전 정리의 충실화가 장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회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또 다른 지점은, 재판 신속화가 단순한 제도 개편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재판관 1인당 사건 부담, 지원 인력의 역할, 법정과 설비의 물리적 제약 등도 모두 장기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제4회 검증보고서가 제시한 정책적 대응은 어디까지나 방향 설정의 성격을 띠며, 그 효과는 이후 검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이런 의미에서 제4회 보고서는 재판 장기화 논의를 정책 제안의 단계로 이끌어 올린 결정적 전환점이자, 이후 회차들의 사후 점검을 위한 기준점으로 기능하였다.

5. 제5회

제5회 검증보고서는 시선을 법원 내부에서 법원 외부로 돌린다. 앞선 회차들이 재판의 실태, 장기화 요인, 정책적 대응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면, 제5회는 그 논의를 바탕으로 “재판에 유입되는 분쟁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약 10년에 걸친 재판신속화 검증의 중간 정리라는 성격도 이 보고서의 위상을 규정한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규 사건 수 감소 추세를 확인한다. 그러나 그 감소가 곧 분쟁 자체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재판 이전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거나, 재판 외적인 경로를 통해 처리되는 비율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시각은 재판 통계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사회적 분쟁 해결 구조의 변화를 문제의 중심으로 끌어온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보험 제도, 행정적 조정, 민간 분쟁 해결 기구 등의 확산이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의료, 건축, 소비자 분쟁과 같은 분야에서는 실제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분쟁이 종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에 제기되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복잡한 사안에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가 가사 사건과 민사 분쟁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논의된다. 상속, 유산분할, 부양, 돌봄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은 감정적 요소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건 수는 줄어들지만 남아 있는 사건의 질적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며, 제5회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평균 심리기간 증가의 중요한 배경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6. 제6회

제6회 검증보고서의 관심사는 제4회 검증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모아진다. 제5회 보고서가 사회적 환경 변화까지 시야를 넓힌 중간 총정리의 성격을 가졌다면, 제6회 보고서는 다시 재판 운영의 실제 장면으로 돌아와 제안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려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회차

의 특징은 새로운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방향 설정이 현장에서 어떠한 결과와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관찰하는 데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쟁점정리가 여전히 장기화의 핵심 병목으로 남아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제4회에서 제시된 쟁점정리 강화 방안이 일부 재판부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지만, 사건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비전형적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쟁점정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오히려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관여를 강화하는 운영 방식이 반드시 심리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가사 사건은 당사자 간 감정적 대립이 강하고 조정과 심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운영상 개선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사 사건을 일반 민사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제도나 지침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재판부별 · 지역별로 지침 활용 방식과 사건 특성이 상이하여, 정책 효과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6회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차분히 추적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바로 그 점에서 제6회 검증은 정책 제안 단계에서 사후 점검 단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보여주는 회차라고 할 수 있다.

7. 제7회

제7회 검증보고서는 제6회에서 시작된 사후 점검의 흐름을 이어받는다. 다만 이 회차는 단순히 기존 정책의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징후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과 재판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감지하는 작업이 겹쳐지는 국면에 해당한다.

민사 제1심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최근 몇 년간 사건 수는 줄어드는 반면 평균 심리기간은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 관찰되었다. 이러한 통계적 괴리는 제4회에서 제시된 정책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쟁점정

리 강화나 재판관 관여 확대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평균 심리기간이 쉽게 단축되지 않는 현실은, 기존의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른 구조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사 사건에서도 비슷한 관찰이 이루어졌다. 재판관의 관여를 강화하더라도 당사자 간 감정 대립, 조정과 심판의 반복, 사건 특유의 생활세계적 맥락 등으로 인해 심리기간이 쉽게 단축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 사건의 특수성이 정책적 대응의 효과를 제약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아울러 동일한 제도와 지침 아래에서도 재판부별 운용 방식과 지역별 사정에 따라 심리기간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이는 재판 신속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제7회 검증보고서는 사후 점검을 지속하는 동시에, 재판 장기화 논의가 조만간 보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문제로 이동할 것임을 예고하는 연결 고리로 기능한다.

8. 제8회

재판 장기화 논의의 초점이 비로소 구체적인 사건군에 수렴하는 회차가 바로 제8회 검증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비교적 추상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사건의 질 변화'를 특정 유형의 사건에 기초하여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특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사건 수 감소와 평균 심리기간 상승이라는 통계적 괴리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비정형 손해배상, 곧 '기타 손해배상' 사건의 증가를 지목하였다.

민사 사건 분석에서는 이 사건군이 평균 심리기간뿐 아니라 기일 수와 기일 간격을 함께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비정형 손해배상 사건은 법적 구성과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정리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증거 조사와 서면 공방이 반복되기 쉽다. 이로 인하여 제4회에서 제시된 쟁점정리 강화 정책도 이 사건군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었다. 결국 평균 심리기간 상승은 단순한 운영 미비나 정책 실패라기보다, 재판에 유입되는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 데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원재판[102] 대상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재상승이 본

102) 일본의 재판원제도에 관해서는 아래의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한인섭, 일본의 재판원제도, SNU일본연구총서 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격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제8회 보고서는 형사 사건에 대한 접근 역시 단순 통계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정조사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특히 공판 전 정리 절차가 증거 구조의 복잡화와 맞물려 장기화의 새로운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증인 수 증가, 피고인 수 증가, 부인 사건 비중 확대 등이 심리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재확인되었다.

가사 사건은 이 회차에서 중심 분석 대상으로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민사와 형사에서 확인된 '사건의 질 변화'가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수준에서 언급된다. 이처럼 제8회 검증보고서는 "왜 평균이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한 회차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검증이 재판 운영의 세부 단계와 디지털 전환 문제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9. 제9회

제9회 검증보고서는 기존의 재판신속화 검증 틀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부 충격이 재판에 미친 영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이다. 이전 회차들이 주로 구조적 · 장기적 요인을 중심으로 장기화를 분석하였다면,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 변화가 재판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분석의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이 보고서는 위기 상황이 신속성에 미친 부정적 효과뿐 아니라, 새로운 운영 방식의 가능성까지 함께 조명한다.

최신 통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민사 · 형사 · 가사 사건 전반에서 코로나 확산 시기 기일 연기와 출석 제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제약이 존재하였음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그 영향이 모든 사건 유형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서는 충격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증거 조사나 대면 절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심리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제9회 보고서의 특징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통계 수치의 변동으로만 포착되지 않고, 실정조사를 통하여 재판 운영 방식의 구체적 변형으로까지 확인되었다는 데 있다. 감염 방지 조치로 온라인 회의, 전화 협의, 서면 중심 심리가 확대되었고, 이는 재판 진행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 대응을 넘어 향후 재판 운영의 하나의 선택지로 기능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민사 사건에서는 기일 전 준비와 기일 간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대면 기일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서면 교환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심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출석, 구속 여부, 공판 전 정리 절차 운영이 코로나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일부 사건에서는 서면 정리와 사전 협의가 일정한 효율성을 확보하였지만, 대면성이 강한 절차에서는 한계 역시 분명하였다. 가사 사건 또한 조정과 심판 과정에서 대면 접촉 제한의 영향을 받았으나, 가족관계 분쟁의 특성상 비대면 방식이 갖는 제약도 적지 않음이 드러났다.

결국 제9회 검증보고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판 운영 체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재판 신속화 논의가 평균 지표나 제도 설계 수준을 넘어 실제 운영 과정의 세부 설계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 대응 국면에서도 검증의 분석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운영 방식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이후의 디지털 전환 논의를 여는 회차로 평가할 수 있다.

10. 제10회

제10회 검증보고서는 신속화법 시행 이후 약 20년에 걸친 검증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서, 현재 검증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보고서이다. 통계 분석과 실정조사를 병행하는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개별 현상의 진단에 그치지 않고 그간 축적된 논의가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여 왔는지를 함께 살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사 · 형사 · 가사 사건 전반에 대한 최신 통계 분석에서는 사건 수 감소와 평균 심리기간의 정체 또는 증가라는 기존 경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특히 쟁점정리와 증거 정리 단계가 심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재차 드러났다. 이는 제6회부터 제9회에 걸쳐 누적되어 온 “운영의 세부 단계가 재판의 신속성을 좌우한다”는 문제의식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번 보고서가 이전 회차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은 민사 사건에서의 IT 화 효과를 본격적으로 평가하였다는 데 있다. 서면 제출의 전자화, 일정 관리의 디지털화, 비대면 협의 수단의 활용은 일부 사건에서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모든 사건 유형에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사건

의 복잡성이나 증거 구조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공판 전 정리 절차와 증거 관리가 여전히 심리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인 수와 증거량이 많은 사건에서는 디지털 도구의 활용만으로 공판 전 정리의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가사 사건 역시 실정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재판관의 관여와 조정 절차가 심리기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디지털화나 운영 개선이 가사 사건의 신속성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민사 사건에 비해 보다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제시된다.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제10회 보고서가 디지털 도구를 재판 운영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위치 지을 뿐, 사건의 질적 복잡성이나 조직 · 인력 기반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만능 해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10회 검증보고서는 지난 20년의 검증을 정리하면서도, 앞으로의 재판신속화 논의가 기술적 개선과 구조적 개혁을 함께 사유해야 한다는 과제를 분명하게 남긴다.

Ⅳ. 제11회 검증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개요

제11회 검증보고서는 재판신속화 검증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선언하는 보고서로서, 그 중심에는 재판절차의 디지털화라는 **전제 조건**이 자리한다. 이전 회차들이 디지털 도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단계였다면, 제11회 검증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재판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민사 제1심 사건, 형사 제1심 사건, 가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재판소, 검찰청, 그리고 변호사회를 대상으로 실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로 민사 제1심 사건에 대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주하는 쟁점과 향후 과제, 합의체 심리 현황과 과제, 그리고 형사 제1심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에서의 공판전 절차 장기화 요인이나 충실한 공판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가사조정에서의 운영 개선시도나 그 효과와 향후 과제, 인사소송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쟁점정리 등의 실현 방안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서두에서 재판신속화 검증이 단순한 기간 단축 논의를 넘어, 재판의 충실성과 수용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한다.

특히 민사 분야에서는 전자 제출, 사건관리 시스템, 웹회의 등 디지털 수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재판 운영 방식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특히 쟁점정리 과정에서 서면과 구두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고, 그 결과 쟁점의 가시화와 당사자 이해가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제시된다. 다만 구두 협의의 내용이 어디까지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과 부담도 동시에 지적되며, 기록화와 비기록 원칙 사이의 긴장이 민사 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폭증이 공판 전 정리 절차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영상, 전자기록, 포렌식 자료 등 객관 증거가 증가하면서, 증거 정리와 쟁점 압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운영 미숙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재판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나아가 가사 사건과 인사 사건에서도 디지털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웹조정, 전자적 의견 교환 등이 도입되면서 기일 운영의 유연성은 높아졌으나, 사건의 성격상 대면 절차가 갖는 중요성도 여전히 크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특히 기일 간격 관리와 조정 절차의 설계가 심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이처럼 제11회 보고서는 민사, 형사, 그리고 가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평균 심리기간만으로 재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사건의 질, 운영 방식, 디지털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고서 전반을 관통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증에서는 통계 지표의 재설계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관점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검증보고서는, 재판신속화 논의를 '속도의 문제'에서 **재판 구조의 문제**로 점진적으로 이동시킨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17] 검증보고서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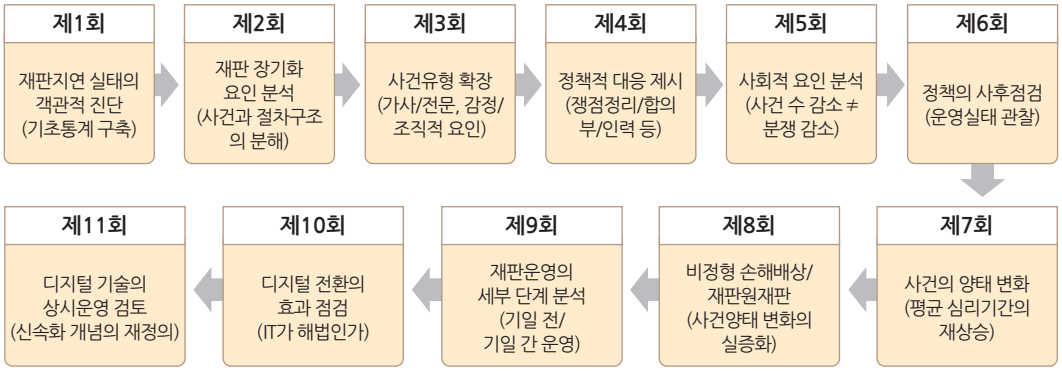

2. 목차

[표 12] 제11회 검증보고서 세목차

서론

Ⅰ. 본 보고서의 개요

Ⅱ. 재판절차의 디지털화 현황과 향후

1 서론

2. 민사소송절차의 디지털화

3. 가사사건절차 등의 디지털화

4. 검증검토회에서의 논의

Ⅲ. 지방재판소에서의 민사 제1심 사건의 개황 및 실정

1. 민사 제1심 사건의 개황

1.1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전체의 개황

1.2 개별 사건 유형의 개황

1.2.1 의료 관계 소송

1.2.2 건축 관계 소송

1.2.3 지적재산관 소송

1.2.4 노동 관계 소송

1.2.5 행정 사건 소송

2. 민사 제1심 사건에 관한 실정조사 결과
3. 검증검토회에서의 논의
4. 향후 과제

Ⅳ. 지방재판소에서의 형사 제1심 사건의 개황 및 실정

1. 형사 제1심사건의 개황
1.1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전체의 개황
1.2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의 개황
2. 형사 제1심 사건에 관한 실정조사 결과
3. 검증검토회에서의 논의
4. 향후 과제

Ⅴ. 가정재판소에서의 가사 사건 및 인사소송 사건의 개황 및 실정 등

1. 가사 사건의 개황
1.1 가사 사건 전체의 개황
1.2 개별 사건 유형의 개황
1.2.1 유산분할 사건
1.2.2 혼인관계 사건
1.2.3 자녀의 감호 사건
2. 인사소송 사건의 개황 등
2.1 인사소송 사건의 개황
2.2 심리기간의 장기화 경향에 관한 분석
3. 가사사건 및 인사소송 사건에 관한 실정조사의 결과
4. 검증검토회에서의 논의
5. 향후 과제

Ⅵ. 상고심에서의 소송 사건 개황

1. 고등재판소에서의 항소심 사건 개황
1.1 민사소송 사건의 개황
1.2 행정사건 소송의 개황
1.3 형사소송 사건의 개황
2. 최고재판소에서의 상고심 사건 개황
2.1 민사소송 사건의 개황

2.2 행정사건 소송의 개황
2.3 형사소송 사건의 개황
자료

3. 실정조사

가. 개요

위의 세목차에서도 드러나듯이 제11회 검증보고서는 민형사 제1심 사건과 가사 사건의 개황을 논함에 있어서 실정조사(実情調査)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2회 보고서까지는 재판소와 재판관을 대상으로 실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 점차 대상이 확대되어 제3회 검증보고서에서는 재판관과 변호사 쌍방에 대한 실정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판관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103]

아래에서는 제11회 검증보고서에서 어떠한 실정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민형사 분야에 한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나. 민사 제1심 소송 실정조사 결과

민사 제1심에 관한 실정조사는 주로 쟁점정리에 관한 것이었다. 쟁점정리는 재판소와 당사자가 주요한 쟁점이나 중요 증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해당 쟁점에 집중시켜, 충실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정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이러한 인식 공유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23년 3월에는 쌍방 당사자가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변론준비절차, 2024년 3월에는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구두변론 운용이 개시되어, 민사소송 디지털화 2단계에 돌입하였다. 또한 2022년 4월 이후에는「민사소송법」제132조의10 등에 따라

103) 山本和彦・相澤眞木・中尾正信・榎本光宏・川山泰弘,“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とデジタル世代につなぐ理念 ―民事訴訟を中心に―”, 判例タイムズ 1517号 (2024), 10면.

서 준비서면 등 재판서류의 전자제출이 가능한 시스템(민사재판 서류 전자제출 시스템, mints)의 운용이 개시되었다.[104] 이러한 측면에서 재판소에서 사용되는 위 시스템이나 온라인 회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쟁점정리의 운용 개선 방식이 어느 정도 침투하였고,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시도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정조사를 수행하였다고 한다.[105]

구체적으로, 쟁점정리의 초반부에 어떠한 구두협의의 방식과 내용을 채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느 기일에 어느 방식으로 서면을 작성 · 제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예컨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범위와 정도, 서면답변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과 구두협의에 중점을 두는 방식인지 등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기간을 구분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구두협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의 공유, 댓글 작성과 확인 등을 활용한 사례도 소개되었다.[106]

나아가 합의부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내부 회의를 통해 합의부를 구성한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107]

다. 형사 제1심 소송 실정조사 결과

한편 형사 제1심 소송에 관해서도 실정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재판원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의 공판전 정리절차를 중심으로 한다. 이에 관하여 사건 내용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고, 그중에서도 CCTV 영상이나 SNS상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폭증하였을뿐더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 늘어났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 더욱이 재판원재판의 특성상 증거능력이 크게 의심되지 않음에도 재판원이 이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어서 증거능력을 감정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108] 그에 덧붙여서 조직적이고 광역적인 사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공판전 정리절차 기간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라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공판전 정리절차의 충실 · 신속화를 위해 취해지는 시도 등에 관하여,

104) “mints”는 민사재판 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의 일본어인 ‘民事裁判書類電子提出システム’의 발음(MINji sai-bansyorui denshi Teisyutsu System)의 약어이다.
105)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1回 検証報告書 (2025), 106면.
106)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1回 検証報告書 (2025), 107면.
107)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1回 検証報告書 (2025), 111면.
108)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1回 検証報告書 (2025), 136면.

개별 사안 및 심리절차 전반에 관한 것이나, 재판원재판 대상이 아닌 사안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의 공판준비 실정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109]

4. 재판절차의 디지털화

가. 개요

2022년 5월 25일 공포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개정법안」(2022년 법률 제48호)은 민사소송절차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온라인 신청, 소송기록 전자화, 소송 전자송달, 수수료 등 전자납부 등)하고 있다.[110]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현행 민사소송법 제132조의10 등에 의해 준비서면이나 서증 등의 재판 자료를 전자제출할 수 있는 mint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림 18] 일본 재판절차 디지털화의 3단계[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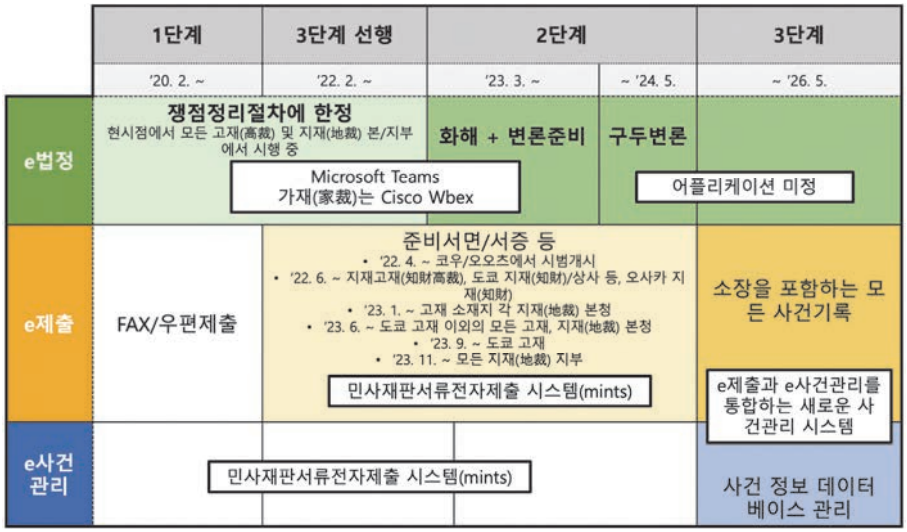

109)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1回 検証報告書 (2025), 137-138면.

110) 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법무성 민사국 자료 참조, https://www.moj.go.jp/MINJI/minji07_00316.html (2026. 7. 1. 최종확인); 법률신문, "일본의 전자소송제도" (2022. 8. 15.),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0824 (2026. 7. 1. 최종확인). 다만, 그 내용 중 '법정 심리기간 소송 절차'는 특기할만하다. 이 절차는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또는 일방의 신청에 다른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개시되고, 절차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심리기간을 한정한다(개정법 제381조의2, 제381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하고 있다.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4), 120-123면.

111) 平岡敦, "裁判IT化最前線実務はどう変わるか？[前編]", NIBEN 제5호 (2023), 21면 [그림 6]을 토대로 저자가 작성한 것이다.

이후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도 디지털화를 향해 개정되었고, 그 영향이 재판절차의 심리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 신속화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증검토회에서도 재판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제11회 검증보고서에서도 담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검증보고서에서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소에서 사용하는 mints나 온라인 회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쟁점정리의 운영 개선이 어느 정도 실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시도를 많은 재판관과 변호사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합의체에 의한 심리의 현황과 과제 등에 관한 실정조사를 수행하였다.[112)]

나. 검증검토회에서의 논의

검토회에서는 재판절차 디지털화에 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화 특유의 강점에 착목하여 단순히 종이를 전자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활용하여 재판을 얼마나 효율화할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점에서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실정조사의 결과에 입각하여 mints를 이용하여 제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리의 신속화뿐만 아니라 재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지적이나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데이터를 합의체에서 공유하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구두협의를 충실화하기 위하여 간단한 협의나 정보공유는 사전에 채팅 등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실정조사에서는 온라인 회의 어플리케이션 기능 중 하나인 투고 기능을 사용하여 구두협의 결과를 공유하거나 간단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심리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진행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재판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비용과 효과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서기관 등 재판소 직원과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113)]

나아가 이번 실정조사에서는 재판소로부터 투고기능을 활용한 구두협의 결과 공유 외에도, 채팅을 통한 서면제출 독촉 사례가 소개되었지만 일부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절차 진행의 확인이나 이를 위한 재판소의 노력의

112)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1回 検証報告書 (2025), 106면.
113)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1回 検証報告書 (2025), 113면.

필요성과 중요성이 지적되었다고 한다.[114]

그 외에도 mints를 사용함에 있어서 복수의 재판관이 동시에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크다는 평이 있는 반면, 그 활용 범위의 편차가 재판관에 따라 크다는 점과 재판관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사들의 기능 이해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115]

[표 13] 재판절차 디지털화의 '3가지 e'[116]

e제출	① 온라인 신청, ② 사건기록 전자화, ③ 전자납부, ④ 전자송달, ⑤ 전자증거
e법정	① 구두변론, ② 쟁점정리 절차, ③ 증인심문, ④ 그 외 증거조사 절차
e사건관리	① 사건기록 전자화, ② 전자판결, ③ 전자조서, ④ 전자기록 열람 및 복제
그 외	① 법정심리기간소송, ② 주소 · 성명 등 익명제도, ③ 우편비용 수수료 일본화

V. 검증보고서의 특징

1. 검증보고서의 서술방식상 특징

가. 문제해결형 서술방식

검증보고서의 서술방식은 재판지연이라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성격을 분명히 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민사소송, 그중에서도 의료, 건설, 지식재산권, 노사관계, 행정, 상속 등 전문적 판단이나 특수한 절차 운용이 요구되는 사건군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사건이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이 심리기간의 장기화에 어떤 경로로, 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관심의 초점이 단순한 통계자료의 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지연이라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선별하고, 지연 요인을 식별하며, 나아가 대응

114)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1回 検証報告書 (2025), 113면.
115)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1回 検証報告書 (2025), 114면.
116) 平岡敦, "裁判IT化最前線実務はどう変わるか？[前編]", NIBEN 第5号 (2023), 20면의 [표 1]을 저자가 번역한 것이다.

방향까지 탐색하는 데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법통계 자료와 구별된다.

상속 사건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서술방식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상속 사건에서 쟁점과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117] 여기에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중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된다. 더 나아가 상속 사건은 유산확인청구, 부당이득반환, 건물명도청구 등 관련 소송이 병행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절차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곧바로 대응방안의 모색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사실관계의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거나,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 이른 단계에서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으로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이다.[118] 이는 통계 수치만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재판지연의 원인을 서술적 분석과 결합하여 포착하고, 이를 다시 제도 개선의 논의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검증보고서는 통계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 장기화라는 결과에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함께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제시되는 해결방안은 각 회차의 검증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제안되는 수준에 머무르며,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전제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과 제안들이 이후 검증검토회의 논의와 후속 회차의 검증보고서를 거치며 점차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보고서 전체는 연속적 · 누적적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추적형 서술방식

재판지연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단면만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현상이 일시적 변동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만성적 문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에 걸친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검증보고서는 본질적으로 경향성의 축적과 추적을 전제로 하는 서술방식을 취한다.

재판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

117)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0回 検証報告書 (2023), 35면.
118)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0回 検証報告書 (2023), 34면.

다. 어떠한 개선책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수치에 변화를 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려면 동일한 문제를 후속 회차에 걸쳐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검증보고서는 각 회차마다 다루는 대상과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출한 뒤, 이를 다음 회차의 검증에서 다시 확인하고 재평가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추적성은 단순한 반복 관찰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요인이 식별되면 후속 검증에서 그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통계 체계만으로는 그 요인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 항목이나 자료 수집 방식 자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까지 이어진다. 말하자면 검증보고서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분석 결과가 다시 통계 수집 방식의 개선으로 환류되는 순환적 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점 역시 검증보고서의 중요한 서술방식상 특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검증보고서의 내용상 특징

가. 실정조사

검증보고서의 내용적 특징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실정조사(実情調査)의 활용이다. 단순한 수치자료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의 실제 모습과 절차상 병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보고서는 통계 분석과 더불어 현장의 경험과 인식을 청취하는 방식을 적극 채택하였다.

초기 단계인 제2회 검증보고서까지는 재판소와 재판관을 중심으로 실정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점차 조사 범위가 넓어졌고, 제3회 검증보고서에 이르러서는 재판관뿐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재판부의 관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절차나 운영 방식이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관과 변호사가 동일한 절차를 상이하게 평가하는 장면은, 재판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수치나 제도, 조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곧 실정조사는 사법통계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실무 감각과 인식의 차이를 가시화하고, 그 결과

재판지연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119]

나. 사회적 요인의 조사

실정조사가 재판 내부의 실무 현실을 포착하려는 장치라면, 사회적 요인의 조사는 재판 외부의 조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검증보고서는 당초 10년에 걸쳐 5회 발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5회 검증보고서는 그간의 검증을 종합 ·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요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재판관이나 변호사와 같은 절차 참여자들이 쉽게 포착하지 못하였던 배경 요인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이 심리기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령화 문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지역적 접근성의 차이 등에 관한 실정조사는 기존의 사법통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층위를 드러낸다. 예컨대 개인 간 분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지는 통상적인 재판 통계만으로는 충분히 포착할 수 없는 영역이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적 요인 조사는 다른 사법통계 자료와 구별되는 검증보고서만의 독자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곧 재판과 관련된 과거의 성과나 향후 목표를 평가 · 설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숫자의 증감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반영하는 절차의 질적 측면과 사회적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요인 조사는 재판지연 문제를 보다 넓은 사회구조 속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120]

나아가 사회적 요인에 대한 검토는 분쟁이 재판으로 현저화되기 이전의 단계에 관한 조명으로 이어진다. 소위 '잠재적 분쟁'의 단계에서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법원에 유입되는 사건 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5회 검증보고서는 법원에 제기되어 가시화된 법적 분쟁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면 아래에는 아직 현저화되지 않은 잠재적

119) 山本和彦 · 相澤眞木 · 中尾正信 · 榎本光宏 · 川山泰弘,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とデジタル世代につなぐ理念 ―民事訴訟を中心に―", 判例タイムズ 1517号 (2024), 10면.

120) 이는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이다 타카시(飯田高) 교수의 발언이다. 직무상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내부자료 (2024. 10.), 54면.

분쟁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121] 또한 그러한 잠재화의 배경으로는 분쟁을 회피하려는 일본 사회의 문화적 성향, 시간적 · 금전적 비용의 부담, 사법 접근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쟁을 모두 소송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 단계에서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122]

물론 재판지연 문제는 단순히 사건 수가 증가한다는 경향이 아니라, 그 사건의 성질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다수의 당사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할뿐더러 새로운 권리나 법리가 요청되는 등 어려운 사안을 심리함에 있어서 전문가 증언이나 감정 등의 절차로 인해 기일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장기화되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잠재적 분쟁에 큰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를 조기에 그리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창구나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 바라볼 수 있다. 더욱이, 이를 분쟁해결의 디지털화와 조화시킨다면, 재판에 의한 법관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용대비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123]

다. 재판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한 심리의 신속화

재판절차의 개선과 신속화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분쟁의 양상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심리기간이 단순히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재판지연 문제는 사법부가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판절차의 디지털화**이다.

재판절차, 더 나아가 재판 전반의 디지털화에 관한 논의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법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4] 다만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화는 재판

121)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5回 検証報告書 (2013), 17면.
122)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5回 検証報告書 (2013), 44면.
123) 裁判手続等のIT化検討会, “裁判手続等のIT化に向けた取りまとめ—「3つのe」の実現に向けて—” (2018), 5면.

서류를 종이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심리 그 자체를 온라인 환경에 적응시키고, 절차의 각 단계에서 불필요한 마찰비용을 줄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는 작업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화는 법원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 검사 · 당사자가 쟁점정리, 자료 제출, 구두변론 준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절차 전반에 속도감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디지털화는 단순한 기술적 보조 수단이 아니라 재판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125]

더 나아가 디지털화의 활용 가능성은 재판절차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분쟁 예방이나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운용에서도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소비자분쟁이나 소액 · 간이 민사분쟁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 경험이 축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하여 사회가 기대하는 분쟁해결의 방식과 수준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126]

라.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속화법 체계는 당연히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의의는 단지 현행 절차나 심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재판지연을 어떠한 시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판지연 문제의 배경에는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에 의한 소송이나 법리적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사건이 증가하고, SNS를 사용한 장기간의 대화내역이 자료로 대량 제출되거나, 이에 대한 위조와 증거평가, 사실인정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오늘날의

---

124) 조선일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지연 해소 위해 AI 활용할 것”” (2024. 1. 16.),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16/AKOUBN635BEKVEUEIMMCHITDSI/ (2026. 7. 1. 최종확인).

125)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 · 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25면.

126) 현재 검증검토회의 좌장을 맡고 있는 야마모토 카즈히코(山本和彦) 교수는 민사소송법 전공이지만 그와 함께 온라인 분쟁해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山本和彦, 民事裁判手続のIT化, 弘文堂 (2023) 참조. ODR에 관한 국내 논문으로는, 조수혜, “민간형 온라인분쟁해결(ODR)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 중앙법학 제26권 제3호 (2024).

재판 실정으로 인해 재판이 신속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복잡 ·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법조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재판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면담을 하는 등의 행위는 본인의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아무리 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한들 이러한 자원의 소모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법조 관계자와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사이의 인식의 괴리가 존재하며, 이 간극이 점차 확대되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축적된다면, 결국 재판지연 문제를 인식하고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127] 물론 이러한 간극은 일견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에 비하여 과장되어 지적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그것을 인상론만으로 넘어가지 않고 객관적 수치나 의견청취 등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검증보고서와 검증검토회를 통해 언급된 바 있다. 이러한 작업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허용하고, 재판지연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3. 그 외의 특징

검증보고서는 재판에 관한 통계 데이터, 특히 재판지연의 현황과 지연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히 수치를 나열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요인의 존재와 그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둔다. 그래프와 도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도식까지 활용하여 독자가 재판지연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화 방식은 재판지연 문제가 어느 하나의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여러 요인이 어떻게 맞물리고, 특정 단계의 병목이 전체 심리기간에 어떤 식으로 파급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그림들 역시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자료이다.[128]

---

127) Patricia Ewick and Susan S. Silbey, *The Common Place of Law: Stories from Everyday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Naomi Mezey, "Out of the Ordinary: Law, Power, Culture, and the Commonplace", *Law & Social Inquiry* 26 (2001), 145-167면. [정영지, "형사재판에서 법적 판단의 시간성에 대한 소고", 법조 제74권 제4호 (2025), 155면에서 재인용].

128) 아래의 그림은 모두 연구책임자가 그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그림 19] 사회적 요인의 검증 결과 일반[129)]



129)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5回 検証報告書 (2013), 8면.

[그림 20] 법적 분쟁의 일반 동향[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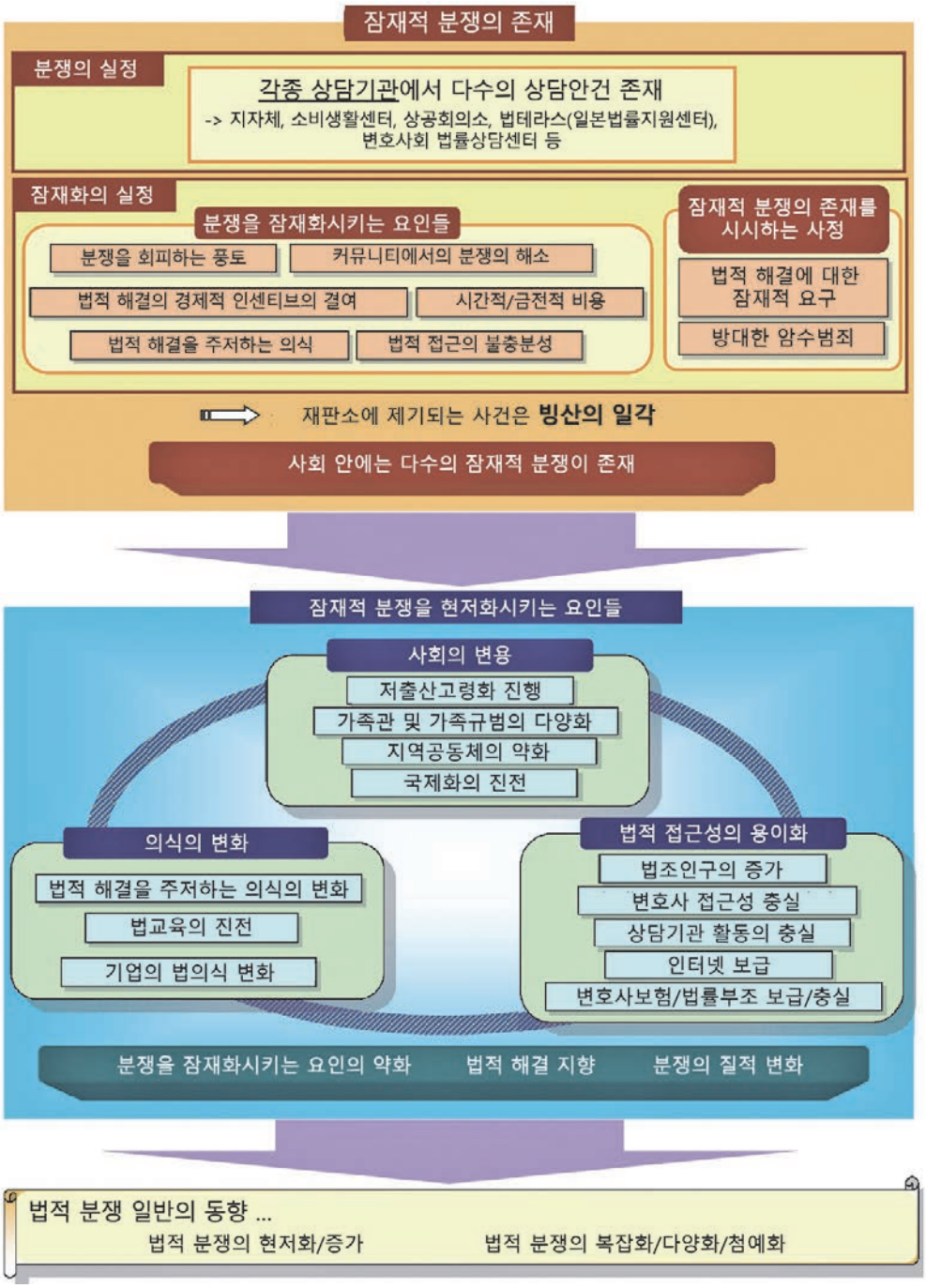

130)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5回 検証報告書 (2013), 50면.

[그림 21] 재판 외 분쟁처리의 전반적 상황[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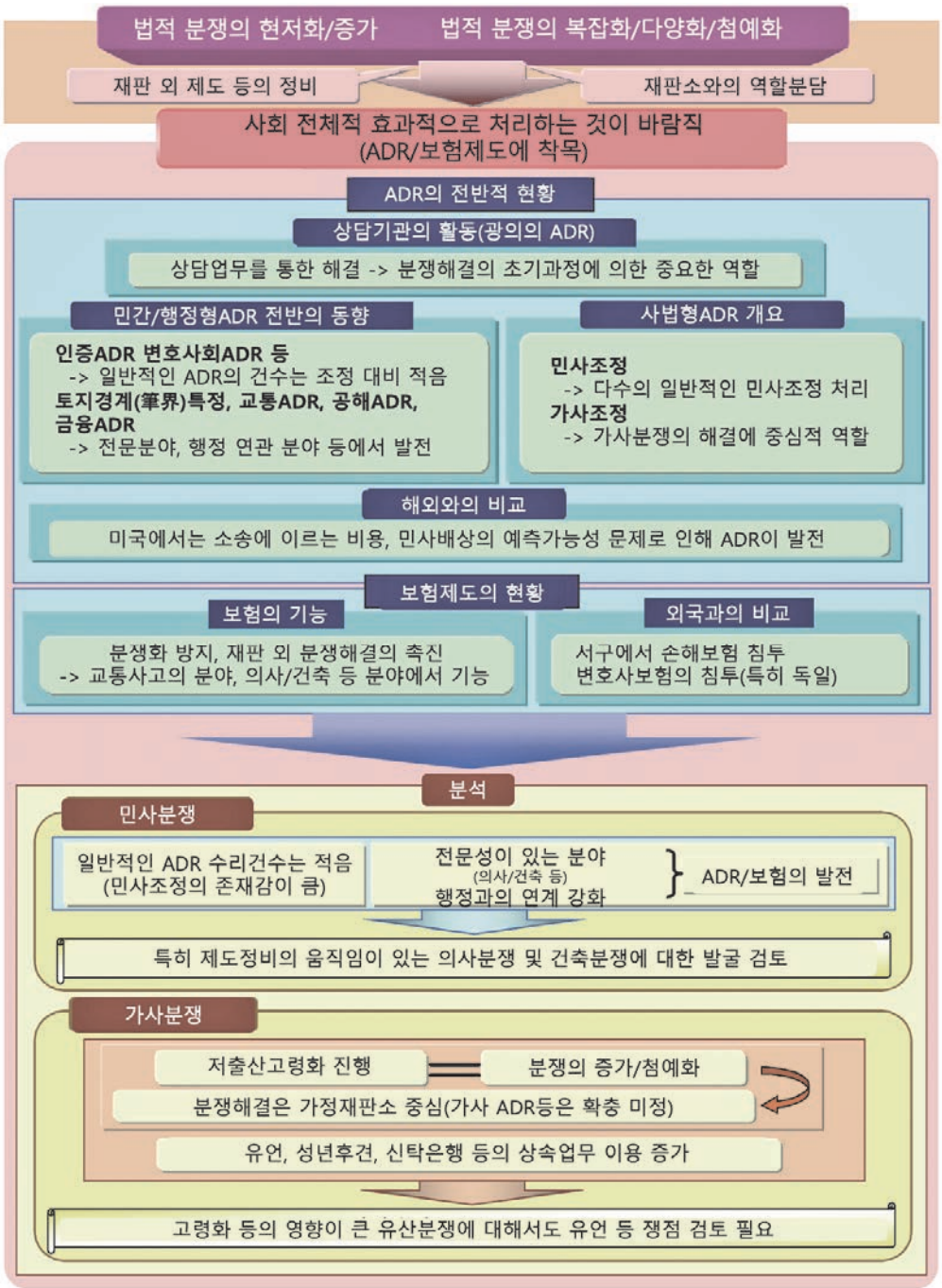

131)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5回 検証報告書 (2013), 88면.

[그림 22] 의료분쟁[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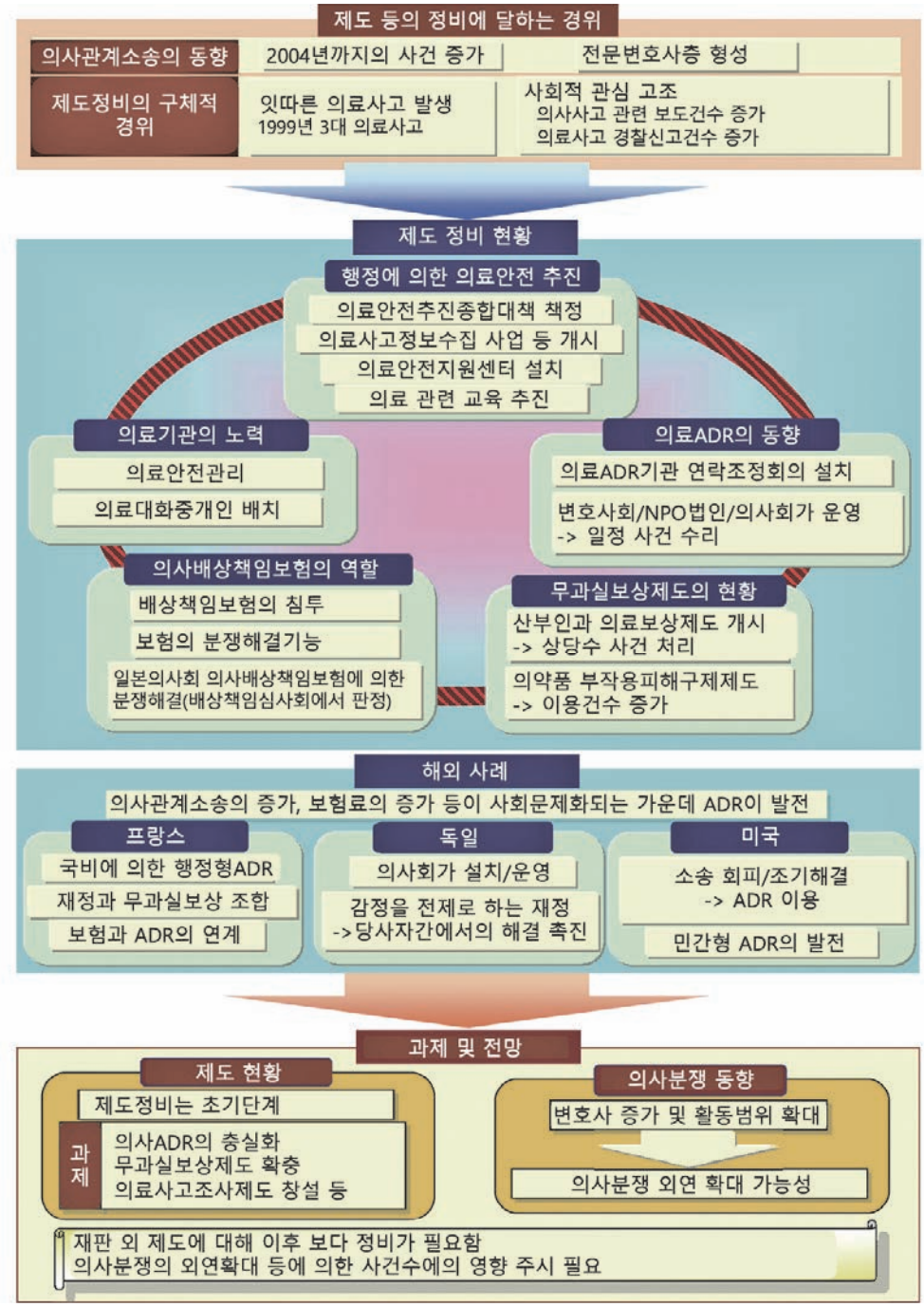

132)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5回 検証報告書 (2013), 113면.

[그림 23] 건축 분쟁[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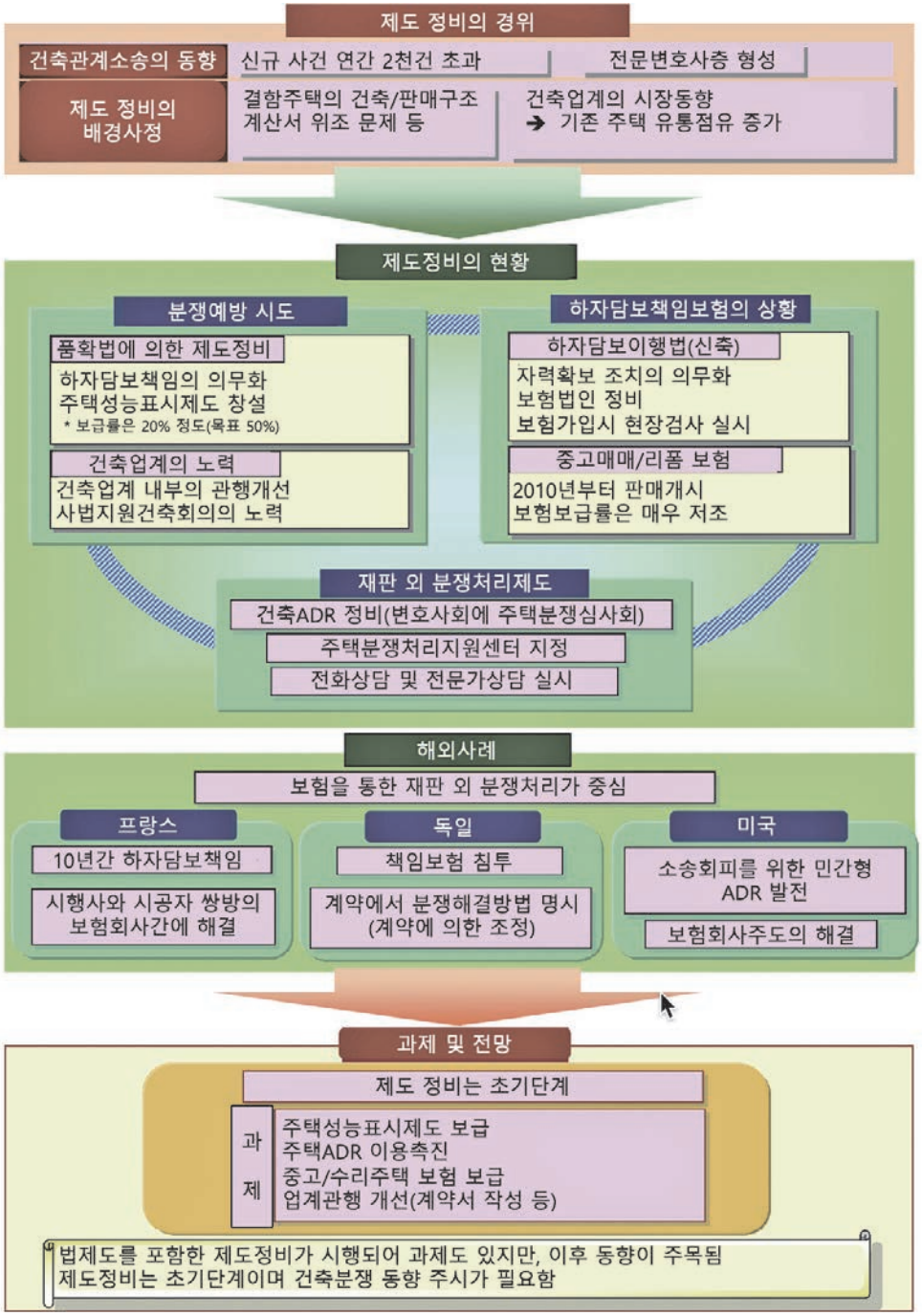

133)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5回 検証報告書 (2013), 132면.

[그림 24] 유산 분쟁[134)]



134)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5回 検証報告書 (2013), 157면.

[그림 25] '정리'의 개요[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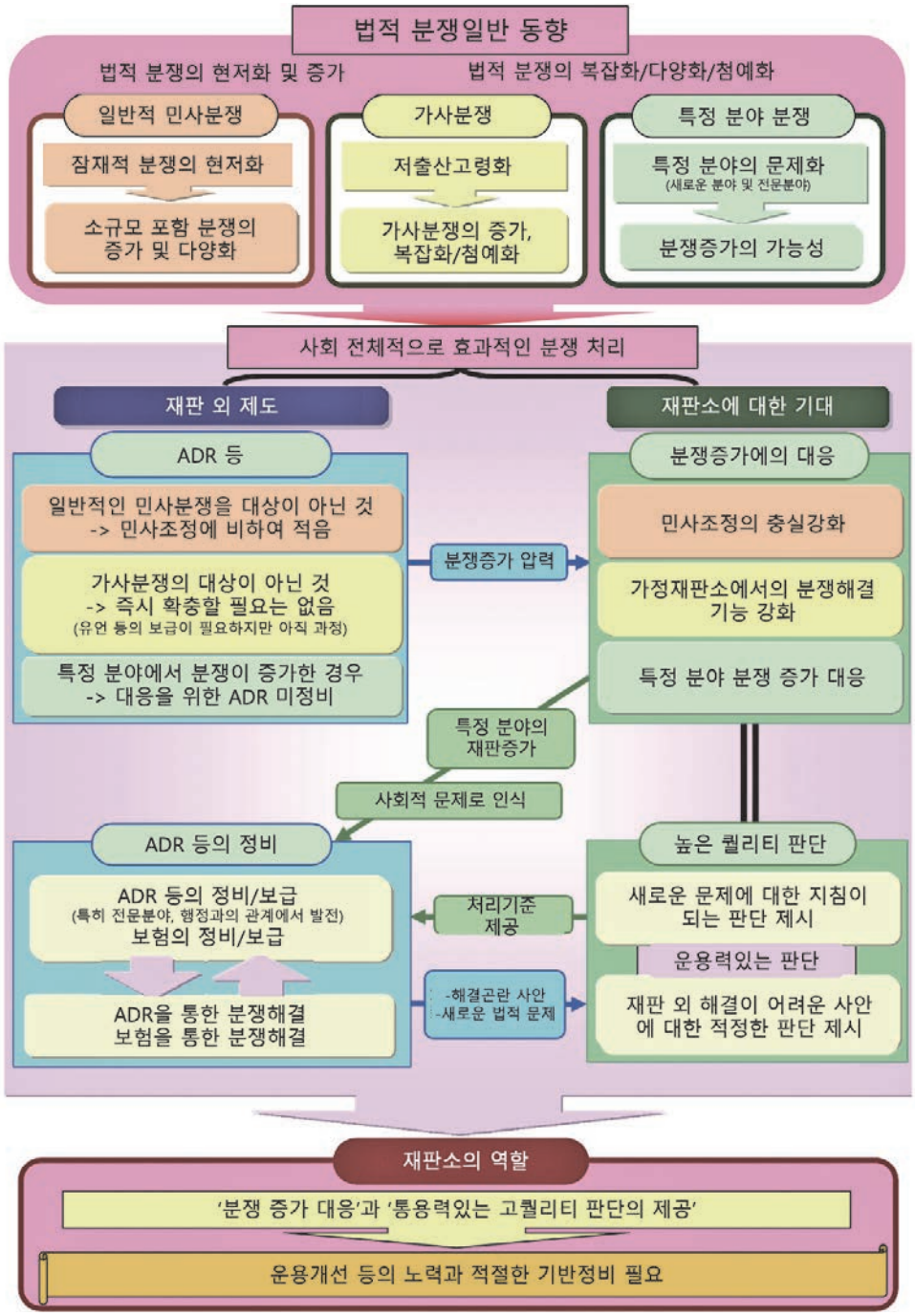

135)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5回 検証報告書 (2013), 160면.

제5절 기타 사법통계 자료

I. 개요

검증보고서는 신속화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터 잡아 재판지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해당 보고서는 기존의 일본 사법통계 및 관련 보고서와는 그 목적에서 본래적 차이를 가진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외에도 기존에 사법통계연보(司法統計年報)와 재판소 데이터북(裁判所データブック)이라는 사법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각각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검증보고서의 특징을 보다 두드러지게 하고자 한다.

II. 사법통계연보 및 재판소 데이터북

1. 사법통계연보

가. 개요

사법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는 일본 사법부의 공식 사법통계이다. 해당 통계의 수집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전년도에 전국 재판소에서 취급한 모든 사건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주요 내용

사법통계연보는 민사, 행정, 형사, 가사, 소년사건의 전 분야에 걸친 통계자료를 총망라한다. 연보는 분야별로 4개 편(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편마다 총란표와 세목표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총란표에는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 신수(新受), 미제(未済), 처리(既済) 건수가 총계와 법원별로 제시되며, 세목표에는 종결 사건의 상세 내역이 사건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민사 · 행정편의 세목표에는 지방법원, 간이재판소, 고등법원, 최고재판소 각각에 접수된 통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조정, 집행사건 등

의 건수가 소송물 종류별로 나열되고, 청구 목적(건축도급대금, 토지 관련 소송 등)이나 평균 심리기간 등의 통계가 포함된다. 형사편에는 1심 · 항소 · 상고 사건별로 죄명별 유죄 인원수, 형량별 인원 통계, 국선 · 사선 변호인 선임 여부별 통계 등이 수록되고, 가사편에는 가정법원의 가사사건(가정소송 · 가사조정)에 대해 신청 동기나 종국 결과(별거, 조정성립 등)별 건수가, 소년편에는 소년보호 사건에서 불량행위 종류별로 종국 결정 결과(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의 통계가 담겨 있다. 이처럼 사법통계연보는 각급 법원이 취급한 사건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분야 데이터를 망라하여 보여주는 정형화된 통계표 집합이다.

또한, 현재 사법통계연보는 2000년 이래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pdf 버전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월보를 속보로 제공하고 있다.[136]

2. 재판소 데이터북

가. 개요

재판소 데이터북은 2002년 사법제도개혁 이후 새롭게 창간되었다.[137] 재판소 데이터북은 위 사법통계연보의 사건 통계 개요를 포괄하면서도, 사법부를 둘러싼 주변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료집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부 조직 관계에서는 사법부 조직과 인적 · 재정 현황을, 제2부 사건의 통계에서는 사건 처리 통계를 다루고 있다.

나. 주요 내용

제1부에는 일본 사법부의 조직 구조와 관련된 여러 지표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제1장에서는 재판소의 종류와 수 및 검찰심사회[138]와 하급심 법원 및 검찰심사회의 명칭, 재판소 조직도 및 재판소 심급도를 포함한다. 제2장에서는 재판소 직원 현황으로서

136) 사법통계연보는 아래의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ourts.go.jp/toukei_siryou/shihotokei_search/index.html (2026. 7. 1. 최종확인).

137) 2025년판 재판소 데이터북은 아래의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ourts.go.jp/toukei_siryou/databook/index.html (2026. 7. 1. 최종확인).

138)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무작위로 선택된 11명의 검찰심사원이 검찰에 의한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기소가 된다. 신원일,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 법률신문 (2010. 6. 14.), https://www.lawtimes.co.kr/opinion/52918 (2026. 7. 1. 최종확인).

법원 직원 정원, 집행관 · 조정위원 · 감정위원 등의 수, 배심제에 참여하는 재판원과 노동심판원 선출 인원, 재판원제도의 재판원 수 등 인적 자원 통계를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재판관의 보수 등, 제4장에서는 법원 예산 규모를 다루며, 제5장 기타 참고사항에서는 일본 전체 법조인 수의 연도별 추이와 인구 대비 비율, 변호사 수 증감 추이, 사법연수생 모집 및 배출 인원 추이, 연수 수료자의 진로별 분포 등 법조 인력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중요한 통계를 폭넓게 수록한다.

3. 담당 조직

사법통계연보와 재판소 데이터북에 관한 자료의 데이터 수집과 정리를 관장하는 부서는 바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디지털 종합정책실이다.[139]

디지털종합정책실은 2024년 4월 1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규칙의 개정에 의해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디지털 심의관과 그 아래 참사관 및 디지털 심의관부(官付)가 설치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고 한다.[140] 그리고 디지털 심의관을 필두로 하는 디지털 종합정책실의 조직도는 다음의 [그림 26]과 같다. 이 조직에서 사법통계연보의 작성과 발간은 총무 · 전략 그룹이며, 그 안에서도 통계 · 데이터매니지먼트팀이 있어 그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139) 사법통계연보와 재판소 데이터북에 관해서는 본 챕터의 제5절에서 상술한다.

140) 2024년 3월 1일에 공간된 관보 제1172호 3면에 의하면, 「최고재판소 사무총국규칙」 제6호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제3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각 추가하였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디지털 심의관을 두고, 재판소 사무관을 둔다" 그리고 "디지털 심의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총국의 사무 가운데 디지털화의 추진, 정보 보안의 확보, 정보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와 통계정보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에 참여하고, 관계사무를 총괄 정리한다."

[그림 26] 디지털 종합정책실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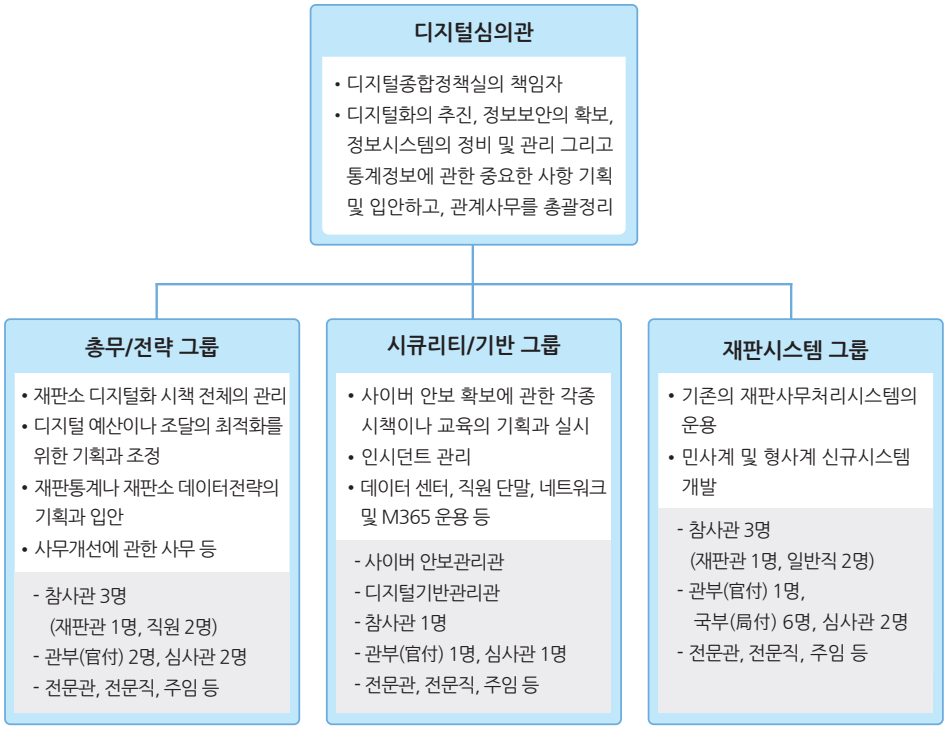

4. 서술방식상의 특징

사법통계연보는 매년 동일한 체계를 따라 작성된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종류 구분이나 신규 접수, 미제 누적, 처리완료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재판소의 연간 업무량과 처리성과를 객관적으로 제공한다. 아래 [표 14]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표와 숫자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해설 또는 도식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필요에 따라 주석으로 해당 통계치의 범위나 정의가 달린 정도이다. 즉, 사법통계연보는 특정 연도의 단면적 통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며, 독자가 여러 연도의 연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비로소 시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한편, 재판소 데이터북은 편람에 가까운 구성 체계를 취한다. 단일 책자안에 제1부 조직편과 제2부 사건편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법부의 인적 · 물적 투입부터 산출까지 종합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건 통계편에서도 중요한 수치는 표뿐 아니라 막대 그래프, 추이선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년도나 과거 평균과의 비교 수치를 함께 제시하여 변화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 [그림 27]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 데이터북 역시 사법통계연보와 마찬가지로 수치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표 14] 민사 · 행정 사건의 신수, 종결, 미제 사건 수: 모든 재판소 및 최고, 고등 · 지방 · 간이재판소[141]

재판소 / 연차	총 합			소송 사건			조정 사건			그 외 사건		
	신수	기결	미제	신수	기결	미제	신수	기결	미제	신수	기결	미제
전 재판소												
昭和 24 年	336 171	330 442	76 397	50 255	43 201	45 371	44 919	45 350	13 221	240 997	241 891	17 805
25	429 853	412 603	93 587	74 215	63 006	56 573	56 300	53 390	16 061	299 338	296 207	20 953
30	827 659	820 669	166 025	158 575	148 978	107 196	78 955	77 766	23 721	590 129	593 925	35 108
35	970 134	960 975	294 957	166 518	168 720	126 499	64 936	66 231	22 530	738 680	726 024	145 928
40	1 255 547	1 249 433	345 162	176 523	172 173	126 156	52 067	52 131	20 099	1 026 957	1 025 129	198 907
45	1 231 321	1 218 286	391 857	190 916	183 417	159 710	53 377	52 455	22 028	987 028	982 414	210 119
50	1 076 665	1 088 448	344 744	165 687	168 990	147 301	45 495	45 627	18 406	865 483	873 831	179 034
55	1 469 818	1 445 279	406 077	221 393	216 126	156 798	64 868	64 084	21 371	1 183 587	1 165 069	227 908
60	2 548 584	2 531 824	642 192	380 614	383 956	191 339	89 209	108 263	25 828	2 078 761	2 039 605	425 025
平成 2 年	1 715 193	1 779 269	462 767	229 718	237 985	141 275	61 007	59 683	21 268	1 424 468	1 481 601	300 164
7	2 411 360	2 389 961	697 171	423 454	424 444	183 038	130 808	129 150	31 438	1 857 098	1 836 367	482 695
12	3 051 709	3 002 459	779 557	524 884	530 276	167 953	317 986	298 556	66 105	2 208 839	2 233 627	545 499
17	2 712 896	2 827 169	575 873	566 288	567 215	163 904	322 987	330 676	48 448	1 823 621	1 929 278	363 522
22	2 179 352	2 241 410	536 348	910 465	947 366	263 997	87 808	90 888	15 250	1 181 079	1 203 156	257 101
27	1 432 323	1 425 507	409 096	535 152	531 263	190 481	40 760	40 263	10 502	856 411	853 981	208 113
令和 2 年	1 350 364	1 324 142	455 619	491 447	466 354	223 882	30 723	30 730	10 070	828 194	827 058	221 667
3	1 373 843	1 400 331	429 131	508 619	521 079	211 422	31 870	33 105	8 835	833 354	846 147	208 874
4	1 368 806	1 380 255	417 682	509 369	516 313	204 478	34 073	34 463	8 445	825 364	829 479	204 759
5	1 477 745	1 460 887	434 540	569 291	558 971	214 798	29 612	30 213	7 844	878 842	871 703	211 896
6	**1 581 777**	**1 550 385**	**465 932**	**618 255**	**605 158**	**227 890**	**30 211**	**29 674**	**8 381**	**933 305**	**915 544**	**229 659**
최고재판소												
昭和 24 年	502	260	370	364	157	326	…	…	…	138	103	44
25	651	391	630	458	220	564	…	…	…	193	171	66
30	1 330	1 254	1 676	1 074	1 003	1 634	…	…	…	256	251	42
35	2 074	2 004	2 636	1 557	1 500	2 592	…	…	…	517	504	44
40	2 354	2 197	2 004	1 746	1 588	1 947	…	…	…	608	609	57
45	2 054	1 865	1 338	1 498	1 308	1 271	…	…	…	556	557	67
50	2 063	2 360	1 049	1 540	1 761	1 014	…	…	…	523	539	35
55	2 187	2 251	1 082	1 553	1 588	1 033	…	…	…	634	663	49
60	2 790	2 874	1 787	1 976	2 054	1 707	…	…	…	814	820	80
平成 2 年	3 109	3 050	1 589	2 288	2 224	1 411	…	…	…	821	826	178
7	4 219	4 051	2 288	3 027	2 854	2 057	…	…	…	1 192	1 197	231
12 2)	6 476	6 179	2 240	4 557	4 273	1 901	…	…	…	1 919	1 906	339
	(5 044)	(4 915)	(1 643)	(3 152)	(3 031)	(1 313)	…	…	…	(1 892)	(1 884)	(330)
17	7 267	7 363	1 861	5 263	5 345	1 569	…	…	…	2 004	2 018	292
	(5 354)	(5 413)	(1 263)	(3 370)	(3 415)	(974)	…	…	…	(1 984)	(1 998)	(289)
22	7 410	6 905	2 127	5 577	5 107	1 819	…	…	…	1 833	1 798	308
	(5 321)	(4 989)	(1 425)	(3 516)	(3 210)	(1 128)	…	…	…	(1 805)	(1 779)	(297)
27	7 223	7 744	1 969	5 268	5 769	1 577	…	…	…	1 955	1 975	392
	(5 228)	(5 547)	(1 348)	(3 287)	(3 592)	(969)	…	…	…	(1 941)	(1 955)	(379)
令和 2 年	6 191	6 277	1 582	4 068	4 262	1 043	…	…	…	2 123	2 015	539
	(4 590)	(4 609)	(1 154)	(2 502)	(2 627)	(625)	…	…	…	(2 088)	(1 982)	(529)
3	6 502	6 389	1 695	4 457	4 257	1 243	…	…	…	2 045	2 132	452
	(4 765)	(4 719)	(1 200)	(2 730)	(2 604)	(751)	…	…	…	(2 035)	(2 115)	(449)
4	7 149	7 122	1 722	5 019	4 951	1 311	…	…	…	2 130	2 171	411
	(5 217)	(5 193)	(1 224)	(3 095)	(3 031)	(815)	…	…	…	(2 122)	(2 162)	(409)
5	7 736	7 286	2 172	5 419	5 132	1 598	…	…	…	2 317	2 154	574
	(5 642)	(5 335)	(1 531)	(3 336)	(3 185)	(966)	…	…	…	(2 306)	(2 150)	(565)
6	**7 838**	**7 819**	**2 191**	**5 251**	**5 243**	**1 606**	…	…	…	**2 587**	**2 576**	**585**
	(5 797)	(5 785)	(1 543)	(3 241)	(3 232)	(975)	…	…	…	(2 556)	(2 553)	(568)

141)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2024年度 司法統計年報 (2024), 2면.

[그림 27] 민사 제1심에서의 신규 접수, 처리완료, 미제 사건 추이[142)]

2 민사사건

§ 1 민사 · 행정소송 사건

(1) 제1심 민사통상소송 사건

① 지방재판소

연 차	신 수	기 결	미 제
平成 元 年	110,970	115,502	106,561
5	143,511	137,934	113,768
10	152,678	156,683	105,606
15	157,833	159,032	95,327
20	199,522	192,233	105,046
25	147,390	149,930	95,619
27	143,817	140,973	99,943
28	148,307	148,023	100,227
29	146,680	145,983	100,924
30	138,444	138,683	100,685
令和 元 年	134,935	131,558	104,062
2	133,430	122,763	114,729
3	130,862	139,020	106,571
4	126,664	131,803	101,432
5	135,674	137,609	99,497
6	141,526	139,370	101,653

(注) 平成１６年４月に人事訴訟事件を家庭裁判所に移管するまでの数値については、民事通常訴訟事件に人事訴訟事件を含んだ数値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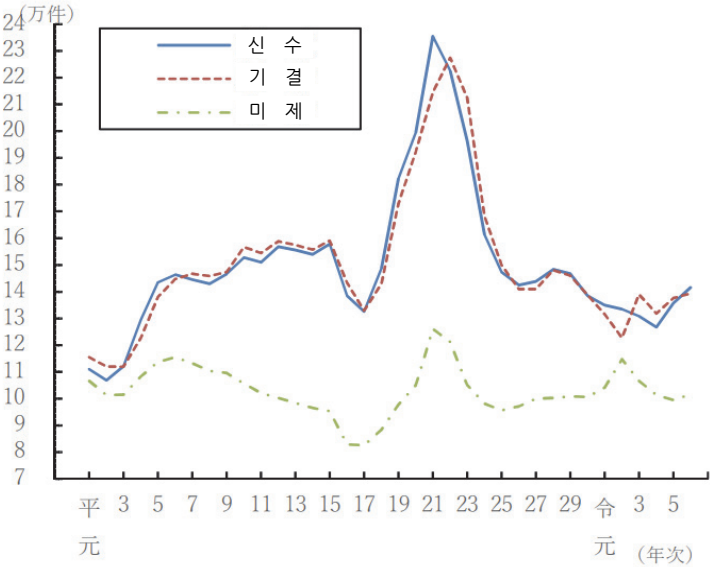

142)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裁判所データブック 2025 (2025), 34면.

제6절 국내 도입의 대상으로서의 신속화법 체계

I. 신속화법 체계의 의의에 관한 평가

1. 개요

신속화법 체계가 실제로 재판의 충실화와 신속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일본 내에서도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 체계가 재판지연의 원인을 가시화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 구조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재판지연 문제를 단순한 인상론이나 개별 사건의 경험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통계와 검증 절차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는 것이다.[143] 반면 비판적 견해는 보다 냉정한 성과 평가를 요구한다. 검증보고서가 10회를 넘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통계상 제1심 심리기간 역시 뚜렷하게 단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144] 실제로 1999년 기준 민사소송 제1심의 심리기간이 20.5개월이었던 데 비하여, 2020년에는 오히려 23.2개월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비판을 일정 부분 뒷받침한다.[145]

이처럼 신속화법 체계의 효과를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가 병존하는 이상, 어느 한쪽의 시각만을 취하기보다는 그 논거를 정리한 뒤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신속화법에 관한 평가

신속화법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제1심 심리기간에 관한 이른바 '2년 기준'이 놓여 있다. 이 쟁점에 대하여는 법률 제정 과정에 관여하였던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다만 후술하듯이, 일본변호사연합회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신속화법 체계 전체에 일정한 제도적 의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조정한

143) 山本和彦 · 相澤眞木 · 中尾正信 · 榎本光宏 · 川山泰弘,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とデジタル世代につなぐ理念 ―民事訴訟を中心に―", 判例タイムズ 1517号 (2024), 13-14면.
144) 일본 사법제도 연구반 출장 결과 보고서 (2024. 12.), 31면.
145)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 · 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26면.

것으로 보인다.[146] 일본변호사연합회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신속화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민사소송 제1심의 심리기간은 이미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단축되고 있었고,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거치면서 신속화는 상당한 정도로 달성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핵심 과제는 '신속화'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신속화법의 초점 또한 재판의 속도보다 충실성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 입장이었다.[147]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신속화법은 정치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한 법률이며 당시 고이즈미 쥰이치로 수상이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고문회의에서 "추억의 사건을 재판하는 최고재(판소)"라는 센류(川柳)를 언급함에 따라 본부 차원에서 법안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신속화법이 '보여주기식 법률' 또는 이례적이고 경계해야 할 법률이라 비판받았다.[148] 재판지연의 판단기준을 '2년'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보고서이다. 심의회의 논의 결과, 그들은 민사재판의 충실화 및 신속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사건의 심리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즉 2000년 기준 민사소송 제1심이 약 20.5개월 소요된 바, 그 절반인 10개월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149] 심지어 해당 심의회의 회장이었던 사토 코우지 교토대 명예교수는 국민들이 민사소송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망설이곤 한다는 현실을 지적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심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언급하였다.[150]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앞서 언급한 고문회의에서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2년이라는 기한이 설정된 신속화법이 급물쌀을 타게 되었고, 이 부분

146)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신속화법 체계가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147) 日本弁護士連合会,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の成立にあたって (2003. 7. 9.),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year/2003/2003_23.html (2026. 7. 1. 최종확인).
148) 직무상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내부 보고서 (2024. 10.), 39-40면.
149) 司法制度改革審議会, 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 ―21 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 (2001. 6. 12.), 15면; 佐藤幸治, 司法制度改革, 有斐閣 (2002), 42면.
150) 해당 심의회는 심리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대신 모든 사건에 대한 심리계획의 설정, 그리고 이를 위한 협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심리의 추진을 제언하였다. 佐藤幸治, 司法制度改革, 有斐閣 (2002), 41면.

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2년이라는 심리기간 제한과 이에 대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비판의 핵심은 효율성(신속성)에만 신경 쓴 나머지 공정성을 포함한 재판의 적절성과 충실성이라는 가치가 경시되어 자칫 졸속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151]

신속화법의 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신속성과 공정성의 대립 혹은 조화에 관하여, 특히 법률명을 둘러싸고 논의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의 고문회의에 따르면, "재판의 신속과 충실은 동전의 양전과 같은 관계이며, 표리일체이다. 부실한 심리로 신속화를 시도해선 안 되며, 심리를 충실히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재판의 적정 · 충실화와 신속화는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법률명이 결정된 것이라 설명하였다.[152] 그 외에도 충실한 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건이기 때문에 졸속재판의 우려를 법률에 담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심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해소하고자는 목표를 강조하기 위하여 신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여기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 언급하였다.[153] 이에 더하여, 충실한 재판을 전제로 두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한다는 전제에 관한 오해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부분에 관하여 심지어 내부 멤버 사이에서도 인식이 다른 측면이 발견되기 때문에 법률명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다.[154] 나아가, 지금까지 신속성과 충실성이 대립하고 그 가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곤 하였지만, **충실없이 신속없고, 신속없이 충실없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 하지만, 앞선 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률명의 표현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하였다.[155] 그리고 그 결과 신속화법 제1조의 목적에서 '공정하고 적정'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충실한 절차**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

151)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제2회 검증검토회 회의록 (2004), 2-3면.

152) 사사모리(笹森) 고문은 "법안에 명제가 세트로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실과 신속이라는 표현을 함께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신속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졸속으로 비쳐질 수 있는건 아닌지. 따라서 충실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法案に命題がセットになっているんだという意味合いを強調させることから言うと、充実・迅速という言葉を入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迅速だけではどうも拙速の方向に行くんではないかと。したがって、充実という言葉は是非入れ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고 언급하였다. [제8회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고문회의 (2002. 12. 9.)]; 그 외에도 大塚浩之 · 佐々木健二 · 高橋宏志 · 中尾正信 · 山本和彦, "社会の中における司法の在り方を見据えて(上), 論究ジュリスト 7号 (2013), 211면.

153) 제8회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고문회의 (2002. 12. 9.)에서의 오오야 에이코(大宅映子) 고문의 발언.

154) 제8회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고문회의 (2002. 12. 9.)에서의 사사키 타케시(佐々木毅) 고문의 발언.

155) 제8회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고문회의 (2002. 12. 9.)에서의 사토 코우지(佐藤幸治) 좌장의 발언.

위와 같은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신속화법의 제정과 제1심 심리기간의 2년 이내 설정이라는 핵심은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안 및 채택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156]

3. 검증보고서의 의의

아래에서는 신속화법 체계의 핵심이 되는 검증보고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두루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비판적인 입장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의견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들은 신속화법이 제정된 이후, '재판신속화법 문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증검토회에 2명의 연합회 소속 변호사를 파견할뿐더러 매 검증보고서가 발간될 때마다 이에 대한 변호사연합회의 의견서를 공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2005년 10월 18일자로 공표된 제1회 의견서는 검증보고서가 "재판기간과 그 요인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린 점은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신속화법을 기반정비법으로 자리매김시킨 것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로 재판의 적정 · 충실의 관점에서의 검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사법제도 및 인적 · 물적 체제의 기반정비의 관점에서의 검증이 충분치 않으며, 마지막으로 재판기간의 검증에 있어서도 증인의 수가 많아서 기간이 길어졌다는 등의 당연한 사실이 숫자화된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어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재판기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증인 수를 줄일 것인지와 같은 본말전도의 논의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57]

제1회 의견서 이후에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였고, 가장 근래의 제10회 검증보고서에 관해서는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최고재판소가 제1회부터 제5회

156) 이 부분은 검증검토회 좌장인 야마모토 교수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 즉 신속화법에서의 목표설정과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제안과 엇갈렸다고 판단한다. 다만, 양자 모두 현행의 민사심리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한다. 山本和彦 · 相澤眞木 · 中尾正信 · 榎本光宏 · 川山泰弘,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とデジタル世代につなぐ理念 一民事訴訟を中心に一", 判例タイムズ 1517号 (2024), 9면.

157) 일본변호사연합회, 제1회 재판신속화 검증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2005. 10. 18.),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opinion/year/2005/20051018.html (2026. 7. 7. 최종확인).

까지의 검증을 통하여 재판 신속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동시에 다각적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외의 사회적 요인까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실증적으로 분석해왔다. 이 점은 신속화법에 의거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검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최고재판소가 인적 · 물적 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58] 또한 6회 이후의 검증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인식의 당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충분히 공유되어 모든 사건이나 모든 재판소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159] 이러한 차원에서 신속화법이 요구하는 시책과 체제면에서의 실효적인 사법체계의 기반 정비를 실현해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160]

여기에 덧붙여,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측면에서의 또 다른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니시무라 아사히(西村あさひ) 법률사무소 소속의 소노오 타카시(園尾隆司) 변호사는 신속화법 논의가 진행되던 1990년대부터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재직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장을 역임하였다.[161] 즉 당시의 신속화 논의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최고재판소의 입장에서 신속화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검토회를 개최하고 검증보고서를 발간하지만 그로 인해 재판의 절차나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전혀 바뀐게 없고 보고서만 잘 다듬어서 공개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내었다.[162]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와타히키 토모코(綿引朋子) 당시 기획판사는 2023년 11월 8일, 면담을 통해 검증보고서에 대한 일선 재판소와 판사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163]

다른 한편, 신속화법 체계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찾아볼

158) 일본변호사연합회, 제10회 재판신속화 검증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2024. 2. 16.), 1면.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opinion/year/2024/240216_2.html (2026. 7. 7. 최종확인).
159) 일본변호사연합회, 제10회 재판신속화 검증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2024. 2. 16.), 2면.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opinion/year/2024/240216_2.html (2026. 7. 7. 최종확인).
160) 일본변호사연합회, 제10회 재판신속화 검증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2024. 2. 16.), 21면.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opinion/year/2024/240216_2.html (2026. 7. 7. 최종확인).
161)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일본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법원행정처와 유사하다. 다만, 사무총국의 총무국장은 우리 법원행정처장과 같이 대법관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더욱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162) 일본 사법제도 연구반 출장 결과 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내부자료 (2024. 12.), 31, 35-36면.
163) 직무상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내부자료 (2023), 8면.

수 있다. 검증검토회의 좌장을 맡은 야마모토 교수는 신속화법과 검증검토회 및 검증보고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특히 비판적인 의견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한다. 그는 민사소송의 심리기간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가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제안되었지만, 현실에서는 1999년 20.5개월과 비교하면 2020년에는 23.2개월이 소요되었고, 이는 곧 심리기간이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코로나 시절을 고려하더라도, 2019년 기준 21.7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심리기간의 증가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였다.[164] 또한 그는 일본에서의 사법개혁이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속화법 체계만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다.[165]

이처럼 그 방식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리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시도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재판의 심리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국민들의 재판, 나아가 사법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앞서 언급한 민사소송 이용자 조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재판을 제기한 원고 중 약 49.5%가 소송 제기를 주저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그중 78%가 시간을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166] 게다가 이들은 소위 **시간의 벽**을 넘어서 실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애초에 소 제기를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 예상된다.[167]

심지어 소 제기를 가장 주저한 유형이 바로 부부 및 가사 사건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역시 가정 내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전형적으로 자녀에 대한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다.[168] 이대로라면 사법이 분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버려질 가능성조차 있다고 본다.[169]

이러한 배경에서 야마모토 교수는 **신속화법을 사법개혁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성격의 법률로 자리매김시키고, 이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검증검토**

164)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26면.
165) 야마모토 카즈히코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 (2026. 3. 7.).
166)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27면.
167)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30면; 야마모토 카즈히코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 (2026. 3. 7.).
168)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28, 33면.
169)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29, 32면.

회와 검증보고서라는 체제를 둔 것이라 판단하였다.[170]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시도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해당하고, 사법 분야에서 이러한 사화과학적 접근방식이 취해졌다는 점에서도 연구자로써 그 의의를 평가한다.[171] 종래 사법제도심의회는 "~하지 않을까"라는 인상론(印象論)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객관적 검증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예측에 그쳤던 부분들을 사실로 확정짓는 작업 자체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172]

나아가, 야마모토 교수는 기존의 사법통계 자료는 현장의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분석 대상 항목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신속화법 체계가 이를 보완한다는 관점에서의 의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173]

II. 신속화법 체계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

1. 개요

신속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검증검토회가 개최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2년마다 검증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신속화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일본 사회에서의 민사소송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소개하였는데, 법률의 제정 이전과 이후의 수치를 비교 · 검토한다면 신속화법과 그에 근거하여 파생된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일응의 평가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검증검토회에서는 사법부와 법조계 내부의 견해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가 제안되는 바, 그 내용이 사법제도 및 법률의 제개정으로 이어진 경우도 없지 않다. 신속화법 체계의 실효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170)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10-11면.
171)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17면.
172)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18면.
173) 야마모토 카즈히코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 (2026. 3. 7.).

2. 민사소송 이용자 설문조사

가. 2006년 조사

2006년 6월 전국 146개 지방재판소 본청과 지부의 민사 사건을 이용한 1,001명의 답변을 획득하였다.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주저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은 45.6%가 그렇다, 54.4%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시간'이라 답한 응답자가 약 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174]

또한 재판과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너무 길다'는 대답이 41.5%로 가장 많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답변은 그보다 낮은 31%였다. 즉 소송 이용자의 약 절반이 소송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평가한 것이다.[175] 실제 응답자의 60%가 소송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점, 예측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 2011년 조사

2011년 조사의 전체 응답수는 770건이었다. 그중 재판에 대한 주저나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46.7%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로 비용을 선택한 비율은 73%에 달하였다.[176] 또한 재판 기간에 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대답이 53%를 기록하였고, 그 기간이 다소 또는 과도하게 길다는 답변이 44%를 점하였다.[177]

다. 2016년 조사

2016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 910명 가운데 49.4%가 주저하였고, 50.6%는 주저

174) 山本和彦 · 加藤新太郎 · 菅原郁夫 · 二宮照興, "2006年民事訴訟利用者調査の分析", ジュリスト 1348号 (2008), 197면.
175) 山本和彦 · 加藤新太郎 · 菅原郁夫 · 二宮照興, "2006年民事訴訟利用者調査の分析", ジュリスト 1348号 (2008), 203면.
176) 民事訴訟利用者調査 2011 집계표, 6면. https://ssjda.iss.u-tokyo.ac.jp/chosa-hyo/0858s.pdf (2026. 7. 7. 최종확인).
177) 民事訴訟利用者調査 2011 집계표, 8-9면. https://ssjda.iss.u-tokyo.ac.jp/chosa-hyo/0858s.pdf (2026. 7. 7. 최종확인).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비율인 78.4%가 시간을 꼽았다.[178]

또한 재판기간에 관해서는 길다(다소 길다 또는 매우 길다)고 답변한 비율이 약 49.6%를 기록하였고, 약 56.4%가 이 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라. 2021년 조사

2021년에는 1,058건 응답이 있었고, 전체의 48.8%가 소송 제기에 주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요인이 바로 시간이다. 응답자의 약 82%가 이를 꼽았고, 그 가운데 약 60%가 그 기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179] 또한 53.5%가 그 기간이 다소 길거나 너무 길다고 답변하였다.[180]

3. 신속화법 체계를 통한 제도의 개선

2010년 9월에 개최된 제37회 검증검토회에서는 전문분야에서의 패스트 트랙(fast-track)이 논의되었고, 그 외 다수의 검증검토회에서도 유사한 취지가 내세워졌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취지가 2022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존재한다. 해당 개정을 통해 「민사소송법」 제381조의2에서 실시 이후 7개월 이내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정심리기간이 규정되었다.

이처럼 검증검토회의 논의 내용이 실제 제도로 연결된 바, 그 실효성이 인정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81]

---

178) 山本和彦 · 岡崎克彦 · 垣内秀介 · 菅原郁夫 · 髙橋司, “2016年民事訴訟利用者調査の分析”, 論究ジュリスト 28号 (2019), 163면.
179) 民事訴訟制度研究会, 手続利用者から見た民事訴訟の実際 —2021年民事訴訟利用者調査—, 商事法務 (2023), 98, 102, 121-122면.
180) 民事訴訟制度研究会, 手続利用者から見た民事訴訟の実際 —2021年民事訴訟利用者調査—, 商事法務 (2023), 128면.
181) 야마모토 카즈히코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 (2026. 3. 7.).

[그림 28] 연도별 답변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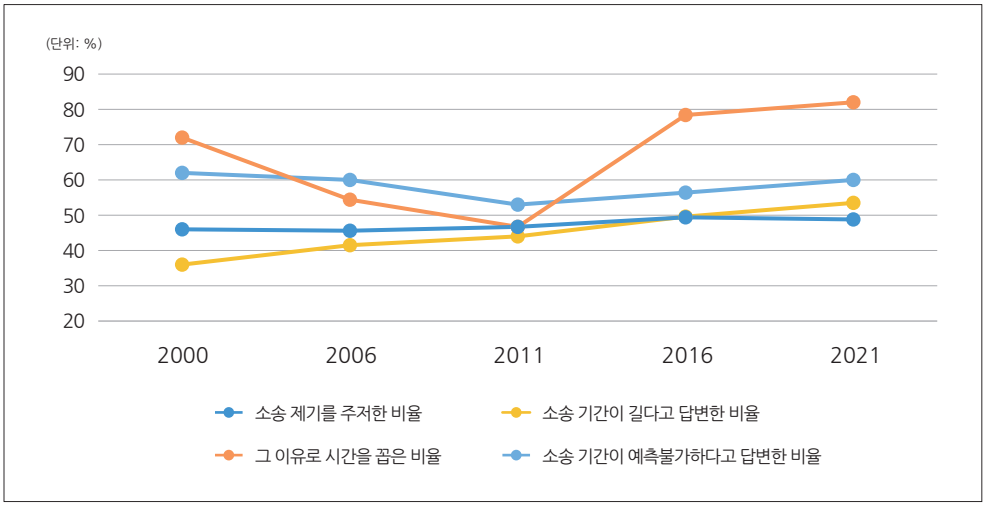

[표 15] 연도별 답변 비율 추이

(단위: %)

	소송 제기를 주저한 비율	그 이유로 시간을 꼽은 비율	소송 기간이 길다고 답변한 비율	소송 기간이 예측불가하다고 답변한 비율
2000	46	72	36	62
2006	45.6	54.4	41.5	60
2011	46.7	46.7	44	53
2016	49.4	78.4	49.6	56.4
2021	48.8	82	53.5	60

4. 평가

물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이용자 조사의 추이만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소송 기간이 길고 예측불가하며, 이러한 시간적 이유로 인해 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는 일본 사회 전체의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조사 문항은 유사하지만 응답자의 수가 다르므로 이를 직접적인 경향성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이를 두고 신속화

법 체계가 실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시간적 이유로 인한 소제기의 주저를 완화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이 해당 체계가 전혀 무의미한다는 결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III. 기반정비법으로서의 신속화법 체계에 관한 평가

앞서 살펴본 이용자 조사는 신속화법 체계의 의의를 평가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신속화법 체계에 관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비판적 견해와 사법부 내부에서의 아쉬움[182]을 고려하면, 신속화법 체계가 일본의 재판지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속화법 체계의 의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이 체계가 실로 우리가 도입할만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착목해야 하는 키워드가 바로 **기반정비법으로서의 신속화법**이다. 일본 법무성은 신속화법 부칙 제3항[183]에 따라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 등 신속화법 체계의 유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4년 '재판의 신속화법에 관한 검토회(裁判の迅速化法に関する検討会)'를 발족하고,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그 결과 보고서를 2014년 6월에 법무대신에게 제출하였다.[184]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185]

> 지금까지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 심리의 적정성 · 충실성 ·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 기반 정비라는 점에서도 사법 접근성(Judicial Access) 개선 등 사회 전반의 사법 기반이 서서히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2) 본 보고서 제3장 제6절에서 당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기획판사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183)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과에 근거한 소요의 조치를 취한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十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184) 이것이 '재판의 신속화법에 관한 검토회보고서(裁判の迅速化法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이다. 이하, '정부검토보고서'라 한다.
185) 정부검토보고서, 15-16면. 강조는 저자의 것이다.

하지만 **기반정비법으로서의 '신속화법'이 추구하는 신속화, 즉 적정 · 충실 · 신속한 절차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 체제의 정비라는 양면을 통해 추진되는 신속화에는 반드시 명확한 종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신속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씨름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민사 사건의 쟁점 정리 절차 강화, 형사 사건의 공판 전 정리 절차 강화, 가사 사건의 조정 운영 내실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적정하고 충실한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원 및 변호사 등의 대응 체계 강화 등이 향후 검토 과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제도를 운영하는 인적 기반 정비의 일환으로서, 사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 밖에도 재판을 지원하는 전문가(전문위원 등)의 전문적 지식을 특히 새로운 유형의 사건 등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과, 사회에 잠재된 분쟁 해결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재판 이외의 방법을 포함하여 분쟁에 따른 해결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 등도 중요하다. 후자의 점과 관련해서는 사법 접근성의 추가적인 확충과 법조 유자격자의 활동 영역 확대도 중요한 검토 과제가 된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운영 및 체제 정비 등의 대응책을 확충함으로써 심리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가 복잡 ·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은 재판에 대해 더욱 질 높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소가 전문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것과 법조계와 외부 기관 간의 연계 등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 법원 등 관계 기관들이 제도, 운영, 사회 기반 정비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 나아가 기업 관계자나 소비자 분쟁 관련자 등 사회에서 분쟁에 연루된 이들로부터도 이러한 노력과 검토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위 표현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단순히 신속화법과 검증검토회, 그리고 검증보고서로 구성된 신속화법 체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신속화법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 법조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종합적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즉 신속화법 체계에 대한 평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 각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본 사회 전체의 노력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속화법의 체계는 "**최고재판소의 검증검토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관계 기관들이 제도 · 운용 · 체제 측면의 대책을 검토 및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다시 최고재판소에서 검증되는 순환 구조(サイクル)을 통해, 적정성과 충실성을 전제로 한 신속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난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화법이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순환구조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최고재판소의 검증과 관계 기관의 검토 및 실시를 통해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는 신속화법의 기본 틀이 갖는 필요성과 중요성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186]

유사한 맥락에서, 야마모토 교수 역시 신속화법 체계가 외부 전문가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하게 사법 서비스의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를 고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최고재판소에게는 매우 담대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을뿐더러 재판소 내부에도 재판지연에 관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187]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위와 같은 신속화법이 상정하는 사이클을 실현하는 데 있어, 통계 데이터는 중요한 기초**"**가 되며, 해당 데이터를 분석 · 검증하고 그 배경에 있는 실정(사회적 요인 등), 그리고 향후 과제(재판절차의 IT화 등)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체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188]

나아가, 당초 신속화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일본변호사연합회 역시, 현재에는 신속화법이 단순히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소송 촉진법이 아니라 충실한 절차의 실시와 이를 지지하는 제도 및 체제의 정비라는, 운용 · 제도 · 체제에 걸친 종합적인 신속화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신속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속화법 체계가 나름의 유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189]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하는 대상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설사 해당 체계의 구성요소(신속화법,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가 각각 어떠한 효과를 초래하였는가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정비의 발판으로 삼아 재판

186) 정부검토보고서, 17면.
187) 야마모토 카즈히코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
188) 정부검토보고서, 17면.
189) 中尾正信, 韓国大法院司法政策研究院 質問に対する回答要旨, 사법정책연구원 내부자료 (2025. 11. 5.), 4면.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추가적 노력을 할 수 있는가에 그 진정한 의의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90]

Ⅳ. 소결

일본의 사례는 신속화법을 근거로 삼아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를 주축으로 삼는 사법통계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통계치를 단순 나열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해당 통계치에 대한 분석을 덧붙이고 결과를 명확하고 가시적인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본의 시도가 실제 재판의 심리기간을 단축시켰는지, 애당초 이를 통하여 재판지연 문제라는 복잡한 사안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화법 체계의 제도개선, 기반정비법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시도가 전혀 무의미하다고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일본의 체계를 그대로 우리의 사법통계 체계에 이식(移植)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특정 제도나 시책을 도입 또는 개선함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옳은 방향이라고 한들, 그 설계가 과도하여 복잡하거나 운용에 지나치게 큰 인적 · 물적 비용이 수반된다면, 해당 제도나 시책을 필히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본의 신속화법,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 체제를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결한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법통계의 거의 유일하고 중요한 자원인 사법연감 체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여건의 한계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이를 우리의 사정에 부합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응용하여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이다.

190) 실제 일본 법무성도 신속화법이 기반정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 · 충실을 전제로 한 신속한 절차와 이를 지탱하는 제도와 체제의 양면으로부터, 검토 및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신속화법 체계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제도와 체제의 개선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정부검토보고서, 9면.

제4장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과 과제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서설

앞선 장에서 도출한 일본의 시사점을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국내 사법통계 관련 체계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한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이 전제되어야지만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가 가지는 함의를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진정으로 우리 사법통계 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을 둘러본다(제2절). 특히 이 연구는 실제 사법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으로 얻을 수 없는 유의미한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장에서는 우리 사법통계의 핵심 자료인 사법연감과 사법통계월보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은 물론 해당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상세히 담고자 하였다(제3절). 이를 통하여 단순히 우리가 발간하는 사법통계 자료의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이를 생성하기 위한 사법통계 관련 조직과 그 업무의 이면과 한계를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제4절). 이러한 내용은 이어지는 제5장에서 일본 신속화법 체계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제시하는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중장기적 과제와 개선방안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제5장 제4절).

제2절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

I. 법원 사법통계의 법적 근거

1. 통계 작성의 목적

법원통계는「법원조직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이 관장하는 각종 사건 등의 유형과 집계를 신속 ·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 · 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원통계규칙」제1조).

2. 수집

법원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각종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의 각종 시스템에 의한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여 수집한다(「법원통계규칙」제2조,「법원통계예규」제2조, 제3조).

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한 수집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추출하며 통계의 기준일은 당해 통계를 추출한 날짜로 한다.

나. 등기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집

등기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 등기소장이 등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통계보고서 완료현황 메뉴의 완료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

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한 수집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의 주무과장이 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가족관계등록건수표 마감관리 메뉴의 마감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

라. 부정기 보고에 의한 수집방법

부정기 보고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통계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각급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정하는 보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통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각 지방법원장과 가정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지원 및 시·군법원의 통계를 취합하여 함께 보고한다.

3. 관리

가. 통계담당자

각급 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지원 및 시·군 법원별로 그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를 총괄할 담당자를 지정한 후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법원통계예규」 제4조 제1항, 제2항).

나. 확인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 월보를 매달 20일까지 열람한 후 법원통계월보에 수록된 전달의 통계가 해당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다. 정정보고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 월보 기재 통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소관 부서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동조 제4항).

II. 사법통계 조직

1. 개요

「법원조직법」 제19조에 의하면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며,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 예산 · 회계 · 시설 · 통계 · 송무(訟務) · 등기 · 가족관계등록 · 공탁 · 집행관 · 법무사 ·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29] 법원행정처 조직도[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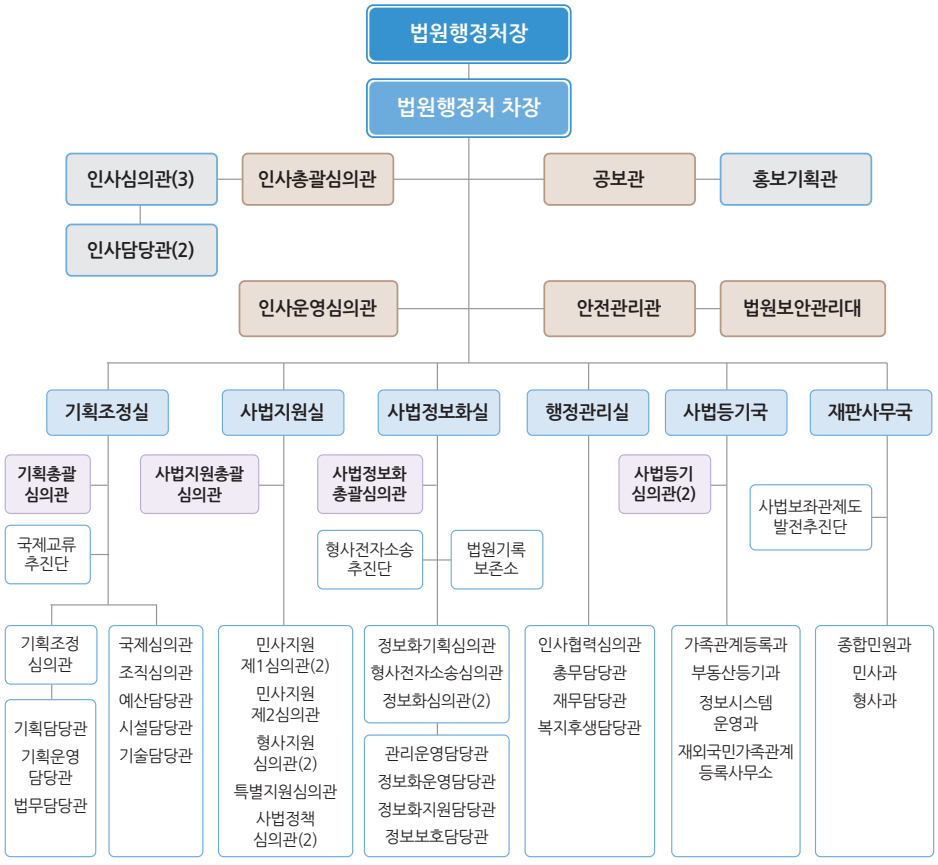

191) 대한민국 법원, 사법부 소개, 법원행정처, 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affiliate/index.html (2026. 7. 1. 최종확인). 다만 이 그림에는 2026. 1. 29. 일부개정되어 2. 23. 시행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개정에서는 사법정보화실 사법전산운영심의관의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였다.

그중에서도 통계 사무에 관해서는 기존에 전산정보관리국이 존재하였으나, 2024년 2월 2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19일부터 시행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존 전산정보관리국이 사법정보화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사법부 정보화 전략 컨트롤타워 수립 및 정보화조직의 재판 지원 기능 강화,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조직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전산정보관리국을 '사법정보화실'로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유가 제시되었다.

2.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실의 주요 업무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6]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192)]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장사무
사법정보화실장	사법정보화총괄		1.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사법정보화실 내 부서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내지 수행 3.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기획		1. 사법정보화정책 수립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다른 실·국의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정보화시스템 반영 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법통계의 제공,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사법인공지능		1. 사법 인공지능정책 수립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3. 다른 실·국의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인공지능 시스템 반영 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1. 사법정보화 예산 및 결산, 계약 등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사법·사법행정 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9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장사무
			3. 등기 · 가족관계등록 · 공탁 · 집행관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단, 사법등기심의관 분장 사무 제외) 4. 사법정보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관리 운영	1. 대법원전산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2. 사법정보화 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사무용, 법정용 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 사업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운영	1. 사법정보화 사업 운영 전략 수립, 시스템관리 등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판사무 · 전자소송 · 공탁 · 집행관 등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관련 업무 ·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 사업 품질관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지원	1.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각급 법원 데이터센터 관련 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전산망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사법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 보호	1. 사법부 정보화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2.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사법부 가상화시스템 보급,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III. 사법통계 업무[193]

1. 개요

법원의 통계 시스템은 데이터를 통합 · 저장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DW)와 사용자가 데이터를 조회 · 추출하는 온라인 분석처리(Online Analytical Processing, OLAP)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사건정보를 지방법원별로 수작업으로 집계하고 이를 법원행정처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법원 업무가 본격적으로 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에 관한 정보의 대부분의 과정과 그 통계가 과거 전산정보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194]

2. 업무 유형

사법통계팀은 법원행정처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실에 소속된 통계전문인력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담당하는 사법정보화실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분류해보자면 아래의 [그림 30]과 같이 정기적 업무와 비정기적 업무로 대별된다. 전자인 정기적인 통계 수집 및 공개 업무로는 사법연감, 법원통계월보, 그리고 법원 내부의 행정사무감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후자인 정기적인 통계 업무가 아닌 비정기 업무로는 주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 주체는 국회, 법원 내부, 그리고 그 외 외부기관이 있다.

우선 정기적인 통계업무의 경우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가 유사한 세부 업무를 가지는데, 여기에는 데이터의 관리, 통계의 작성, 원고 작성, 그리고 해당 통계원고의 게시가 있다. 이 두 자료의 작성 및 발간이 사법정보화실의 주요한 업무이며,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비정기적인 자료요청에 대응하는 업무가 수시로 존재한다.

193) 우리 사법부의 통계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2025. 12. 9. 이루어진 사법정보화실 신유정 사무관과의 인터뷰에 크게 의존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194) 김두얼,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36면.

[그림 30] 사법통계 조직 주요 업무



3. 업무정의 및 상세화

앞서 살펴본 정기적 그리고 비정기적 통계업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 것이 아래의 [그림 31]이다.

주요 업무인 사법연감의 경우, 데이터 관리, 통계작성, 원고작성, 통계 게시의 주요 업무의 프로세스가 다시 〈데이터 조회 – 오류데이터 확인 – 수정요청〉, 〈데이터 추출 – 통계 작성 및 편집 – 정합성 검토 – 오류수정〉, 〈원고작성 – 교정〉, 〈통계확정 – 연감 게시〉로 구분될 수 있다. 반면 법원통계월보의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통계 작성 단계에서 통계 작성 및 편집의 단계가, 원고작성에 있어서도 원교의 교정의 세부 업무가 생략되곤 한다. 여기에 더하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표준안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 추출 및 정합성 검토를 통한 자료의 작성, 그리고 해당 자료의 회신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가진다.

반면, 자료요구를 비롯한 비정기적 업무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것이 통계의 수집이나 보안 등의 차원에서 제공가능한지 검토하는 단계를 거친

후, 관련 데이터의 추출과 통계자료의 구성, 그리고 정합성 검토, 요구자료의 작성의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된 사항에 관한 통계 자료를 회신하고 이후의 추가적 자료요구 등의 후속 요청에 대응한다.

[그림 31] 사법통계팀 세부 업무



제3절 주요 사법통계 자료

I. 사법연감

1. 개요

법원행정처는 법원에서 한 해 동안 달성한 주요 운영성과와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수록한 사법연감을 매년 하반기에 발간하고 있다. 사법연감은 재판과 행정, 시책 등을 아우르는 사법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이다.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사법연감을 단행본과 함께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사법정보의 공개를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분야별 통계 수치를 pdf와 excel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 사법연감 웹페이지 화면



2. 법적 근거

사법연감은 1954년 7월 1일 최초로 발간되었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195]

3. 사법연감 업무 프로세스

사법연감은 1년간 법원의 활동을 총망라한 자료로서, 통계는 주로 한 해 동안 소송 및 비송사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록한다. 매년 하반기(9월경) 발간되며, 통계팀 업무로는 제6장 통계부분 제1절 개황(사건 전체 현황), 제2절 추이(최근 5~10년간 사건 추이), 제3절 현황(당해 연도 사건 현황 및 세부 내용)을 작성한다.

사법연감을 비롯한 통계업무의 대략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앞의 절에서 살펴본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 사법연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표 17] 사법연감 업무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프로세스	구체적 업무	주요 내용
표준안 수립	정책결정 부서의 사법연감 의견을 취합한 표준안 의견을 검토하여 사법연감의 표준안을 수정 및 검토하고, 확정함	
	표준안 의견 수립	사법연감 담당부서에서 취합된 정책결정부서의 의견을 수렴함
	추출 여부 검토	표준안 의견에 대해 추출 여부를 검토함
	표준안 수정	추출이 확정된 경우 기존 표준안을 정하기 위하여 정책결정부서와 협의하여 표준안을 검토 및 확정함
	불가 의견 전달	추출이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정책결정부서에 전달함

195) e-법원 역사관, 주요 법원사, https://history.scourt.go.kr/intro/intro.do (2026. 7. 1. 최종확인).

프로세스	구체적 업무	주요 내용
데이터 관리	사법연감 원고 작성 전에 사전작업으로 오류데이터를 확인하여 각급 법원 및 재판부에 수정 요청 및 검토 진행함	
	데이터 조회	OLAP을 통해 재판사무시스템의 입력 데이터를 조회함
	데이터 변환 다운로드	조회된 데이터를 excel 형식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함
	오류데이터 확인	데이터를 검토하여 오류를 확인하는 업무로 데이터가 무결한 경우 데이터 추출로 진행함
	데이터 수정 요청	오류가 발견될 시 각급 법원 재판부에 오류의 수정을 요청하고 데이터 추출부터 재작업함
통계 작성	• 사법연감 원고 작성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고 정합성을 검토함 • 오류 발견시 통계작성 과정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각급 법원 및 재판부에 수정하도록 요청함	
	데이터 추출	사법연감 원고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OLAP으로 추출함
	데이터 변환 다운로드	추출된 데이터를 excel 형식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함
	통계작성 및 편집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사법연감에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 및 편집함
	정합성 검증	작성된 통계자료의 정합성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 확인함
	오류 데이터 확인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계자료를 다시 작성 및 편집함
	데이터 수정 요청	데이터 누락이 있는 경우 각급 법원 재판부에 요청하여 수정함
원고 작성	정합성이 확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법연감 원고를 작성하고 사법연감 담당 부서와 협업하여 원고를 교정함	
	사법연감 원고 작성	사법연감의 형식에 맞추어 원고를 교정함
	원고 교정 여부 검토	교정 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우 사법연감 통계를 확정함
	원고 교정	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함

프로세스	구체적 업무	주요 내용
	교정요청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사법연감 담당부서에 pdf 형식 원고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고 불필요한 경우 원고를 확정함
통계 게시	사법연감 원고의 교정을 거쳐 확정된 통계 내용은 기존 자료에 반영하여 통계를 수정하고, 사법연감은 온라인에 게시함	
	사법연감 통계 확정	사법연감 원고의 교정을 통해 확정된 통계는 전년도 12월 법원 통계월보 등 기본 자료에 반영하여 수정함
	사법연감 원고 게시	확정된 사법연감 원고 최종본을 법원 홈페이지에 excel, pdf 파일로 게시함

4. 2025년도 사법연감의 주요 내용

가. 개요

2025년도 사법연감은 2024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법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연혁, 조직,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재판기관, 재판운용, 사법행정 제도 및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재판을 비롯한 사법 전반에 관한 각종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2025년 사법연감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표 18] 2025년도 사법연감의 각 장과 그 내용

각 장의 내용	
제1장	2024년 사법부의 발자취
제2장	법원
제3장	재판
제4장	사법행정제도
제5장	사법행정운영
제6장	통계
부록	–

나. 사법연감의 통계 관련 주요 내용

2025년도 사법연감은 제6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통계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법연감은 사건의 개황,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그리고 사건의 현황(세별표)으로 각각 1,2,3절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196]

[표 19] 사건의 개황

제1절 사건의 개황	
구분	**내용**
제1항 총설	1. 서언
	2. 전체사건의 개황
	3. 인구와 사건과의 대비
	4. 법관 업무량
제2항 민사	1. 개황
	2. 민사본안사건
	3. 민사조정사건
	4. 민사독촉사건
	5. 민사집행사건
	6. 민사신청 · (재)항고사건
	7. 비송사건
제3항 가사	1. 개황
	2. 가사소송사건
	3. 가사조정사건
	4. 가사비송사건
	5. 가사신청 · (재)항고사건
제4항 행정	1. 개황
	2. 행정소송(본안)사건
	3. 행정신청 · (재)항고사건

196) 제3절 사건의 현황(세별표)의 경우, 분량의 문제로 인해 [별첨 2]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1절 사건의 개황	
구분	**내용**
제5항 지식재산	1. 개황
	2. 지식재산본안사건
	3. 지식재산신청 · (재)항고사건
제6항 선거	
제7항 형사	1. 개황
	2. 형사공판사건
	3. 국민참여재판사건
	4. 치료감호사건
	5. 약식명령사건
	6. 즉결심판사건
	7. 영장사건
	8. 형사신청 · (준 · 재)항고사건
	9. 증인지원제도
	10. 양형조사
제8항 소년보호	1. 사건의 동향
	2. 소년보호사건
	3. 소년보호(재)항고 · 신청 · 집행감독사건
제9항 가정보호	1. 사건의 동향
	2. 가정보호사건
	3. 가정보호(재)항고 · 임시조치 · 배상신청 · 집행감독사건
제10항 비송	1. 개황
	2. 등기사건
	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4. 공탁사건
제11항 감치 · 과태료	–

[표 20] 사건의 추이(누년 비교)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구분	**내용**
제1항 전체사건	1. 총괄
	2. 본안사건-심급별
제2항 민사	1. 민사사건 누년비교표(총괄표)-전심급
	2. 민사사건 접수건수의 추이(도표)
	3. 민사사건 누년비교표-심급별
	4. 민사본안사건 누년비교표-심급별
	5. 민사본안사건의 추이
	6. 제1심 민사본안 합의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7. 제1심 민사본안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8. 제1심 민사본안 소액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9.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10. 상고심 민사본안사건 누년비교표-원심 합의 · 단독별 접수
	11. 제1심 민사본안사건 누년비교표-합의 · 단독별 접수
	12. 제1심 민사본안 합의사건 접수건수의 추이
	13. 제1심 민사본안 단독사건 접수건수의 추이
	14. 제1심 민사본안 소액사건 접수건수의 추이
	15. 제1심 민사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누년비교표
	16. 제1심 민사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누적도수표
	17.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누년비교표
	18. 상고심 민사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누년비교표
	19. 제1심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누년비교표-접수
	20. 제1심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비교-접수(도표)
	21. 제1심 어음 · 수표금사건 접수건수의 추이(도표)
	22. 제1심 민사본안사건 월별 접수건수 누년비교표
	23. 제1심 민사본안사건 월별 평균접수건수(2015~2024)(도표)
	24. 민사본안사건 처리율 누년비교표-심급별
	25. 민사본안사건 심급별 처리결과 비교표-합의 · 단독별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구분	내용
	26. 민사본안사건 판결률 및 상소율 누년비교표-합의 · 단독별
	27. 민사본안사건 파기(취소)율의 추이(도표)
	28. 민사본안사건 상소율의 추이(도표)
	29.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심급별
	30. 민사조정사건 누년비교표-지방법원별 접수
	31. 국가배상사건 누년비교표-심급별
	32. 민사독촉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33. 민사집행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총괄표)
	34. 강제경매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35.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36. 경매사건 종류별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총괄표)
	37. 경매사건 종류별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부동산)
	38. 경매사건 종류별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자동차 · 건설기계)
	39.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40. 민사집행사건 종류별 접수건수 누년비교표
	41. 민사신청 종류별 접수건수 누년비교표-지방법원 접수
	42. 민사신청 및 항고사건 누년비교표-지방법원별 접수(총괄표)
	43. 가압류 · 가처분사건 누년비교표-지방법원별 접수
	44. 화해사건(제소전) 누년비교표-지방법원별 접수
	45. 민사신청 및 항고사건 누년비교표-고등법원별 접수
	46. 민사신청 및 재항고사건 누년비교표-대법원 접수
	47. 소송구조 누년비교표-지방법원
제3항 가사	1. 가사소송사건 누년비교표-심급별
	2. 가사소송사건 접수 · 처리 건수의 추이(도표)
	3. 가사사건 누년비교표(총괄)
	4. 제1심 가사소송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5. 항소심 가사소송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구분	**내용**
	6. 제1심 가사소송사건 종류별 누년비교표-접수
	7. 가사소송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심급별
	8. 가사조정사건 누년비교표-지방법원별 접수
	9. 가사비송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총괄표)
	10. 가사비송사건 종류별 누년비교표-접수
제4항 행정	1. 행정소송사건 누년비교표-심급별
	2. 제1심 행정소송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3. 제1심 행정신청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4. 행정 재항고 및 상고심 신청사건 누년비교표-접수
제5항 지식재산 · 선거	1. 지식재산사건 누년비교표-접수
	2. 선거소송사건 누년비교표-접수
제6항 형사	1. 형사사건 누년비교표(총괄표)-전심급
	2. 형사공판사건 누년비교표(총괄표)-심급별
	3. 형사공판사건의 추이(도표)
	4. 제1심 형사공판사건 누년비교표(총괄)-법원별 접수
	5. 제1심 형사공판 합의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6. 제1심 형사공판 단독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7.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8.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누년비교표-접수
	9. 제1심 형사공판사건 누년비교표-합의 · 단독별 접수
	10.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합의 · 단독별 구성-접수(도표)
	11.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수 누년비교표
	12.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비율의 추이(도표)
	13. 제1심 형사공판사건 월별 접수인원수 누년비교표
	14. 제1심 형사공판사건 월별 평균 접수인원수(2015~2024)(도표)
	15. 형사공판사건 처리율 누년비교표-심급별
	16.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처리인원수 누년비교표
	17. 제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별 누년비교표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구분	내용
	18. 제1심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사형인원수 누년비교표
	19. 제1심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무기형(징역 · 금고) 인원수 누년비교표
	20. 제1심 형사공판사건 과형별(자유형) 누년비교표
	21.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집행유예율 누년비교표
	22.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 및 무죄율 누년비교표
	23.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누년비교표
	24.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누년비교표
	25. 형사공판사건 파기율 추이(도표)
	26. 형사공판사건 판결률 및 상소율 누년비교표-합의 · 단독별
	27.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인별 파기인원수 누년비교표
	28.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상고인별 파기인원수 누년비교표
	29.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심급별
	30. 형사공판사건 미제기간별 인원수 누년비교표-심급별
	31. 형사영구미제사건 법원별 누년비교표
	32.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3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제1심 접수인원의 추이(도표)
	34. 절도와 강도의 죄 및 사기와 공갈의 죄 제1심 접수인원의 추이(도표)
	35. 중요 특별법범사건 제1심 접수인원의 추이(도표)
	36.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처리인원수 누년비교표
	37.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항소율 누년비교표
	38. 제1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사건의 재판결과 누년비교표
	39. 제1심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재판결과 누년비교표
	40.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누년비교표-심급별
	41. 국선변호인 선정건수의 추이(도표)
	42. 약식명령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43. 즉결심판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구분	내용
	44. 약식명령사건 접수인원의 추이(도표)
	45. 즉결심판사건 접수인원의 추이(도표)
	46. 재정신청사건 누년비교표
	47. 구속영장 누년비교표-지방법원별 접수
	48. 압수수색검증영장 누년비교표-지방법원별 접수
	49. 구속영장 · 압수수색검증영장 · 감호영장 · 감정유치장 발부율 누년비교표(지방법원)
	50. 형사신청 및 항고사건 누년비교표-지방법원별 접수(총괄표)
	51. 형사신청사건 종류별 접수건수 누년비교표
	52. 보석인원수 누년비교표
	53. 보석허가율의 추이(도표)
	54. 형사보상청구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55. 형사신청 및 항고사건 누년비교표-고등법원별 접수
	56. 형사신청 및 재항고사건 누년비교표-대법원 접수
제7항 소년보호	1. 소년보호사건 접수 · 처리별 누년비교표
	2. 소년보호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3. 소년보호사건 접수구분별 누년비교표
	4. 보호소년 연령별 누년비교표
	5. 소년보호사건 처분별 누년비교표
	6. 소년보호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제8항 가정보호	1. 가정보호사건 접수 · 처리별 누년비교표
	2. 가정보호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3. 가정보호사건 처분별 누년비교표
	4. 가정보호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제9항 기타	1. 공탁사건 누년비교표
	2. 등기사건 누년비교표
	3. 부동산 및 선박 등기사건의 추이(도표)
	4. 상업 등기사건의 추이(도표)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구분	내용
	5. 비영리법인 등기사건의 추이(도표)
	6. 등기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7. 등록세 수입액 누년비교표-법원별
	8. 등기사항증명서 통수(개수) 누년비교표-법원별
	9.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누년비교표-법원별
	10. 수입인지 수입액 누년비교표
	11. 벌과금액 누년비교표
	12.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누년비교표
	1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누년비교표-법원별 접수

다. 사법연감 통계의 표기방식

사법연감은 위와 같이 방대한 사항에 관한 통계를 담고 있다. 통계 정보는 어떠한 항목에 관한 수치를 제공하는가와 더불어, 그 제공의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사법연감은 주로 아래와 같이 표를 통하여 통계 수치를 그대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21]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197]

(단위 : 일)

구분	심급	제 1 심			항 소 심		상 고 심	
		합 의	단 독	소 액	고 법	지 법	합 의	단 독 (소액포함)
종이소송 + 전자소송	처 리 계	437.3	222.1	134.1	313.8	327.5	521.1 [172.0]	99.9 [99.9]
	판 결	554.3	246.8	164.7	336.9	376.8	160.5 [160.1]	100.9 [100.9]
	기 타	237.1	174.2	93.5	232.6	236.2	623.5 [290.6]	82.6 [80.8]
전자소송	처 리 계	437.3	222.1	134.1	313.6	327.4	162.1 [161.4]	99.6 [99.5]
	판 결	554.4	246.8	164.7	336.6	376.6	154.2 [154.2]	100.6 [100.6]
	기 타	237.2	174.2	93.4	232.5	236.2	263.4 [254.7]	80.0 [78.1]

197)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5), 762면.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수치를 재가공하여 그래프 등 2차 자료를 작성하여 삽입하는 경우도 종종 찾을 수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민사본안사건 제1심 처리기간별 분포[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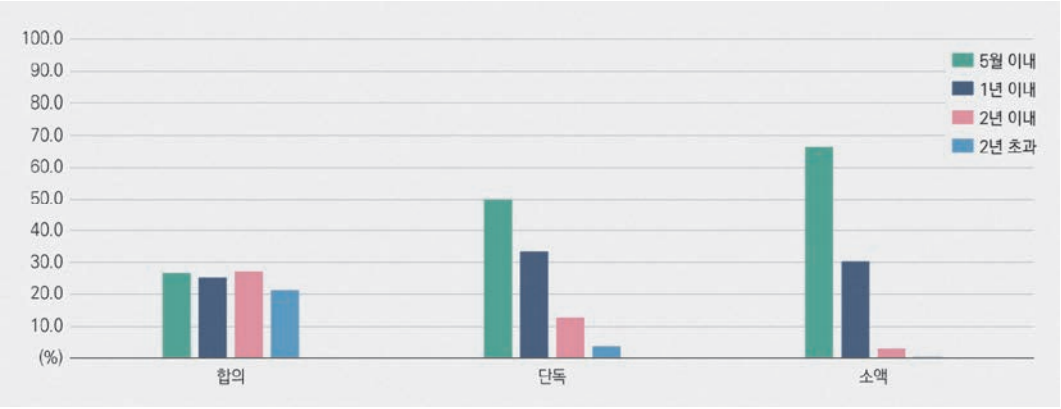

II. 법원통계월보

1. 개요

법원통계월보는 법원행정처 통계팀에서 매월 발간하는 통계자료로서, 사건 유형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와 월별 사건처리 동향 및 증감 추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법원통계월보는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excel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198)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5), 761면.

2. 업무 프로세스

[표 22] 법원통계월보의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프로세스	구체적 업무	주요 내용
–	데이터 변환 다운로드	조회된 데이터를 excel 형식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함
	오류 데이터 확인	오류 데이터를 확인하고 무결한 경우 데이터를 추출함
	데이터 수정 요청	오류가 발견될 경우 각급 법원 재판부에 누락데이터를 입력하고 오류를 수정하도록 요청함
통계 작성	데이터 조회	법원통계월보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OLAP으로 조회함
	데이터 추출	조회된 데이터를 추출함
	데이터 변환 다운로드	추출된 데이터를 excel 형식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함
	통계작성 및 편집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법원통계월보에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 및 편집함
	정합성 검증	작성된 통계자료의 정합성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함
	오류 데이터 확인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계자료를 다시 작성 및 편집함
	데이터 수정 요청	데이터 누락이 있는 경우 각급 법원 재판부에 요청하여 수정함
원고 작성 및 게시	–	정합성이 확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사건 분야별 통계를 취합 및 관리함
	데이터 취합	검증을 통해 무결한 데이터를 취합함
	법원통계월보 원고 작성	법원통계월보 양식에 맞게 원고를 작성함
	법원통계월보 게시	작성된 원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관리함

프로세스	구체적 업무	주요 내용
법원통계월보 현행화	데이터 갱신 확인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와 확정된 사법연감 데이터에 대한 갱신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경우 법원통계월보 작성 업무를 종료함
	데이터 갱신 및 작성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을 통해 갱신함 • 사법연감이 확정되는 시점에 전년 법원통계월보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에 갱심함

3. 주요 내용

사법정보공개포털을 살펴보면 법원통계월보는 크게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되어 그 아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다. 대분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 소년보호, 가정보호, 등기, 가족관계등록비송, 공탁, 인신보호로 구분되며, 민사의 중분류는 본안, 조정, 신청, 항고, 재항고, 민사비송, 민사독촉, 민사집행, 도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23] 법원통계월보 주요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상세
민사	본안	상고심–접수 · 처리 · 미제
		상고심–처리상세
		항소심〉고등, 지방–접수 · 처리 · 미제
		항소심〉고등, 지방–처리상세
		제1심〉합의–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합의–처리상세
		제1심〉단독–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단독–처리상세
		제1심〉소액–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소액–처리상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상세**
	조정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 조정
		수소법원 조정
	신청	신청
	항고	항고
	재항고	재항고
	민사비송	민사비송-접수 · 처리 · 미제
		상사비송-접수 · 처리 · 미제
		과태료-접수 · 처리 · 미제
	민사독촉	민사독촉
		전자독촉
	민사집행	강제경매 · 임의경매
		기타집행
	도산	개인파산사건
		법인파산사건
		면책사건
		회생단독사건
		회생합의사건
		개인회생사건
형사	공판	상고심-접수 · 처리 · 미제
		상고심-처리상세(인원수)
		항소심〉고등, 지방-접수 · 처리 · 미제
		항소심〉고등, 지방-처리상세(인원수)
		제1심〉합의-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합의-처리상세(인원수)
		제1심〉단독-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단독-처리상세(인원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상세**
	치료감호처분	상고심
		항소심
		제1심
	약식명령	약식명령
		전자약식
	즉결심판	즉결심판
	영장	구속영장
		기타영장
	신청	신청
	항고	항고
	재항고	재항고
	보석	보석
	체포, 구속적부심사	체포, 구속적부심사
	국선변호인선정	상고심
		항소심: 고등 · 지방
가사	소송	상고심–접수 · 처리 · 미제
		상고심–처리상세
		항소심〉접수 · 처리 · 미제
		항소심〉처리상세
		제1심〉합의–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합의–처리상세
		제1심〉단독–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단독–처리상세
	조정	조정
	신청	신청

구분		
대분류	**중분류**	**상세**
	항고	항고
	재항고	재항고
	가사비송	가사비송–접수 · 처리 · 미제
행정	소송	상고심–접수 · 처리 · 미제
		상고심–처리상세
		항소심–접수 · 처리 · 미제
		항소심–처리상세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처리상세
	신청	신청
	항고	항고
	재항고	재항고–접수 · 처리 · 미제
특허	소송	상고심–접수 · 처리 · 미제
		상고심–처리상세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처리상세
	신청	신청
	재항고	재항고
선거	소송	대법원단심–접수 · 처리 · 미제
		대법원단심–처리상세
		상고심–접수 · 처리 · 미제
		상고심–처리상세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
		제1심–처리상세
	신청	신청

구분		
대분류	**중분류**	**상세**
	재항고	재항고
소년보호	소년보호	접수 · 처리 · 미제
		보호처분상세
	신청	신청
	항고	항고
	재항고	재항고
가정보호	가정보호	접수 · 처리 · 미제
		보호처분상세
	항고	항고
	재항고	재항고
	임시조치	임시조치
등기	등기신청, 등기사항증명서, 기타	등기신청, 등기사항증명서, 기타
가족관계등록비송	가족관계등록비송(접수)	가족관계등록비송(접수)
공탁	공탁	공탁
인신보호	인신보호	인신보호
	신청	신청
	항고	항고
	재항고	재항고

[그림 34] 법원통계월보 웹페이지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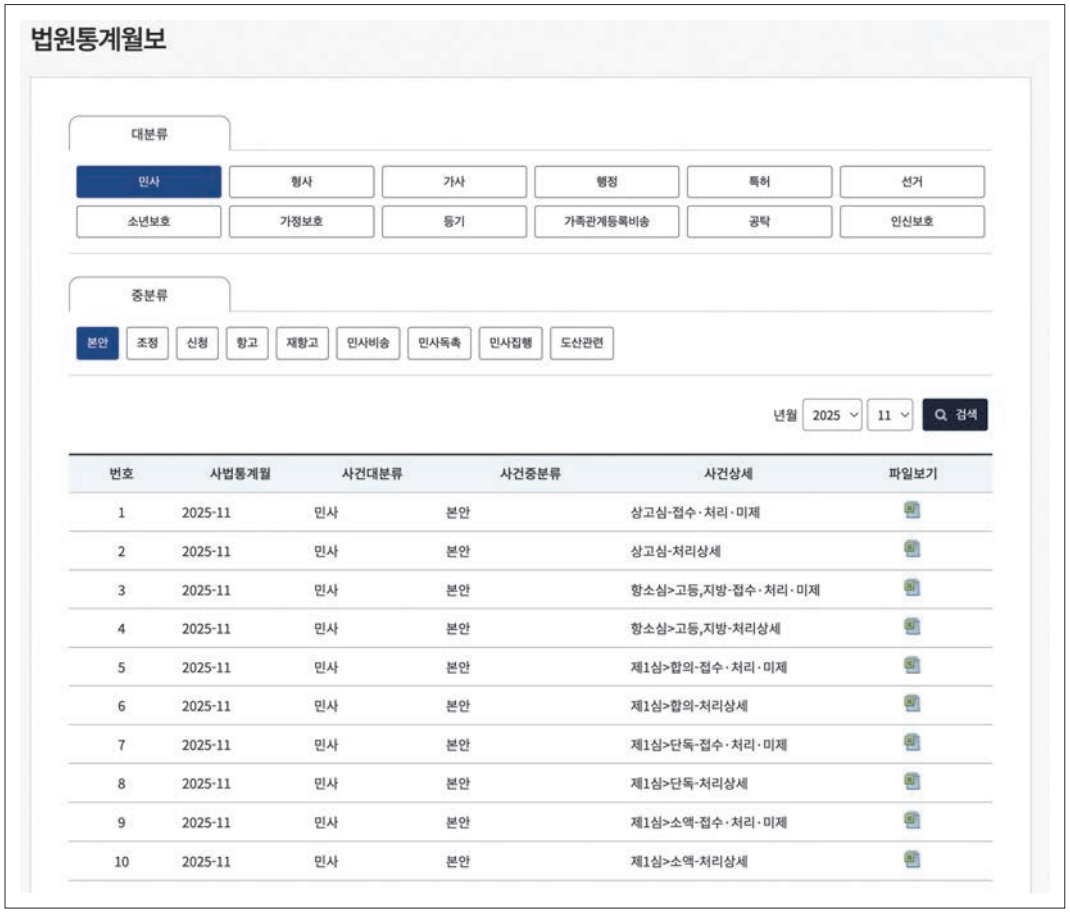

[그림 35] 민사 제1심 단독 접수 · 처리 · 미제

2026년 1월 15일 추출

구분 / 법원	2025년 12월			누계			미제
	접수	처리	항소	접수	처리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4,826**	**3,706**	**443**	**55,507**	**54,415**	**5,212**	**34,225**
서울회생법원	-	-	-	-	-	-	-
서울동부지방법원	**919**	**788**	**68**	**10,830**	**9,925**	**963**	**6,984**
서울남부지방법원	**1,224**	**904**	**95**	**12,494**	**13,180**	**1,362**	**7,294**
서울북부지방법원	**1,558**	**896**	**70**	**11,052**	**8,045**	**800**	**7,780**
서울서부지방법원	**1,222**	**615**	**62**	**8,561**	**9,254**	**758**	**5,682**
의정부지방법원	456	320	33	4,374	4,077	463	3,300
고양지원	653	433	53	6,596	6,346	898	3,605
남양주지원	443	344	41	4,345	3,923	519	3,159
소계	**1,552**	**1,097**	**127**	**15,315**	**14,346**	**1,880**	**10,064**
인천지방법원	1,343	991	113	13,564	13,959	1,670	8,101
부천지원	493	460	52	5,550	5,545	556	3,497
소계	**1,836**	**1,451**	**165**	**19,114**	**19,504**	**2,226**	**11,598**
수원지방법원	1,418	1,203	161	15,270	14,944	2,117	9,938
성남지원	764	509	66	7,760	7,613	933	5,215
여주지원	205	175	22	2,200	2,098	311	1,382
평택지원	382	258	42	3,720	3,490	477	2,518
안산지원	537	368	37	5,751	5,387	493	3,165
안양지원	278	267	38	3,709	3,581	478	1,906
소계	**3,584**	**2,780**	**366**	**38,410**	**37,113**	**4,809**	**24,124**
수원회생법원	**5**	**6**	**1**	**50**	**52**	**2**	**31**
춘천지방법원	113	96	12	1,340	1,335	211	844
강릉지원	108	82	10	1,135	1,264	192	789
원주지원	168	135	30	1,785	1,804	224	1,281
속초지원	48	33	3	566	557	65	498
영월지원	33	51	6	511	440	47	257
소계	**470**	**397**	**61**	**5,337**	**5,400**	**739**	**3,669**
대전지방법원	803	649	92	8,146	7,581	1,051	6,110
홍성지원	91	87	8	1,124	1,017	128	702
공주지원	53	45	2	506	557	76	323
논산지원	75	62	16	668	661	89	350
서산지원	159	108	7	1,543	1,478	167	948
천안지원	370	283	39	4,132	3,921	532	2,622
소계	**1,551**	**1,234**	**164**	**16,119**	**15,215**	**2,043**	**11,055**
청주지방법원	357	320	42	4,139	3,961	526	2,505
충주지원	101	74	6	1,154	1,168	125	624
제천지원	47	21	5	413	407	56	213
영동지원	24	19	6	260	287	43	137
소계	**529**	**434**	**59**	**5,966**	**5,823**	**750**	**3,479**

2026년 1월 15일 추출

구분 / 법원	2025년 12월			누계			미제
	접수	처리	항소	접수	처리	항소	
대구지방법원	720	622	104	7,787	8,147	1,130	4,603
대구지법서부지원	298	224	29	3,215	3,430	432	2,036
안동지원	66	58	8	766	773	105	494
경주지원	73	62	9	796	820	115	448
포항지원	144	122	10	1,502	1,385	161	1,045
김천지원	148	90	15	1,398	1,388	143	1,079
상주지원	79	30	-	595	553	54	462
의성지원	27	8	-	256	241	37	137
영덕지원	29	13	1	342	342	33	190
소계	**1,584**	**1,229**	**176**	**16,657**	**17,079**	**2,210**	**10,494**
부산지방법원	710	634	58	7,932	7,645	997	5,118
부산지법동부지원	492	331	49	4,399	4,218	591	2,948
부산지법서부지원	377	278	31	3,549	3,614	487	2,223
소계	**1,579**	**1,243**	**138**	**15,880**	**15,477**	**2,075**	**10,289**
부산회생법원	-	-	-	-	-	-	-
울산지방법원	**411**	**445**	**60**	**4,725**	**4,857**	**622**	**2,996**
창원지방법원	390	298	31	4,275	4,177	502	2,654
마산지원	146	77	8	1,314	1,284	171	951
진주지원	177	117	25	1,794	1,742	257	1,241
통영지원	135	73	14	1,297	1,588	232	708
밀양지원	48	54	7	558	595	96	323
거창지원	42	33	5	371	351	50	329
소계	**938**	**652**	**90**	**9,609**	**9,737**	**1,308**	**6,206**
광주지방법원	831	700	87	9,579	9,560	1,209	6,389
목포지원	157	118	15	1,664	1,685	176	1,070
장흥지원	16	9	2	227	261	43	133
순천지원	257	195	27	2,637	2,511	365	2,454
해남지원	50	65	9	566	563	67	352
소계	**1,311**	**1,087**	**140**	**14,673**	**14,580**	**1,860**	**10,398**
전주지방법원	830	342	57	4,304	4,254	579	3,313
군산지원	135	107	2	1,629	1,798	197	1,039
정읍지원	61	21	3	693	694	113	474
남원지원	27	29	6	360	391	54	216
소계	**1,053**	**499**	**68**	**6,986**	**7,137**	**943**	**5,042**
제주지방법원	**301**	**264**	**33**	**3,301**	**3,282**	**301**	**3,864**
총계	**26,453**	**19,727**	**2,386**	**270,586**	**264,421**	**30,863**	**175,274**
금년누계	270,586	264,421	30,863				
전년누계	268,655	260,469	28,345				

제4절 현행 사법통계 체계의 한계

I. 개요

사법연감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법통계 체계는 법원과 재판의 현황을 수치로 제시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 통계 기반이다. 그만큼 이는 우리 사법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사법부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여러 과제의 해결에까지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비단 사법연감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사법통계 체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개별 자료의 보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통계 체계 자체를 보다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사법통계를 작성 · 발간하는 조직의 측면과 사법통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체계의 한계를 차례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법통계 조직 및 업무에 있어서의 한계

1. 개요

사법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정보화실 내 사법통계팀은 현행 체계 아래에서 적지 않은 제약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한계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인력 구성과 역할 배분, 업무 간 연계 방식, 자료 처리 절차, 그리고 업무 수행 권한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서 구조적 제약이 중첩되어 있다.

2. 인력 구성과 역할의 한계

사법통계를 담당하는 조직은 극히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조직에는 9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법연감, 법원통계월보, 그리고 법원 내외부의 각종 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다수는 통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구조 아래에서는 그러한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통계 생산과 비정기적 자료 요청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분석과 기획, 제도 개선을 위한 활용으로 확장되기보다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생산 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업무 구조의 경직성이 결합되어, 조직이 보유한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가 고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업무의 유기적 연계 결여

사법통계 조직의 정기적 핵심 업무는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의 작성에 있다. 두 자료는 모두 법원과 재판에 관한 수치를 집계 · 정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도 상호 연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계의 추출, 가공, 검증, 공표에 이르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업무 방식은 각 보고서의 정형화된 형식과 기존 작성 관행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데이터와 작업 과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동시에, 그리고 통합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통계업무가 데이터 자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기보다, 개별 산출물의 작성 단위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업무 간 연계의 부족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자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게 만들고 통계 생산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과도한 수작업 의존

현행 사법통계 보고서의 작성과 편집 과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작업 의존성

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의 추출, 편집, 대조, 검증 등 주요 단계의 상당 부분이 담당자 개인의 수작업과 엑셀 작업에 기대고 있으므로, 업무 전반에 과도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방대한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고 병합하며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그 대응이 시스템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 개별 담당자가 관련 법원이나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역시 시간과 노력을 중복적으로 소모하게 만드는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결국 현재의 작업 방식은 통계 품질의 일관된 유지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전문성의 발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한편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업무 또한 사법통계 조직의 중요한 비정기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역시 요청되는 자료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비정형적이어서, 업무가 누적되거나 유사한 작업이 반복되는 등 적지 않은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한다. 정기 보고서 작성 업무와 비정기 자료 요청 대응이 모두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은, 사법통계 조직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충분한 권한의 부재

사법통계 담당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담당하는 작업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통계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단순한 입력 착오와 같이 기계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상대적으로 대응이 용이하겠지만, 일정한 판단이나 해석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통계 담당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담당자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일 뿐 아니라, 업무의 개선이나 새로운 통계 항목의 개발, 분석 기능의 확장 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책임은 부여되어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권한은 충분히 부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사법통계 업무는 점차 소극적 · 수동적인 형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권한의 부재는 단순한 운영상의 불편을 넘어, 향후 사법통계 체계의 발전 가능성 자체를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평가할 수 있다.

III. 사법통계의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

1. 개요

거듭 강조하듯이, 사법부가 마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예컨대 재판지연 문제만 보더라도, 그 원인이 법원 내부의 심리 진행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사자의 태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숙련된 소송대리인의 법기술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보다 넓게는 사회적 인식이나 정치 ·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연결된 것인지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진단은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에 다가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사법통계 체계는 법원이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2. 수치 데이터 중심 사법통계의 한계

무엇보다도 사법연감은 기본적으로 각종 수치를 집계 · 정리하여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특정한 정책적 목적이나 분석적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통계를 선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나아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재판지연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어떤 통계가 그 실태를 드러내는 핵심 지표인지, 그리고 현행 통계만으로는 무엇이 포착되지 않는지를 함께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연감은 재판과 관련된 수치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을 뿐,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를 분석 가능한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사법연감은 법원과 재판의 현황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는 가지지만, 재판지연과 같은 개별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설계하는 데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현행 사법통계는 정보의 축적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정보의 **활용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데이터 제공 방식의 한계

사법연감은 PDF 형태로 제공되고, 일부 통계 수치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엑셀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공 방식만으로는 사법통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무엇보다 사법연감에 포함된 통계의 미가공 데이터(raw data)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사법연감이 제시한 범위와 형식 안에서만 자료를 접할 수 있을 뿐, 이를 재구성하거나 재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곧 사법연감상의 수치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독자적으로 검토하거나 교차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되는 사법통계월보 및 사법연감 관련 엑셀 파일 역시 대부분 일차적으로 가공된 데이터에 해당하며, 설사 일부 미가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파일은 보호 설정이 되어 있어 내용을 복사하거나 자유롭게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결국 이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시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데이터 제공 방식은 사법통계를 활용한 정책결정은 물론 학문적 연구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법원 외부의 연구자가 사법부가 직면한 특정 쟁점에 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와 형식의 데이터를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사법통계를 통하여 법원의 현황을 진단하고 장래를 전망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적지 않게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장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국내 도입방안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서설

지금까지 재판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이 구축한 신속화법 체계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법통계가 드러내는 재판지연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일본은 재판의 장기화를 단순한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신속화법을 제정하는 한편,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 제도를 함께 운용해 왔다. 이 세 요소는 상호 독립된 개별 제도라기보다, 재판의 신속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제도적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재판의 신속성이 사법부의 강점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판 처리기간의 장기화, 장기미제 사건의 누적, 특정 사건 유형에서의 구조적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재판지연 현상은 단순한 행정적 지체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재판의 지연은 국민의 일상적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분쟁해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크고, 형사재판에서는 장기 미결구금이 피고인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법부 내부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 차원에서도 재판의 신속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 ·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행 사법통계는 재판지연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의 생산과 공개가 곧바로 정책적 평가나 제도 개선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를 우리 법제와 사법환경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인지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제도를 단순히 이식(移植)하는 접근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의 체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우리의 제도적 ·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일본 신속화법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우리나라에 어느 범위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제2절에서 검토하고, 그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를 제3절에서 살펴본다. 다시 말해, 이 장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를 먼저 가려내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를 이루는 신속화법,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의 세 요소를 각각 국내 도입의 필요성, 한계, 그리고 가능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국내 도입의 범위에 관한 검토

I. 신속화법의 도입 여부

신속화법은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출발점이자 그 상징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일본은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재판 신속화의 목적을 명시하고, 정부와 사법부 등에 그 실현을 위한 책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역시 이와 유사한 법률을 도입할 경우 재판지연 문제가 구조적 · 장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판 신속화를 국가적 과제로 명시적으로 선언한다는 입법의 상징성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입법을 통하여 재판지연 문제에 관한 책임 주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 법이 일본 국내에서 기반정비법이라 평가받는 것과 같이 사법부에 대한 인적 · 물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더욱이 앞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해당 조항은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신속화법을 제정하여 해당 헌법 조항의 법적 효력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입법 구상이 안고 있는 우려 또한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의 신속화법이 가지는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심리기간을 일률적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구체적 제도와 운영 속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져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의 규범력이 더욱 희석되어 자칫 상징적 입법(symbolic legislation)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199]

이와 같은 우려는 우리 법원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재판지연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특히 사실심을 담당하는 법관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 관한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199) 이미 제2장에서 사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심리기간을 일률적으로 한정하는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구체적 입법을 통하여 형성되어야 함을 살펴본 바 있다. 상징적 입법에 관해서는, 홍준형,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한울아카데미(2020) 참조.

왔으나, 이는 사법부 내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산, 조직, 인사정책과 결부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200]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신속화법과 유사한 법률만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조직적 역량과 인적 · 물적 기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와 효과는 쉽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재판지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입법부가 사법부와의 충분한 조율 없이 신속화법과 유사한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사법부 내외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결코 공허한 가정만은 아니다. 물론 재판 신속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문제의식 자체는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사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재판기간을 법정기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권의 사법절차 개입에는 삼권분립 원칙상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충분한 숙고 없이 이루어진 입법은 오히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일본의 신속화법을 필히 도입하는 것보다 사법부 내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지연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단 · 관리하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제도 운영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 판단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신속화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후술하는 검증검토회의 신설이나 검증보고서의 발간과 같은 방안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봄직하다고 생각된다.

II. 검증검토회 도입 여부

일본의 검증검토회는 재판 신속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통계와 사례 분

200) 이미령,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연합뉴스 (2025. 12. 9.),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9085300004 (2026. 7. 7. 최종확인); 우혜승, “법사위 국감서 ‘재판지연’ 문제 등 지적… 서울중앙지법원장 “법관 증원 절실””, 법조신문 (2024. 10. 24.),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1 (2026. 7. 7. 최종확인).

석을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제도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설치될 필요는 없고, 사법부 내부의 규칙이나 사법행정상 결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구성 ·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 산하에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두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재판지연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성 역시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고, 회의 운영 규칙이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미 우리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양형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에 관한 규칙 제정과 운영 경험도 축적되어 있는 만큼, 검증검토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일 자체는 그리 큰 제도적 장애를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치 가능성이 곧바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검증검토회가 형식적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조직, 인력, 그리고 업무체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재판 관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 ·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기간이나 지연 사유와 관련된 통계를 적시에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보아 이러한 통계의 추출과 관리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과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제4장 제4절에서 지적한 현행 사법통계 체계의 여러 한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검증검토회의 설치만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내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위원회를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기존 조직과 업무를 그러한 기구의 운영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이어지는 절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III. 검증보고서 도입 여부

검증보고서는 재판 신속화 정책의 논의 과정과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검증보고서를 통하여 재판 처리기간, 장기미제 사건의 현황, 제도 개선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드러내 왔다.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에서 실질

적 중심을 이루는 것은 법률 그 자체라기보다, 그 법률을 매개로 운영되는 검증검토회와 그 산출물인 검증보고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체계를 국내에 참조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통계 공표를 넘어 재판통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포함하는 형태의 보고서(이하, "국내 검증보고서")의 도입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별도의 입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법원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도 제도의 골격은 마련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정합성과 행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 일본과 같은 형태의 독립된 보고서를 당장 완결된 형식으로 발간하는 방안은 다소 성급할 수 있다. 별도의 검증보고서를 안정적으로 발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직적 · 인적 ·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사법연감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련 분석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통계 공표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재판 신속화에 관한 분석과 평가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나아가 우리 법원이 검증보고서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사법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스스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하여 재판지연의 실태, 그 원인에 관한 분석,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 내부에 대해서는 자기점검의 압력으로, 국민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의지의 표명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법원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면, 해당 법원으로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동시에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은 일종의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보고서 체계는 사법행정을 단순한 경험적 대응의 수준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소결

지금까지의 검토를 종합하면,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

데 국내 도입의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별도의 신속화법 제정은 그 상징성과 정책적 메시지, 그리고 기반정비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마땅히 도입해야 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반면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는 비교적 낮은 제도적 부담 아래에서도 도입 가능성이 높고, 재판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일본의 신속화법 체계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법률 그 자체보다는 검증과 분석, 그리고 공표를 중심으로 한 운영 장치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24]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

	도입의 필요성
신속화법	중간
검증검토회	높음
검증보고서	높음

제3절 국내 도입의 방안에 관한 검토

I. 개요

본 절에서는 앞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신속화법 체계 가운데 별도의 법률 제정은 도입하지 않되,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법통계 기반을 국내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II. 구체적 방안에 관한 검토

1. (가칭)재판 적정 · 신속화에 관한 검증검토회

국내에서 검증검토회의 설치를 추진한다면, 무엇보다 그 위상과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일본은 신속화법을 통하여 검증검토회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였으나, 우리는 별도의 신속화법 제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식의 제도 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는 법원행정처에 행정처장 자문기구로 하는 가칭 '재판 적정 · 신속화에 관한 검증검토회(이하 "국내 검증검토회")'를 두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201]

이와 같은 구상은 한편으로는 사법연감 등 재판통계의 내용과 형식에 관하여 지속적이고도 객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위원회를 전적으로 외부에 두거나 법원 밖 전문가의 의견만을 청취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중간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202] 아울러 이러한 모델은 일본의 검증검토회가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재판관, 검찰, 변호사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와도 기능적으로 유사

201) 유사한 예시로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떠올릴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2025. 4. 28.),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798&gubun=6 (2026. 7. 7. 최종확인).

202) 또한 이는 사법통계 담당자의 견해이기도 하다. 사법정보화실 신유정 사무관과의 인터뷰 (2025. 12. 9.).

하다.[203]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할 경우, 사법부 내부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는 분석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검증 결과에 대한 대외적 신뢰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 역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국내 검증검토회는 본질적으로 재판제도에 관한 기구이므로, 법관, 검사, 변호사, 그리고 통계학 및 법학 분야의 학계 전문가를 핵심 위원으로 두는 방안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재판의 신속화는 법원 내부 절차의 개선만으로 완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분쟁해결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시야를 갖춘 인사들의 참여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조 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익 · 인권단체, 지역 법률상담기관, 분쟁조정 관련 전문가 등 재판과 재판 외 분쟁해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다 실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나의 구상으로는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 작성에 사용되는 기초 재판 데이터를 국내 검증검토회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법정보화실을 중심으로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 · 분석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거듭 강조하듯이, 현재 우리 법원에는 재판지연 문제에 특화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할 조직적 · 인적 ·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검증보고서의 범위를 재판 신속화 관련 핵심 통계지표의 변동 추이 파악, 반복적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및 구조적 병목의 식별,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권고의 제시에 한정하고, 그 결과를 우선 사법연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후 별도 보고서 발간을 위한 토대가 축적되면, 보다 장기적인 과제 발굴과 검증의 심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검증보고서 작성 및 공표 방안

국내 검증검토회의 논의 결과는 일정한 형식의 검증보고서로 정리되어 외부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 검증보고서는 재판 신속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제시함으

203) 「재판의 신속화에 대한 검증에 관한 규칙」 제1조.

로써, 사법부 내부의 자기점검과 외부를 향한 설명책임의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여 곧바로 별도의 독립 보고서 형태를 취하는 것이 곧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떠한 형식으로 발간할 것인지는 그 내용 못지않게 별개의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2025년 기준 사법연감은 제6장에서 재판에 관한 통계를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그 장에 재판지연 문제에 관한 분석을 덧붙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사법연감과는 별도로 통계 분석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발간하는 편이 타당한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적지 않은 제약을 안고 있다. 현행 사법연감 체계에 분석 요소를 본격적으로 추가할 경우, 단순한 분량만 보더라도 통계 관련 내용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려면 조직 개편, 전문 인력의 확보, 법적 · 제도적 근거 마련,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도입 등 중장기적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분석 자체가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 사법통계 체계 아래에서 곧바로 폭넓은 재판 현상 분석과 중장기 과제의 추출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통계를 제시하는 사법연감 제6장의 일러두기 전후 등 적절한 부분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도표나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이후 제6장 제1, 2, 3절에서 사건의 개황, 추이, 현황을 소개한 후, 제4절에서 “통계 분석” 등의 제하로 앞선 절들에서 소개한 수치 통계를 재판 신속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재판절차와 제도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형식은 기존 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최소화한 채 정기적 공표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 36]과 같은 구상은 그러한 점진적 도입방식의 시작점을 잘 보여준다. 즉, 처음에는 핵심 지표와 최소한의 분석을 제시하고, 이후 점차 분석 대상과 깊이를 확장한 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본 보고서 제3장 제4절에서 소개한 일본의 검증보고서 역시 그러한 단계적 발전의 하나의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검증보고서를 사법연감과 분리된 독립적 정기보고서

로 발간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격년 발간을 기본으로 하여 단기적 변동의 추적보다 구조적 추세와 정책 효과의 평가에 방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독립 보고서에는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 분석,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 진단, 재판 신속화 정책의 성과 평가, 향후 개선 과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경로가 실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후술하듯이 사법통계팀의 인력 · 조직 · 업무에 관한 정비(본장 제4절 보론)가 병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국내 검증 검토회와 같은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토대가 형성된다면, 비로소 사법통계는 단순한 현황 자료의 집적을 넘어 현재를 진단하고 장래를 전망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법원이 직면한 여러 과제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법 서비스의 개선과 인권 및 정의의 보호라는 법원의 본질적 책무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36] 재판지연 문제 대시보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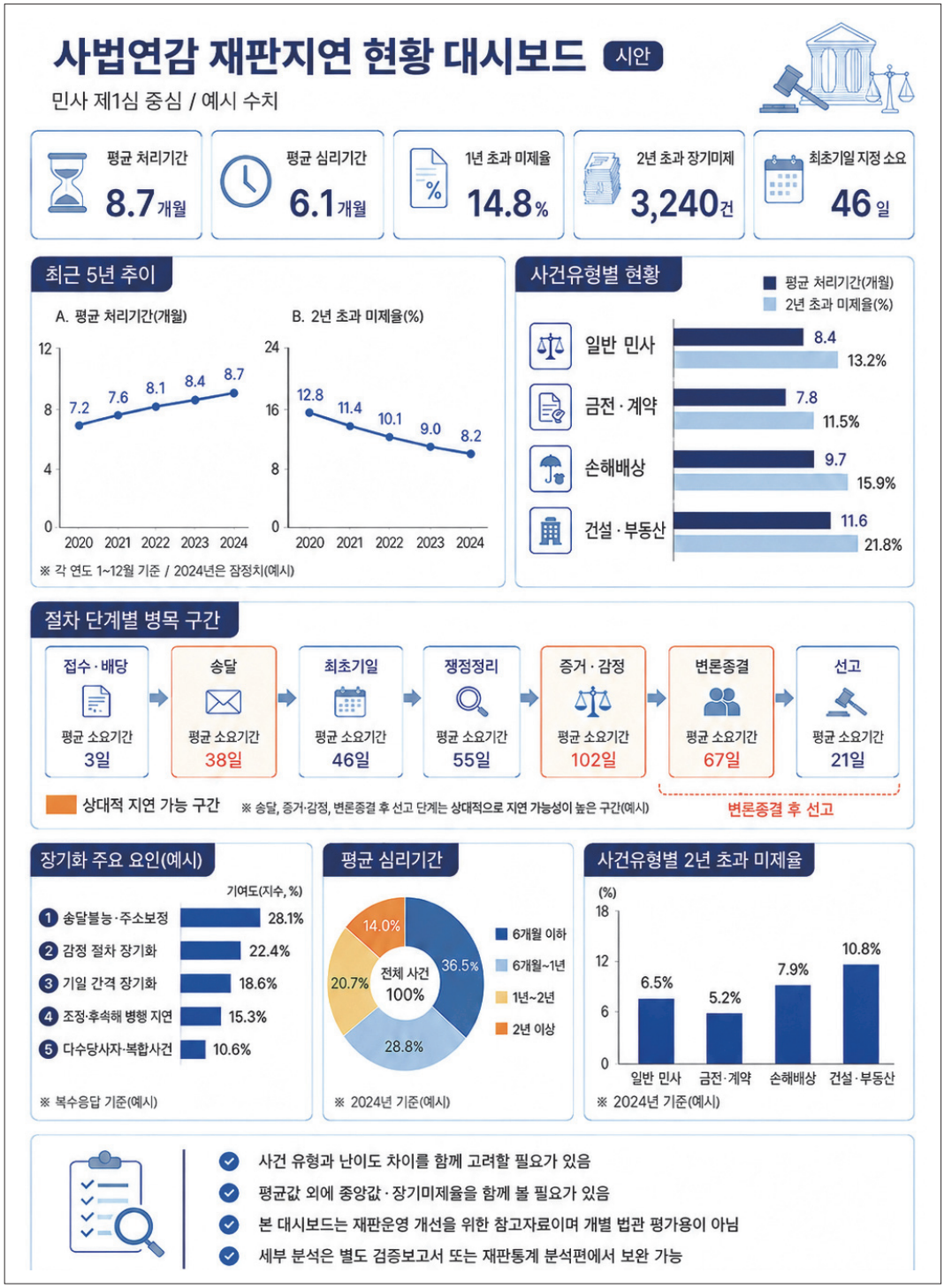

제4절 補論: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중장기적 과제와 개선방안

I. 개요

본 보고서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시도를 검토하고, 그 체계에 대한 평가와 국내 도입의 범위 및 세부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거듭 강조하듯이, 사법통계의 수집 · 정리와 사법연감을 비롯한 관련 자료의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과 업무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앞서 검토한 일본 사례를 도입하더라도 그 취지와 효과는 충분히 구현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점검은 부수적 논점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도입 논의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제에 해당한다. 다만 분량과 논지의 흐름상 이를 별도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보론의 형식으로 관련 과제와 개선방향을 덧붙이고자 한다.

II. 사법통계 업무에 관한 과제 및 개선방안

사법통계는 단순히 거시적 수치를 제시하는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수치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와 변화의 원인까지 분해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판지연과 같은 현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연 건수나 처리율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제1심 판결까지 1년이 소요된 사건이라면,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의 기간, 첫 변론기일부터 변론종결까지의 기간,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까지의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관찰하고, 각 단계별 목표치와 실제 달성 여부, 나아가 지연의 사유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204]

204) 이는 유럽평의회 산하 유럽 사법 효율성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의 '사법 시간 활용 연구 네트워크의 연구 및 분석'(Study and Analysis of Judicial Time Use

우리 법원행정처 역시 2025년 추진 중인 통계 혁신 사업에서 OLAP 기반 통계 추출의 자동화를 통하여 사법연감 및 법원통계월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I 기반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판결문에서 주요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이유 등을 추출하고, 사건 처리기간과 결과 유형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재판지연의 요인을 규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205] 이처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예컨대 증인신문 횟수, 당사자의 기일변경 신청, 감정절차의 소요기간 등 기존 통계만으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던 요소들까지 데이터화하여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법통계는 단순한 지표의 나열을 넘어, 특정 현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였는지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부하듯 드러냄으로써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의 설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더라도 그 효과를 검증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206]

III. 단순반복 작업의 자동화

앞서 본 바와 같은 분석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사법통계팀 업무에 내재한 비효율을 줄이고 그로부터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실질적인 분석 업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 등 정기 보고서의 작성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하여, 수작업 중심의 반복 업무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통계팀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수

Research Network, SATURN) 지침에 따른 것이며, 우리 사법연감은 이러한 구분에 따른 수치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5), 762면. (표 31, 민사본안사건 기일진행사건의 구간별 처리기간)

205) 이데일리, “법원, 사법 통계도 AI로 확 바꾼다…판결문 분석해 반영” (2025. 5. 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25286642168264&mediaCodeNo=257 (2026. 7. 7. 최종확인). 여기서 말하는 AI 기반 텍스트 마이닝이란, 비정형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로서 사용자 질의의 이면에 숨은 의도(Intent)를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결과를 제공한다고 한다. 해당 기술에 관한 내용은 고혁수, “미래지향적 사법 통계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보고서 2025-22 (2025), 22-23면 참조.

206) 이보연, “소송 장기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3), 60-61면.

치를 입력 · 편집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통계 분석가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동화의 목적은 단순히 업무량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보유한 전문성을 보다 본질적인 영역에 재배치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Ⅳ. 경험의 지식화, 지식의 데이터화 필요

정기적 보고서 작성 업무의 자동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원 내외부의 통계자료 요청 업무 역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특정 통계자료가 요청될 때마다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자료 추출, 문서 작성, 사후 대응이 사실상 새롭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대응을 매번 반복할 것이 아니라 통계자료 요청 업무의 노하우, 처리 기준, 문서 양식, 의사결정 과정 등을 통합된 시스템 속에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또한 필요하다.

그동안 이 영역의 업무는 상당 부분 담당자의 경험이나 구전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하고, 다시 이를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른바 경험의 지식화와 지식의 데이터화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유사 업무의 반복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사법통계 조직의 대응 역량 역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일본 신속화법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 법률 제정은 배제하고 행정적 · 제도적 수단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도입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별도의 신속화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법원 차원의 정책목표 설정과 사법행정적 관리 체계를 통해 재판 신속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는 비교적 낮은 제도적 부담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며, 재판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균형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향후 제도적 보완이나 추가적 입법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도 남긴다.

결국 재판의 신속화는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본 장에서 제시한 방안은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우리 사법제도가 재판 신속성과 공정성을 함께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5] 신속화법 체계 국내 도입의 예상 타임라인(2026-2033)

<table>
<tr><th></th><th>2026</th><th>2027</th><th>2028</th><th>2029</th><th>2030</th><th>2031</th><th>2033</th></tr>
<tr><td>제도적 기반 마련</td><td>국내 검증 검토회 설치</td><td colspan="2">사법정보화실과의 연계 및 관련 인적·조직적 기반 마련</td><td>통계 분석 전문팀 창설</td><td></td><td></td><td rowspan="4">중간평가</td></tr>
<tr><td>검증 검토회 구성 및 운영</td><td></td><td>1~5회</td><td>6~11회</td><td>12~17회</td><td>18~23회</td><td>24~29회</td></tr>
<tr><td>사법연감 통합</td><td></td><td colspan="2">6장에서 대시보드 이미지 삽입</td><td colspan="2">6장 말미에 분석절(節) 추가</td><td>별도 검증 보고서 발간</td></tr>
<tr><td>통계 업무에의 AI 기술 도입</td><td></td><td colspan="4">자동화 기술 개발·도입</td><td></td></tr>
</table>

제6장

결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재판지연 문제를 개념적으로 해체하여 그 속에 내재된 가치의 문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논지는 재판지연 문제는 단순히 그것이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한 재판을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그러한 노력이 자칫 적정한 재판을 내세워야 하는 법원의 임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즉 재판은 신속성과 적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절대화할 수 없다. 여기에 비용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서 재판지연 문제는 신속성, 적정성, 비용이 상충하는 삼각난제의 구조를 형성한다. 충분한 법관의 증원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만,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재판지연 문제를 단순한 기간의 설정과 그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로 파악해야 하며, 그에 터 잡으면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의 핵심 수단이 바로 **사법통계**이다. 사건의 유형, 처리기간, 지연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지 않고서는 재판지연의 실태를 진단하거나 개선 효과를 제시 및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제도의 단편적 개편이 아니라, 사법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고 점증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위와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신속화법 체계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의 평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민사재판 제1심을 가능한 한 2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는 신속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검증검토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년마다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가 특징적인 부분은 단순히 현대 사회에서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그 내용이 복잡

화 ·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분쟁 자체가 법원의 문턱을 넘기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재판은 물론 그 외의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사회적 인식조사를 비롯한 논의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판지연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관련 수치를 나열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수치 이면에 놓인 배경적 요인들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가장 두드러진 함의라 사료된다. 이에 터 잡아,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전제로, 국내 사법통계 체계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관련 제도 및 조직이 가지는 내재적인 한계를 조명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전면적 도입을 곧바로 주장하기보다는, 그 도입의 전제가 되는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정비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를 중심으로, 현행 사법통계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제도 · 조직이 지닌 내재적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행정처에 가칭 **재판 적정 · 신속화에 관한 검증검토회**를 설치하고, 그 논의 결과를 국내 검증보고서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사법연감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사법연감에 재판지연 관련 분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작하고, 관련 조직 · 인력 · 제도적 기반이 점차 확충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이를 별도의 독립 보고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재판지연 문제가 우리 법원은 물론,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것이 바로 본 보고서가 해당 문제를 다루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함의는 재판지연이라는 특정 문제의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히려 본 연구는 우리 법원이 어려운 정책결정이나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사안에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여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하는가에 관하여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핵심은 바람직한 사법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법경제학을 위시로 하여, 전통적으로 규범과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법학에서도 사회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학에서의 사회과학적 접근은 아직 충분한 깊이와 폭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결국 충분한 자료의 공개와 정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재판지연이라는 특정 문제를 다루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사법통계 체계의 기반조성을 통하여 향후 이를 활용한 학문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까지 그 함의를 기대한다. 일본의 검증검토회 좌장인 야마모토 교수가 지적하듯이, 일본 신속화법의 체계는 재판과 사법에 관한 통계 기반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증거기반 정책설계 및 운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25년 12월 9일부터 12일 동안 개최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 및 관점이 제시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통계가 그 근거가 되곤 하는데, 바로 그 근거에 착시가 존재한다면, 올바른 현황의 진단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은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지연은 물론 사법부가 마주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적절한 통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도 강조되었다.[207] 또한 신속한 재판은 꾸준히 추진해야할 지속적 과제로서 공청회의 다른 주제가

207) 공두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자료집 (2025), 78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필 필요 있다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208]

다만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분석과 그 국내 수용 가능성을 하나의 주요 쟁점으로 삼았음에도, 실제로 이를 관장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내부의 세부 지침이나 구체적 운영 관행까지는 충분히 검토 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실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대목이다. 향후 우리 사회와 사법부에서 일본 신속화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국내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바로 이 지점은 후속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는다.

208) 기우종,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자료집 (2025), 71면.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홍준형,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한울아카데미 (2020).

한인섭, 일본의 재판원제도, SNU일본연구총서 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논문】

가재환, “소송지연의 해소책”, 사법연구자료 5집 (1978).

공진성,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기본법상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독일 입법례와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116권 (2025).

김기원, “‘정치적 사건’의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제도 개선”, 법치와 자유 제1권 제11호 (2024).

김두얼 · 정필문, “법원 업무의 현황과 과제”, 법경제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4).

김성규, “형사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와 그 시사점”,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2024).

김주상, “소송지연의 방지책”, 사법논집 20집 (1989).

김중권,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47권 제2호 (2018).

문영화, “유럽인권협약상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을 위한 ‘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 (CEPEJ)’의 활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2023).

박용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이론과 실무 – 미국법상 동 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2024).

손인혁,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재판부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40권 제3호 (2024).

이병용, “소송지연과 신속한 재판”, 사법행정 20권 12호 (1979).

이보연, “소송 장기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3).

이원석,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의 특성”, 질적연구 제21권 제2호 (2020).

정영지, “형사재판에서 법적 판단의 시간성에 대한 소고”, 법조 제74권 제4호 (2025).

정한중,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소송법적 구제 방안 – 대법원 2021도16798 사건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2022).

조상희, “사법행정가로서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일감법학 제27호 (2014).

조수혜, “민사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안암법학 제43권 (2014).

_____, “민간형 온라인분쟁해결(ODR)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 중앙법학 제26권 제3호 (2024).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 규범학(Ⅰ)”,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채수인, “소송지연에 관한 통계상의 고찰”, 법정 제23권 제4호 (1968).
이철우,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2006).
하태훈,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법치국가이념”, 안암법학 제7권 (1998).
한상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
홍명성, “소송지연의 원인과 대책”, 사법행정 제12권 제11호 (1971).

【보고서】

고혁수, 미래지향적 사법 통계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용역 보고서 (2025).
공두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자료집 (2025).
기우종,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자료집 (2025).
김두얼 · 유형웅,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박진영,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7. 23.).
배병일, 재판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방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7).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4).
이용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법원의 재판지연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 10. 17.).
이정현 · 조진용, 각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방안, 외국사법제도연구 제35권, 사법정책연구원 (2024).
_____, 일본 사법제도 연구반 출장 결과 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2024. 12.).
이화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4. 12.).
임기영,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 2021-B-3 (2021).
전휴재,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용역 보고서 (2023).
홍보람,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2. 14.).
홍보람 · 류미리, 직무상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2024. 10.).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5).
_____, 2024 사법연감 (2024).
_____, 2023 사법연감 (2023).

【기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2042490 판결.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4헌마9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전원재판부 결정.

강민우 · 박준형, “과학으로 접근하는 美 법 · 규제로 옭아매는 韓”, 매일경제 (2024. 11. 29.).
공성윤, “판사들 쥐어짜도 안 나올 재판 지연 해결책, 여기 다 있습니다”, 시사저널 (2024. 5. 8.).
김용섭,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법률신문 (2022. 8. 15.).
김자현, “‘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 … “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 동아일보 (2023. 8. 24.).
대한민국 법원, “2025 사법연감 발간”, 보도자료 (2025. 9. 23.).
박미영, “‘재판 신속화’ 일본사법제도 벤치마킹해야”, 법률신문 (2020. 12. 21.).
방극렬, “민사 1심에 평균 437일… ‘지연된 정의’가 국민들 분노 불렀다”, 조선일보 (2025. 1. 25.).
법률신문, “일본의 전자소송제도” (2022. 8. 15.).
신원일,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 법률신문 (2010. 6. 14.).
심우삼, “나경원 1심만 6년째 … “국힘, 야당 재판지연 비판할 자격 있나””, 한겨레 (2025. 1. 15.).
아시아투데이, “재판 지연 방지 위해 국회도 적극 입법에 나서야” (2023. 8. 24.).
연합뉴스, “올해 80명 늘어난 법관 하급심 집중배치 … 재판지연 개선될까” (2026. 2. 13.).
우혜승, “법사위 국감서 ‘재판지연’ 문제 등 지적… 서울중앙지법원장 “법관 증원 절실””, 법조신문 (2024. 10. 24.).
윤지원 · 김나연, “윤석열 ‘재판 지연 작전’ 펼치나”, 경향신문 (2025. 1. 26.).
이근아, ““의료 감정 때문에 하세월”… 대법원, 재판 지연 해소 획기적 대책 내놓는다”, 한국일보 (2025. 2. 18.).
이데일리, “법원, 사법 통계도 AI로 확 바꾼다 … 판결문 분석해 반영” (2025. 5. 12.).
이미령,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연합뉴스 (2025. 12. 9.).
이보라, “3년째 재판 지연…애끓는 해고 노동자는 생계 잃고 암까지 걸려”, 경향신문 (2024. 3. 5.).
이재홍, “재판지연 해결을 위한 노력들”, 법률신문 (2024. 2. 1.).
이종민, “얽히고설킨 재판 지연 … “법관증원 · 상고제 개선으로 풀어야””, 세계일보 (2023. 9. 27.).
조선일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지연 해소 위해 AI 활용할 것”” (2024. 1. 16.).
중앙일보, “말로는 “신속한 재판” 이재명 대표, 행동으론 지연 꼼수” (2025. 2. 6.).

차기현, “일본 ‘재판신속화’의 실질은 항소심 기간 단축”, 법률신문 (2023. 9. 24.).
황윤기 · 한주홍, “1심만 39회 윤미향 재판 4년여만에 끝 … ‘지연된 정의’ 비판도”, 연합뉴스 (2024. 11. 14.).
MBN, “4년 만에 2배 늘어난 ‘재판 지연’… 일본 신속화법 벤치마킹하나” (2023. 8. 27.).

2. 외국문헌

【단행본】

Patricia Ewick & Susan S. Silbey, *The Common Place of Law: Stories from Everyday 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佐藤岩夫 · 菅原郁夫 · 山本和彦, 利用者からみた民事訴訟—司法制度改革審議会「民事訴訟利用者調査」の2次分析—, 日本評論社 (2006).
佐藤幸治, 司法制度改革, 有斐閣 (2002).
山本和彦, 民事裁判手続のIT化, 弘文堂 (2023).
松永邦男, 司法制度改革概説(1):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裁判の迅速化に關する法律, 商事法務 (2004).
民事訴訟制度研究会, 手続利用者から見た民事訴訟の実際—2021年民事訴訟利用者調査—, 商事法務 (2023).
羽渕清司, 迅速な裁判/裁判の公開, 信山社 (2007).
荒木伸怡, 迅速な裁判を受ける権利, 成文堂 (1993).

【논문】

Naomi Mezey, “Out of the Ordinary: Law, Power, Culture, and the Commonplace”, *Law & Social Inquiry* 26 (2001).
Tom R. Tyler, “The Quality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Outcomes: Measurement Problems and Possibilities”, 419 *Denver Law Review* (1989).

原田和往, “迅速裁判条項の保護利益に関する判例法理の２つの潮流”, 岡山大学法学会雑誌 第62巻 第4号 (2013).
大塚浩之 · 佐々木健二 · 高橋宏志 · 中尾正信 · 山本和彦, “社会の中における司法の在り方を見据えて(上), 論究ジュリスト 7号 (2013).
山本和彦,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その意義と課題 · 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33巻 (2024).
山本和彦 · 加藤新太郎 · 菅原郁夫 · 二宮照興, “2006年民事訴訟利用者調査の分析”, ジュリスト 1348号 (2008).
山本和彦 · 岡崎克彦 · 垣内秀介 · 菅原郁夫 · 髙橋司, “2016年民事訴訟利用者調査の分析”, 論究

ジュリスト 28号 (2019).
山本和彦・川山泰弘・榎本光宏・相澤眞木・中尾正信, “裁判迅速化検証の20年とデジタル世代につなぐ理念—民事訴訟を中心に—”, 判例タイムズ No.1517 (2024. 4.).
島本吉規, “専門訴訟における第1新裁判官の苦悩—ドイツの場合—”, 判例タイムズ 1426号 9号 (2016).
平岡敦, “裁判IT化最前線実務はどう変わるか？[前編]”, NIBEN 5号 (2023).
時武英男, “被告人の迅速な裁判をうける権利—高田事件上告審判決(最判昭和47. 12. 20.)”, 判例時報, 700号 (1973).
杉山悦子, “新型コロナにより顕在化した民事訴訟の課題”, 法学セミナー 通巻 791号 (2020. 12.).
桃崎剛, “医療訴訟の審理運営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1505号 (2023).
横山晃一郎, “長期裁判としてのメーデー裁判: その原因と対策への試論”, 判例タイムズ 287号 (1973).
竹下慶, “イギリスにおける民事訴訟制度改善策の紹介—適正かつ迅速な手続実現のために”, 判例タイムズ 1422号 (2016).
笹倉香奈, “迅速な裁判の要請,” 刑事弁護 93号 (2018).
谷川葉純, “イギリス個別労働紛争処理における調整的解決と判定的解決の連携: ACAS早期あっせんによる調整的解決の意義”, 季刊労働法289号 (2025).
鈴木秀幸, “民事裁判遅延の現状とその改善”, 自由と正義40巻 8号 (1989).

【보고서】

司法制度改革審議会, 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 —21 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 (2001. 6. 12.).
_____, 「民事訴訟利用者調査」 報告書 (2000).

日本弁護士連合会, 最高裁判所 第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05. 10. 18.).
_____, 最高裁判所 第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07. 9. 13.).
_____, 最高裁判所 第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09. 9. 17.).
_____, 最高裁判所 第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11. 9. 16.).
_____, 最高裁判所 第5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13. 9. 13.).

_____, 最高裁判所 第6回「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15. 9. 10.).
_____, 最高裁判所 第7回「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17. 10. 18.).
_____, 最高裁判所 第8回「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19. 10. 15.).
_____, 最高裁判所 第9回「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21. 10. 20.).
_____, 最高裁判所 第10回「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24. 2. 16.).
_____, 最高裁判所 第11回「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意見書 (2025. 12. 18.).
_____,「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の成立にあたって (2003. 7. 9.).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05. 7.).
_____, 第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07. 7.).
_____, 第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09. 7.).
_____, 第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11. 7.).
_____, 第5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13. 7.).
_____, 第6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15. 7.).
_____, 第7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17. 7.).
_____, 第8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19. 7.).
_____, 第9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21. 7.).
_____, 第10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23. 7.).
_____, 第1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2025. 7.).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第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2003. 12.).
_____, 第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2004. 1.).
_____, 第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2004. 1.).
_____, 第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2004. 2.).
_____, 第5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2004. 10.).
_____, 第6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2004. 11.).
_____, 第7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2004. 12.).
_____, 第8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 (2005. 1.).

_____, 第9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5．2.）.
_____, 第10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5．5.）.
_____, 第1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5．7.）.
_____, 第1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5．11.）.
_____, 第1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6．2.）.
_____, 第1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6．3.）.
_____, 第15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6．7.）.
_____, 第16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6．10.）.
_____, 第17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6．12.）.
_____, 第18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7．1.）.
_____, 第19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7．4.）.
_____, 第20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7．5.）.
_____, 第2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7．7.）.
_____, 第2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7．11.）.
_____, 第2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8．2.）.
_____, 第2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8．3.）.
_____, 第25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8．7.）.
_____, 第26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8．11.）.
_____, 第27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9．1.）.
_____, 第28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9．2.）.
_____, 第29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9．3.）.
_____, 第30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9．5.）.
_____, 第3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9．7.）.
_____, 第3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09．10.）.
_____, 第3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0．1.）.
_____, 第3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0．3.）.
_____, 第35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0．6.）.
_____, 第36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0．7.）.
_____, 第37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0．9.）.
_____, 第38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0．11.）.
_____, 第39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1．2.）.
_____, 第40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1．5.）.
_____, 第4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1．7.）.

_____, 第4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1．10.）.
_____, 第4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2．1.）.
_____, 第4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2．3.）.
_____, 第45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2．6.）.
_____, 第46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2．9.）.
_____, 第47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2．10.）.
_____, 第48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2．11.）.
_____, 第49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3．2.）.
_____, 第50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3．5.）.
_____, 第5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3．9.）.
_____, 第5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4．7.）.
_____, 第5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5．2.）.
_____, 第5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5．5.）.
_____, 第55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5．9.）.
_____, 第56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6．7.）.
_____, 第57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7．2.）.
_____, 第58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7．5.）.
_____, 第59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7．10.）.
_____, 第60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8．7.）.
_____, 第6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9．2.）.
_____, 第6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9．5.）.
_____, 第6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19．9.）.
_____, 第6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1．3.）.
_____, 第65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1．5.）.
_____, 第66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1．10.）.
_____, 第67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2．7.）.
_____, 第68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3．2.）.
_____, 第69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3．5.）.
_____, 第70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3．10.）.
_____, 第71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4．7.）.
_____, 第72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5．1.）.
_____, 第73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5．5.）.
_____, 第74回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2025．10.）.

法務省, 裁判の迅速化法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2014. 6. 27.).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 第1回 顧問会議 (2002. 1.).
_____, 第2回 顧問会議 (2002. 2.).
_____, 第3回 顧問会議 (2002. 3.).
_____, 第4回 顧問会議 (2002. 5.).
_____, 第5回 顧問会議 (2002. 7.).
_____, 第6回 顧問会議 (2002. 10.).
_____, 第7回 顧問会議 (2002. 11.).
_____, 第8回 顧問会議 (2002. 12.).
_____, 第9回 顧問会議 (2003. 2.).
_____, 第10回 顧問会議 (2003. 4.).
_____, 第11回 顧問会議 (2003. 7.).
_____, 第12回 顧問会議 (2003. 7.).
_____, 第13回 顧問会議 (2003. 9.).
_____, 第14回 顧問会議 (2003. 12.).
_____, 第15回 顧問会議 (2004. 1.).
_____, 第16回 顧問会議 (2004. 2.).
_____, 第17回 顧問会議 (2004. 9.).
_____, 第18回 顧問会議 (2004. 11.).

【기타】

最判 昭和23年12月22日 昭和23年(れ)第1071号.
最判 昭和48年7月20日 刑集27巻7号1322頁.
最判 昭和49年5月31日 判時745号104頁.
最判 昭和55年2月7日 昭和53(あ)1654.

最高裁判所, 裁判所データブック 2025 (2025).

[별첨 1] 2025 사법연감 목차

제 1 장	2024년 사법부의 발자취		Ⅰ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1	신속한 재판을 위한 여건 마련
				2	감정제도 개선
				3	충실한 민사재판 구현
				4	형사재판 절차 개선
				5	범죄피해자의 보호
				6	가사·보호재판제도 개선
				7	도산재판제도 개선
				8	행정재판 제도개선 및 전문성 강화
				9	특허재판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화
			Ⅱ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1	판결서 공개 확대
				2	재판중계 실시
				3	윤리감사 기능의 강화
				4	전관예우 등 재판의 공정성 의혹 방지를 위한 노력
			Ⅲ	재판 중심의 독립적인 법원	
				1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제도 개편
				2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
				3	공정하고 내실 있는 법관임용절차
				4	시니어판사 제도 추진
				5	사법연수원 법관 및 비법관 연수제도 개선
				6	재판역량 강화를 위한 재판연구원 운용
				7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Ⅳ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	
				1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 확대
				2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
				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4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5	법률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위한 법원도서관의 활동
				6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 정보 보호
				7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table>
<tr><td rowspan="19"></td><td rowspan="19"></td><td rowspan="19"></td><td rowspan="6">Ⅴ</td><td colspan="2">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법원</td></tr>
<tr><td>1</td><td>행복한 법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td></tr>
<tr><td>2</td><td>사법질서 보호</td></tr>
<tr><td>3</td><td>법원 구성원 사이의 소통 강화</td></tr>
<tr><td>4</td><td>사법시설 확충 등</td></tr>
<tr><td>5</td><td>쾌적하고 편리한 도서실 환경 개선</td></tr>
<tr><td rowspan="7">Ⅵ</td><td colspan="2">미래를 준비하는 법원</td></tr>
<tr><td>1</td><td>사법정보화의 지속 추진</td></tr>
<tr><td>2</td><td>등기시스템 관련 주요 추진 과제</td></tr>
<tr><td>3</td><td>통일을 준비하는 사법</td></tr>
<tr><td>4</td><td>사법부의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td></tr>
<tr><td>5</td><td>사법정책연구원의 활동</td></tr>
<tr><td>6</td><td>사법연수원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 지원</td></tr>
<tr><td rowspan="4">Ⅶ</td><td colspan="2">양형위원회 주요 활동</td></tr>
<tr><td>1</td><td>양형기준 설정·수정</td></tr>
<tr><td>2</td><td>양형정책 연구·심의</td></tr>
<tr><td>3</td><td>향후 계획</td></tr>
<tr><td rowspan="19">제
2
장</td><td rowspan="19">법원</td><td>제1절</td><td colspan="3">연혁</td></tr>
<tr><td rowspan="4">제2절</td><td colspan="3">조직</td></tr>
<tr><td>제1항</td><td colspan="2">법원의 설치</td></tr>
<tr><td rowspan="3">제2항</td><td colspan="2">법원의 구성</td></tr>
<tr><td>1</td><td>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구성</td></tr>
<tr><td>2</td><td>인적 구성</td></tr>
<tr><td rowspan="5">제3절</td><td colspan="3">법원의 권한</td></tr>
<tr><td>제1항</td><td colspan="2">심판과 기타 업무에 관한 권한</td></tr>
<tr><td>제2항</td><td colspan="2">명령·규칙·처분의 심사권</td></tr>
<tr><td>제3항</td><td colspan="2">위헌법률심판제청권</td></tr>
<tr><td>제4항</td><td colspan="2">규칙제정권</td></tr>
<tr><td rowspan="3">제4절</td><td colspan="3">법원기 및 휘장</td></tr>
<tr><td>제1항</td><td colspan="2">법원기</td></tr>
<tr><td>제2항</td><td colspan="2">휘장</td></tr>
</table>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기관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및 지원
				5	가정법원 및 지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8	시·군법원
				9	전문재판부의 운영
		제2절	제1항	사물관할	
			제2항	심급관할	
			제3항	토지관할	
		제3절	관장사건		
		제4절	재판의 운용		
			제1항	사건의 접수	
				1	접수담당자
				2	접수창구
				3	접수절차
				4	접수보류절차
			제2항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1	법관의 사무분담
				2	사건의 배당
			제3항	재판의 심리	
				1	사건의 처리과정
				2	재판의 공개
				3	신속하고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한 노력
				4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노력
				5	대법원에서의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 실시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제4항	재판의 합의	
				1	합의체의 구성

				2	합의체 구성원의 권한
				3	합의의 방법
			제5항	법정	
				1	법정의 설치
				2	법정의 구조
				3	영상재판에서의 법정
				4	법복
				5	법정질서
				6	법원경위
				7	법원보안관리대
			제6항	조정	
				1	민사조정
				2	가사조정
				3	노동전문조정
				4	조정위원
			제7항	재판연구관 · 재판연구원 · 조사관 및 기술심리관	
				1	재판연구관
				2	재판연구원
				3	조사관
				4	기술심리관
제 4 장	사법행정 제도	제1절	대법원		
			제1항	대법원장	
			제2항	대법관회의	
				1	설치
				2	조직
				3	의결사항
				4	운영방법
			제3항	대법원장비서실 등	
			제4항	각종 위원회	
				1	법참여기획단
				2	법관인사위원회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4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5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6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
				7	법관징계위원회
				8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9	법원 감사위원회
				10	양형위원회
				11	판례심사위원회
				12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절	법원행정처		
			제1항	조직	
			제2항	관장사무	
				1	인사
				2	예산 · 회계
				3	법원통계
				4	기록과 부책의 보존
				5	등기
				6	가족관계등록
				7	후견등기
				8	공탁
				9	공증사무
				10	집행관
				11	법무사
				12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13	공무직 인사노무관리 및 단체교섭
			제3항	사법정보화	
				1	개요
				2	연혁
				3	운영실태
			제4항	사법정책연구 및 주요행사	
				1	사법정책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
				2	국제사법교류 및 사법공조

				3	전자소송의 확대 시행
				4	영상재판의 정착
				5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
				6	주요행사
				각종 위원회	
				1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
				2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3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4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5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6	국제규범연구위원회
				7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8	제안심사위원회
				9	전문직위 운영위원회
				10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11	대법원예산집행심의회
				12	예산결산협의회
				13	예산안심의위원회
				14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15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제5항	16	회생·파산위원회
				17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18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19	양성평등심의위원회
				20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2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22	근무성적평정위원회
				23	성과급심사위원회
				24	근무실적평가위원회
				25	시보공무원심사위원회
				26	공무직 근로자등 운영위원회
				27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28	근속연수연장 심사위원회
				29	법원·등기사무관 특별승진 1차 추천위원회
				30	대법원청사관리위원회
				31	법원행정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2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

				33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34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
				35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
				36	공탁금관리위원회
				37	사법등기심의위원회
				3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39	코트넷 운영위원회
				40	홈페이지 평가위원회
				41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42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
				43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
				44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45	법원행정처 민원조정위원회
				46	법원행정처 청원심의회
				47	해외연수선발위원회
				48	법원행정처 공적심사위원회
				49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50	명예퇴직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51	직위 운영 심사위원회
				52	고등·보통징계위원회
				53	소청심사위원회
				54	중앙고충심사위원회
				55	청원경찰징계위원회
				56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절	사법연수원		
			제1항	설치	
			제2항	조직	
			제3항	관장사무	
				1	사법연수생 수습
				2	판사 연수
				3	비법관 연수
				4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지원
				5	국제사법협력업무
				6	실무지침서 발간
				7	법교육

		제4절	사법정책연구원		
			제1항	설치	
			제2항	조직	
			제3항	관장사무	
				1	정책연구
				2	교류 및 협력
		제5절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항	설치	
			제2항	조직	
			제3항	관장사무	
				1	교육계획 및 시행
				2	교육방법
				3	교육평가
		제6절	법원도서관		
			제1항	설치	
			제2항	조직	
			제3항	운영	
			제4항	판례편찬	
				1	판례심사위원회의 구성
				2	심사절차
				3	기타
		제7절	각급 법원		
			제1항	고등법원	
				1	조직
				2	관장사무
				3	판사회의
			제2항	특허법원	
				1	조직
				2	관장사무
				3	판사회의
			제3항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회생법원(지원, 가정지원, 시 · 군법원, 등기소 포함)	
				1	조직

				2	관장사무
				3	판사회의
		제8절	전국법원장회의 ·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항	전국법원장회의	
				1	설치
				2	조직
				3	기능
			제2항	전국법관대표회의	
				1	설치
				2	조직
				3	기능
		제9절	사법정책자문회의		
				1	출범 배경
				2	조직
				3	기능
제 5 장	사법행정 운영	제1절	대법원		
			제1항	대법원장 연설	
				1	신년사
				2	시무식
				3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발간 기념식
				4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학술대회
				5	전국법관대표회의
				6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7	서울고등법원 격려 방문
				8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9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10	제10회 법원의 날
				11	신임법관 임명식
				12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13	제11회 IOJT 국제 콘퍼런스
				14	제12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
				15	제10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16	전국법원장회의
				17	법조봉사대상
			제2항	대법원장 접견 외국인사	
			제3항	대법관회의	
			제4항	법관 및 직원의 해외파견	
			제5항	감사	
				1	법원의 감사
				2	국정감사
			제6항	각종 위원회의 심의내용	
		제2절	법원행정처		
			제1항	기구의 신설 · 폐지	
			제2항	인사	
				1	증원 현황
				2	인원 현황
				3	인사이동
				4	포상
				5	보수
				6	각종 시험
			제3항	예산회계	
				1	일반회계
				2	등기특별회계
				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제4항	사법관계법령, 대법원규칙 · 내규 · 예규	
			제5항	제안제도 운영	
				1	개요
				2	현황
			제6항	사법정보화	
				1	2024년도 사법업무전산화 현황
				2	전산장비 현황
				3	사법 전상망 현황
				4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외국법관 등 방문현황
			제7항	시설 및 중요장비	
				1	사법시설 조성

				2	전국 법원·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
				3	중요장비
			제8항	각종자료 발간 현황	
			제9항	대법원판결 보존	
			제10항	가족관계등록	
				1	주요업무
				2	가족관계등록
				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4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정리
				5	집행관
			제11항	부동산등기	
				1	주요업무
				2	법무사
			제12항	공탁·법인등기	
				1	주요업무
			제13항	홍보	
				1	법원 및 사법정책 홍보
				2	법원회보 및 법원공보 발간
			제14항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1	민원 처리
				2	진정·청원
				3	정보공개
			제15항	안전관리	
				1	비상대비업무
				2	비상대비계획 수립
				3	국가 중요시설 점검 수검(비상계획담당)
				4	비상대비 교육·훈련
				5	예비군 편성 및 관리, 교육훈련
				6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교육훈련
			제16항	보안관리대	
				1	법정보안 장비(X-ray 소형화물투시기) 설치
				2	청사출입통제시스템(시피드게이트) 설치

				3	전국법원 출입자 전면검색 단계적 확대 실시
				4	법원 보안강화 및 출입체계 개선
				5	대법원장 공관경비업무 인수 및 운영
				6	보안관리대원 직무교육
				7	사법부 응급처치 능력 배양
				8	전국 법원 노후 종합상황실 개선
				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제17항	각종 회의	
			제18항	각종 위원회 심의내용	
		제3절	사법연수원		
			제1항	사법연수생의 수습 및 법관의 연수 등	
			제2항	책자 및 자료집 발간 현황	
			제3항	국제사법협력 업무 현황	
			제4항	기타	
		4절	사법정책연구원		
			제1항	정책연구	
			제2항	교류 및 협력	
			제3항	주요연구성과	
				1	연구 수행시스템 확립
				2	연구성과
				3	외부 소통
		5절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항	법원직원 및 집행관 교육 현황	
			제2항	교육제도 개선	
				1	교육과정 신설 등
				2	교육운영 및 환경 개선
			제3항	기타	
		제6절	법원도서관		
			제1항	법원사전시설 운영 및 법원사 자료의 수집·관리	
				1	법원사자료 활동(전시 등)
				2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
				3	기타

			제2항	법마루 · 대법원열람실 운영	
				1	법마루
				2	대법원열람실
			제3항	종합법률정보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제4항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및 사법영상 자료 서비스 (법원TV, MCMS) 고도화	
				1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2	사법영상자료 서비스 고도화 사업
				3	신규 전자책, 오디오북 서비스 개시
				4	온라인 법고을 서비스 개시
			제5항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추진단	
				1	사업명
				2	사업 배경
				3	사업 효과
				4	사업 진행 현황
			제6항	종합법률정보제공센터 및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제7항	도서현황	
			제8항	각종자료 발간 현황	
			제9항	기타	
			제10항	각종 행사	
				1	전국도서관대회 참가
				2	제11회 전국법원 예술대전
		제7절	각급 법원		
			제1항	고등법원 · 특허법원	
				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명 · 승진 · 퇴직 현황
				2	각종 시험 실시 현황
				3	감사 현황
				4	표창 현황
				5	각종 자료 발간 현황
				6	재판문서 등의 보존 현황
			제2항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회생법원	
				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명 · 승진 · 퇴직 현황

<table>
<tr><td rowspan="15"></td><td rowspan="15"></td><td rowspan="7"></td><td rowspan="7"></td><td>2</td><td>각종 시험 실시 현황</td></tr>
<tr><td>3</td><td>감사 현황</td></tr>
<tr><td>4</td><td>표창 현황</td></tr>
<tr><td>5</td><td>각종 자료 발간 현황</td></tr>
<tr><td>6</td><td>재판문서 등의 보존 현황</td></tr>
<tr><td>7</td><td>각종 등기부 및 신청서 보존 현황</td></tr>
<tr><td rowspan="8">8절</td><td colspan="2">전국법원장회의 · 전국법관대표회의</td></tr>
<tr><td rowspan="4">제1항</td><td colspan="2">전국법원장회의</td></tr>
<tr><td>1</td><td>개요</td></tr>
<tr><td>2</td><td>3월 간담회</td></tr>
<tr><td>3</td><td>12월 정기회의</td></tr>
<tr><td rowspan="4">제2항</td><td colspan="2">전국법관대표회의</td></tr>
<tr><td>1</td><td>개요</td></tr>
<tr><td>2</td><td>상반기 정기회의</td></tr>
<tr><td>3</td><td>하반기 정기회의</td></tr>
<tr><td rowspan="5">9절</td><td colspan="2">사법정책자문위원회</td></tr>
<tr><td></td><td>1</td><td>개요</td></tr>
<tr><td></td><td>2</td><td>구성</td></tr>
<tr><td></td><td>3</td><td>전문위원(연구반)의 구성</td></tr>
<tr><td></td><td>4</td><td>회의</td></tr>
<tr><td rowspan="12">제
6
장</td><td rowspan="12">통계</td><td rowspan="12">제1절</td><td colspan="2">사건의 개황</td></tr>
<tr><td>제1항</td><td>총설</td></tr>
<tr><td>제2항</td><td>민사</td></tr>
<tr><td>제3항</td><td>가사</td></tr>
<tr><td>제4항</td><td>행정</td></tr>
<tr><td>제5항</td><td>지식재산</td></tr>
<tr><td>제6항</td><td>선거</td></tr>
<tr><td>제7항</td><td>형사</td></tr>
<tr><td>제8항</td><td>소년보호</td></tr>
<tr><td>제9항</td><td>가정보호</td></tr>
<tr><td>제10항</td><td>비송</td></tr>
<tr><td>제11항</td><td>감치 · 과태료</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5"></td><td rowspan="25"></td><td rowspan="11">제2절</td><td colspan="2">사건의 추이(누년 비교)</td></tr>
<tr><td>제1항</td><td>전체사건</td></tr>
<tr><td>제2항</td><td>민사</td></tr>
<tr><td>제3항</td><td>가사</td></tr>
<tr><td>제4항</td><td>행정</td></tr>
<tr><td>제5항</td><td>지식재산 · 선거</td></tr>
<tr><td>제6항</td><td>형사</td></tr>
<tr><td>제7항</td><td>소년보호</td></tr>
<tr><td>제8항</td><td>가정보호</td></tr>
<tr><td>제9항</td><td>기타</td></tr>
<tr><td rowspan="14">제3절</td><td colspan="2">사건의 현황(세별표)</td></tr>
<tr><td>제1항</td><td>민사</td></tr>
<tr><td>제2항</td><td>가사</td></tr>
<tr><td>제3항</td><td>행정</td></tr>
<tr><td>제4항</td><td>지식재산 · 선거</td></tr>
<tr><td>제5항</td><td>형사</td></tr>
<tr><td>제6항</td><td>인신보호</td></tr>
<tr><td>제7항</td><td>소년보호</td></tr>
<tr><td>제8항</td><td>가정보호</td></tr>
<tr><td>제9항</td><td>성매매관련보호</td></tr>
<tr><td>제10항</td><td>시 · 군법원</td></tr>
<tr><td>제11항</td><td>등기</td></tr>
<tr><td>제12항</td><td>가족관계등록</td></tr>
<tr><td>제13항</td><td>공탁</td></tr>
<tr><td>제14항</td><td>기타</td></tr>
<tr><td rowspan="3">부
록</td><td colspan="4">재판기관 구성표</td></tr>
<tr><td colspan="4">법원기구표</td></tr>
<tr><td colspan="4">전국 법원 관할구역도</td></tr>
</table>

[별첨 2] 2025 사법연감 세별표

<table>
<tr><th colspan="5">제3절 사건의 현황(세별표)</th></tr>
<tr><th>구분</th><th colspan="4">내용</th></tr>
<tr><td rowspan="20">제1항 민사</td><td rowspan="7">1. 민사본안사건
건수표</td><td rowspan="4">가. 제1심</td><td colspan="2">(1) 집 계</td></tr>
<tr><td colspan="2">(2) 합의사건</td></tr>
<tr><td colspan="2">(3) 단독사건</td></tr>
<tr><td colspan="2">(4) 소액사건</td></tr>
<tr><td colspan="3">나. 항소심</td></tr>
<tr><td colspan="3">다. 상고심</td></tr>
<tr><td colspan="3">라. 전자소송-접수</td></tr>
<tr><td colspan="3">마. 전자소송 쌍방동의건수</td></tr>
<tr><td colspan="3">바. 전자소송 의무기관 전자제출건수(제1심)-접수</td></tr>
<tr><td rowspan="13">2.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건수표</td><td rowspan="2">가. 제1심</td><td colspan="2">(1) 법원별(금년접수)</td></tr>
<tr><td colspan="2">(2) 처리내역별</td></tr>
<tr><td rowspan="3">나. 항소심</td><td colspan="2">(1) 법원별(금년접수)</td></tr>
<tr><td rowspan="2">(2) 처리내역별</td><td>(가) 고등법원</td></tr>
<tr><td>(나) 지방법원</td></tr>
<tr><td colspan="3">다. 상고심(사건종류별)</td></tr>
<tr><td rowspan="2">라. 전자소송
제1심</td><td colspan="2">(1) 법원별(금년접수)</td></tr>
<tr><td colspan="2">(2) 처리내역별</td></tr>
<tr><td rowspan="3">마. 전자소송
항소심</td><td colspan="2">(1) 법원별(금년접수)</td></tr>
<tr><td rowspan="2">(2) 처리내역별</td><td>(가) 고등법원</td></tr>
<tr><td>(나) 지방법원</td></tr>
<tr><td colspan="3">바. 전자소송 상고심(사건종류별)</td></tr>
<tr><td rowspan="5">3. 민사본안사건
청구소송물가액별
건수표
(금년접수)</td><td rowspan="5">가. 제1심</td><td colspan="2">(1) 집 계</td></tr>
<tr><td colspan="2">(2) 합의사건</td></tr>
<tr><td colspan="2">(3)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td></tr>
<tr><td colspan="2">(4) 소액사건</td></tr>
<tr><td colspan="2">(5) 종류별(집계)</td></tr>
</table>

구분	내용			
		나. 항소심	(1) 법원별	
			(2) 종류별	(가) 고등법원
				(나) 지방법원
		다. 상고심	(1) 사건별	
			(2) 종류별	
	4.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건수표	가. 제1심	(1) 집 계	
			(2) 합의사건	
			(3)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	
			(4) 소액사건	
		나. 항소심		
		다. 상고심		
		라. 전자소송 제1심	(1) 집 계	
			(2) 합의사건	
			(3)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	
			(4) 소액사건	
		마. 전자소송 항소심		
		바. 전자소송 상고심		
	5. 국가사건표	가. 제1심	(1) 법원별(금년접수)	
			(2) 처리내역별	
		나. 항소심	(1) 법원별(금년접수)	
			(2) 처리내역별	
		다. 상고심		
	6. 민사조정 사건표	가. 지방법원	(1) 조정신청	
			(2) 조정회부	(가) 조정담당판사 조정
				(나) 수소법원 조정
		나. 고등법원	(1) 조정담당판사 조정	
			(2) 수소법원 조정	
	7. 민사조정사건 처리기간별 건수표			
	8. 민사본안외 사건 건수표	가. 지방법원	(1) 집 계	
			(2) 민사 신청	(가) 집 계
				(나) 법원별 (금년접수-종류별)
				(다) 처리내역별

구분	내용				
				(라) 가압류	① 집 계
					② 합 의
					③ 단 독
					④ 동산
					⑤ 부동산
					⑥ 선박
					⑦ 항공기 · 건설기계
					⑧ 자동차
					⑨ 채권
					⑩ 그 밖의 재산권
				(마) 가처분	① 집 계
					② 합 의
					③ 단 독
					④ 동산
					⑤ 부동산
					⑥ 선박
					⑦ 항공기 · 건설기계
					⑧ 자동차
					⑨ 채권
					⑩ 회사사건
					⑪ 그 밖의 재산권
				(바) 소송 구조	
			(3)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비송사건	(가) 집 계	
				(나) 민사비송	
				(다) 상사비송	
				(라) 과태료	
			(4) 민사독촉		
			(5) 전자독촉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내용</th></tr>
<tr><td rowspan="20"></td><td rowspan="12"></td><td rowspan="11"></td><td rowspan="10">(6) 민사집행</td><td>(가) 집 계</td></tr>
<tr><td>(나) 경매사건</td></tr>
<tr><td>(다) 기타집행(배당절차)</td></tr>
<tr><td>(라) 기타집행(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td></tr>
<tr><td>(마) 기타집행(강제관리)</td></tr>
<tr><td>(바) 기타집행(대체집행)</td></tr>
<tr><td>(사) 기타집행(간접강제)</td></tr>
<tr><td>(아) 기타신청</td></tr>
<tr><td rowspan="2">(자) 경매사건 종류별 건수표</td><td>① 강제경매</td></tr>
<tr><td>②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td></tr>
<tr><td>(7) 민사항고</td></tr>
<tr><td rowspan="2">나. 고등법원</td><td>(1) 민사항고</td></tr>
<tr><td>(2) 민사신청</td></tr>
<tr><td colspan="2">다. 대법원</td></tr>
<tr><td rowspan="10">9. 도산관련 사건표</td><td colspan="2">가. 회생(합의)사건</td></tr>
<tr><td colspan="2">나. 회생(단독)사건</td></tr>
<tr><td colspan="2">다. 법인파산사건</td></tr>
<tr><td colspan="2">라. 개인파산사건</td></tr>
<tr><td colspan="2">마. 면책사건</td></tr>
<tr><td colspan="2">바. 신청에 의한 복권사건</td></tr>
<tr><td colspan="2">사. 개인회생사건</td></tr>
<tr><td colspan="2">아.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td></tr>
<tr><td colspan="2">자.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td></tr>
<tr><td colspan="2">차. 개인회생 조사확정사건</td></tr>
<tr><td colspan="2">카. 소송구조 신청 현황</td></tr>
<tr><td rowspan="3">제2항 가사</td><td rowspan="3">1. 가사소송사건 건수표</td><td rowspan="3">가. 제1심</td><td colspan="2">(1) 집 계</td></tr>
<tr><td colspan="2">(2) 합의사건</td></tr>
<tr><td colspan="2">(3) 단독사건</td></tr>
</table>

구분	내용			
		나. 항소심		
		다. 상고심		
		라. 전자소송-접수		
		마. 전자소송 쌍방동의건수		
	2. 가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가. 제1심	(1) 법원별(금년접수)	
			(2) 처리내역별	
		나. 항소심	(1) 법원별(금년접수)	
			(2) 처리내역별	(가) 고등법원
				(나) 지방법원
		다. 상고심		
		라. 전자소송 제1심	(1) 법원별(금년접수)	
			(2) 처리내역별	
	3. 이혼사건에 대한 병합사건 등 건수표(제1심)			
	4. 가사 다류사건 청구소송물가액별 건수표 (금년접수)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5. 가사소송사건 처리기간별 건수표	가. 제1심	(1) 집 계	
			(2) 합의사건	
			(3) 단독사건	
		나. 항소심		
		다. 상고심		
		라. 전자소송 제1심	(1) 집 계	
			(2) 합의사건	
			(3) 단독사건	
	6. 가사조정 사건표	가. 지방법원	(1) 조정신청	
			(2) 조정 회부	(가) 조정담당판사 조정
				(나) 수소법원 조정
		나. 고등법원	(1) 조정담당판사 조정	
			(2) 수소법원 조정	
	7. 가사조정사건 처리기간별 건수표	가. 지방법원		
		나. 고등법원		

구분	내용		
	8. 가사비송사건 건수표	가. 집 계	
		나. 라류사건	(1) 법원별(금년접수-종류별)
			(2) 처리내역별
			(3) 처리내역별-후견 유형별
		다. 마류사건	(1) 법원별(금년접수-종류별)
			(2) 처리내역별
	9. 가사신청사건 건수표	가. 지방법원	(1) 집 계
			(2) 법원별(금년접수)
			(3) 처리내역별
		나. 고등법원	
		다. 대법원	
	10. 가사항고사건 건수표		
	11. 가사재항고사건 건수표		
제3항 행정	1. 행정소송사건 건수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라. 전자소송-접수	
	2. 행정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가. 제1심	(1) 법원별(금년접수)
			(2) 처리내역별
		나. 항소심	(1) 법원별(금년접수)
			(2) 처리내역별
		다. 상고심	
	3. 행정소송사건 처리기간별 건수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라. 전자소송-제1심	
		마. 전자소송-항소심	
		바. 전자소송-상고심	
	4. 행정소송 미제사건 심리기간별 건수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5. 행정신청사건 건수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구분	내용		
	6. 행정항고사건 건수표		
	7. 행정재항고사건 건수표		
제4항 지식재산·선거	1. 지식재산소송 사건 건수표	가. 제1심(특허법원)	
		나. 상고심	
	2. 지식재산소송사건 처리기간별 건수표		
	3. 특허법원 지식재산신청사건표		
	4. 대법원 지식재산 재항고·신청사건표		
	5. 선거소송사건 건수표	가. 대법원 단심	
		나. 제1심	
		다. 상고심	
	6. 선거재항고·신청사건표		
	7. 제1심 선거신청사건표		
제5항 형사	1. 형사공판사건 인원수표	가. 제1심	(1) 집 계
			(2) 합의사건
			(3) 단독사건
		나. 정식재판청구사건	
		다. 집행유예선고시 보호관찰등 처분현황	
		라. 항소심	
		마. 상고심	
	2.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3.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19세 미만자 재판 인원수표		
	4.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19세 미만자 중요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		
	5.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별 인원수표	가. 제1심	(1) 집 계
			(2) 합의사건
			(3) 단독사건
		나. 항소심	
		다. 상고심	
	6.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합의·단독, 구속·불구속별 인원수표-금년접수		
	7. 제1심 형사공판사건 증인이 있는 사건수, 증인수-처리		
	8. 제1심 형사공판사건 즉일선고, 법정구속 인원수-처리, 궐석재판-기일		

구분	내용		
	9. 상소심 형사공판사건 결과 인원수표	가. 항소심	(1) 집 계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나. 상고심	
	10.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사건 처리 인원수표		
	11.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사건 처리기간별 인원수표		
	12.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표	가. 제1심	(1) 집 계
			(2) 합의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3) 단독사건(체포 · 구속적부심사 포함)
		나. 항소심	
		다. 상고심	
	13. 치료감호 사건 인원수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라. 신청 · 항고 · 재항고	
	14. 부착명령 사건 인원수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라. 신청 · 항고 · 재항고	
	15. 보호관찰 명령사건 인원수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라. 신청 · 항고 · 재항고	
	16. 치료명령 사건 인원수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라. 신청 · 항고 · 재항고	
	17. 약식명령 사건 인원수표	가. 약식사건	
		나. 전자약식사건	
	18. 즉결심판사건 인원수표		

구분	내용		
	19. 형사신청 사건표	가. 지방법원	(1) 집 계
			(2) 체포·구속적부심사
			(3) 보 석
			(4) 배상명령
			(5) 형집행유예취소
			(6) 증거보전
			(7) 제척·기피·회피
			(8) 압수물 환부·가환부
			(9) 상소권 회복
			(10) 형사보상
			(11) 사회봉사허가청구
			(12) 기 타
		나. 고등법원	(1) 집 계
			(2) 보 석
			(3) 배상명령
			(4) 제척·기피·회피
			(5) 증거보전
			(6) 압수물 환부·가환부
			(7) 상소권회복
			(8) 형사보상
			(9) 기 타
		다. 대법원	
	20. 영장발부 인원수표	가. 지방법원	
		나. 고등법원	
		다. 대법원	
	21. 형사항고·재항고 사건표	가. 형사항고 사건표	(1) 집 계
			(2) 보석에 대한 항고
			(3)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4) 구속의 취소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
			(5)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항고
			(6) 재심기각에 대한 항고
			(7) 기타결정에 대한 항고
		나. 형사준항고사건표	
		다. 형사재항고사건표	
	22. 재정신청사건 죄명별 인원수표		

구분	내용	
	23. 배상명령 사건 죄명별·금액별 건수표	가. 지방법원
		나. 고등법원
	24. 형사보상 처리 죄명별 건수표	가. 지방법원
		나. 고등법원
		다. 대법원
제6항 인신보호	1. 인신보호사건 인원수표	
	2. 인신보호 신청사건표	
	3. 인신보호 항고·재항고 사건표	가. 항 고
		나. 재항고
제7항 소년보호	1. 소년보호사건 인원수표	
	2. 소년보호 임시조치(가위탁결정) 및 처리 인원수표	
	3.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	
	4. 보호소년 신상 및 환경표	가. 연령별(처분시)
		나. 행위원인별
		다. 직업별
		라. 교육정도별
		마. 가족관계별
		바. 주거형태별
	5. 소년보호 신청사건표	
	6. 소년보호 항고·재항고사건표	
	7. 소년보호 집행감독사건표	
제8항 가정보호	1. 가정보호사건 인원수표	
	2. 가정보호 (재)항고·집행감독·임시조치·배상신청·국선보조인선 임사건표	가. 제1심
		나. 항 고
		다. 재항고
		라. 집행감독

구분	내용	
	3. 가정폭력 범죄원인별표 (제1심)	가. 행위원인별
		나. 가정구성원별
		다. 연령별
	4. 피해자 보호 명령 사건 인원수표	가. 제1심
		나. 항고 · 재항고
		다. 집행감독
	5. 아동보호 사건 인원수표	가. 제1심
		나. 신청 · 항고 · 재항고
		다. 집행감독
	6.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 인원수표	가. 제1심
		나. 항고 · 재항고
		다. 집행감독
제9항 성매매관련 보호	1. 성매매관련 보호사건 인원수표	
	2. 성매매관련 보호사건 (재)항고 · 신청사건표	
제10항 시 · 군법원	1. 시 · 군법원 사건현황-접수	
제11항 등 기	1. 등기사건표	가. 등 기
		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타
	2. 부동산 및 선박등기 등 접수사건표	
	3. 민법 등 법인등기 접수사건표	
	4. 상업등기 접수사건표	
	5. 등기관 1인당 부담 건수표	
제12항 가족관계등록	1.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2.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표	가. 집 계
		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다. 개 명
		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마. 협의이혼의사 확인
		바. 국적취득자 창성창본
		사.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아. 출생확인
		자. 기 타

구분	내용	
제13항 공탁	1. 금전공탁	
	2. 유가증권 공탁	
제14항 기타	1. 수입인지 수입액표	가. 지방법원
		나. 고등법원
		다. 대법원
	2. 벌과 금액표	가. 제1심
		나. 항소심
		다. 상고심
	3. 감치 · 과태료 사건 인원수표	가. 지방법원
		나. 고등법원
		다. 대법원

[별첨 3] 검증보고서 목차

보고서 / 목차		1회 (2005)	2회 (2007)	3회 (2009)	4회 (2011)	5회 (2013)	6회 (2015)	7회 (2017)	8회 (2019)	9회 (2021)	10회 (2023)	11회 (2025)
1		서론	서론	보고서 개요	보고서 개요	사건 개요	보고서 개요	보고서 개요	보고서 개요	보고서 개요	보고서 개요	보고서 개요
	1.1.	재판의 충실 · 신속화를 둘러싼 상황 및 신속화법의의 등	제2회 검증결과 공표에 대하여	첫머리(제3회 신속화 검증결과 공표에 대하여)	첫머리(제4회 신속화 검증결과 공표에 대하여)	민사 제1심 사건 등 개요	지방재판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지방재판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지방재판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1.2.	심리 장기화 요인	제2회 공표를 위한 검증작업 개요 및 본 보고서 개요 등에 대하여	본 보고서 신속화 검증 개요	본 보고서 신속화 검증 개요	형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지방재판소 형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등	지방재판소 형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등	지방재판소 형사통상 제1심 사건 개요 및 실정			
	1.3.	검증작업 개요 및 자리매김		검증검토회 실시 상황	검증검토회 실시 상황	가사사건 개요	가정재판소 가사 사건 개요 및 실정과 인사소송 사건의 개요	가정재판소 가사 사건 개요 및 실정과 인사소송 사건의 개요	가정재판소 가사 사건 개요 및 실정과 인사소송 사건의 개요			

목차 \ 보고서		1회 (2005)	2회 (2007)	3회 (2009)	4회 (2011)	5회 (2013)	6회 (2015)	7회 (2017)	8회 (2019)	9회 (2021)	10회 (2023)	11회 (2025)
	1.4.					상고심 소송 사건 개요						
2	지방재판소 민사소송 사건(제1심) 현황		민사소송 사건 분석	민사소송 사건 개요 등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지방재판소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지방재판소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지방재판소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과 재판소 대응	신속화 검증의 현지화	재판절차의 디지털화의 지금과 앞으로
	2.1.	민사소송 사건이란	지방재판소 민사소송 사건(제1심) 심리 현황	민사 제1심 소송사건 현황	민사 제1심 소송사건 현황	민사 제1심 소송사건 현황	민사 제1심 소송사건 현황	민사 제1심 소송사건 현황	민사 제1심 소송사건 현황	첫머리	첫머리	첫머리
	2.2.	민사소송의 공통 요소와 심리기간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고등재판소 민사소송 사건(항소심) 심리 현황	히어링 조사 결과	개별 사건 유형	개별 사건 유형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실정조사 개요와 검증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실정조사 개요와 검증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실정조사 개요와 검증	2020년 월별 사건 개요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연구회	민사소송 절차의 디지털화
	2.3.	심리기간의 경과년 추이와 지금까지의 노력 현황	민사소송 사건의 심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건 유형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과 재판소 대응	신속화 검증 회고	가사사건 절차 등의 디지털화

보고서 / 목차		1회 (2005)	2회 (2007)	3회 (2009)	4회 (2011)	5회 (2013)	6회 (2015)	7회 (2017)	8회 (2019)	9회 (2021)	10회 (2023)	11회 (2025)
	2.4.	전문지식을 요하는 소송 등에 관한 고찰								검증검토회 논의	검증검토회의 논의·현재 실시된 기획을 고려하여	검증검토회 논의
	2.5.	사건 수나 심리기간의 지역적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3		지방재판소의 형사소송 사건(제1심) 심리 현황	형사소송 사건 분석	형사소송 사건 현황 등	형사 제1심 소송 사건 현황	형사 제1심 소송 사건 현황	지방재판소 형사 제1심 소송 사건 현황 등	지방재판소 형사 제1심 소송 사건 현황 등	지방재판소 형사 통상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지방재판소 형사 통상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지방재판소 형사 통상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지방재판소 형사 통상 제1심 소송 사건 개요 및 실정
	3.1.	형사소송 개요	지방재판소 형사소송 사건(제1심) 심리 상황	형사통상 제1심 사건 현황	형사통상 제1심 사건 현황	형사통상 제1심 사건 현황	형사통상 제1심 사건 현황	형사통상 제1심 사건 현황	형사통상 제1심 사건 현황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상황	민사 제1심 소송 사건 등의 상황	민사 제1심 소송사건 등의 상황
	3.2.	형사소송의 심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등재판소 형사소송 사건(항소심) 심리 현황	부인(否認) 사건 심리기간 상황 등	부인사건 심리기간 상황 등	부인사건 심리기간 상황 등	재판원재판 검증	재판원재판 검증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실정조사 개요와 검증	민사 제1심 소송 사건실정 조사 결과	민사 제1심 소송 사건실정 조사 결과	민사 제1심 소송 사건실정 조사 결과

목차 \ 보고서		1회 (2005)	2회 (2007)	3회 (2009)	4회 (2011)	5회 (2013)	6회 (2015)	7회 (2017)	8회 (2019)	9회 (2021)	10회 (2023)	11회 (2025)
	3.3.	증거조사 절차와 심리기간 등의 관계	형사소송 사건 심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판전 정리절차 현황	경과 추이				검증검토회 논의	검증검토회 논의	검증검토회 논의
	3.4.	증인심문, 피고인질문, 감정, 검증 이외 증거조사 절차 그 외 절차와 심리기간의 관계			재판원재판 심리 현황	공판전 정리절차 현황				이후 검토 사항	이후 검토 사항	이후 검토 사항
	3.5.	증거조사 절차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재판원재판 실시 현황						
	3.6.	그 외 요인과 심리기간의 관계										
	3.7.	사건 수나 심리기간의 지역적 상황										

보고서 / 목차		1회 (2005)	2회 (2007)	3회 (2009)	4회 (2011)	5회 (2013)	6회 (2015)	7회 (2017)	8회 (2019)	9회 (2021)	10회 (2023)	11회 (2025)
4			가사사건 현황 등	가사사건 현황 등	가사사건 현황	가사사건 현황	가정재판소 가사사건 개요 및 실정, 인사소송 사건 현황	가정재판소 가사사건 개요 및 실정, 인사소송 사건 현황	가정재판소 가사사건 개요 및 실정, 인사소송 사건 현황	지방재판소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개요 및 실정	지방재판소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개요 및 실정	지방재판소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개요 및 실정
	4.1.		가사 사건이란	가사 사건이란	가사사건 현황	가사사건 현황	가사사건 현황	가사사건 현황	가사사건 현황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현황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현황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현황
	4.2.		가사사건 현황	가사사건 현황	개별 사건 유형 현황	개별 사건 유형 현황	가사사건 실정조사 개요와 검증	가사사건 실정조사 개요와 검증	가사사건 실정조사 개요와 검증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실정조사 결과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실정조사 결과	형사 통상 제1심 사건 실정조사 결과
	4.3.		민사소송 사건 분석	민사소송 사건 분석	최고재판소 소송사건 현황	상고심 소송사건 개요	인사소송 현황 등	인사소송 현황 등	인사소송 현황 등	검토검증회 논의	검토검증회 논의	검토검증회 논의
	4.4.									향후 검토 사항	향후 검토 사항	향후 검토 사항
							상고심 소송사건 개요	상고심 소송사건 개요	상고심 소송사건 개요	가정재판소 가사사건 개요 및 실정, 인사소송 사건 현황	가정재판소 가사사건 개요 및 실정, 인사소송 사건 현황	가정재판소 가사사건 개요 및 실정, 인사소송 사건 현황

목차 \ 보고서		1회 (2005)	2회 (2007)	3회 (2009)	4회 (2011)	5회 (2013)	6회 (2015)	7회 (2017)	8회 (2019)	9회 (2021)	10회 (2023)	11회 (2025)
5	5.1.		민사소송 사건 일반에 공통되는 장기화 요인	민사소송 사건 일반에 공통되는 장기화 요인	첫머리	고등재판소 공소심 소송 사건 현황	고등재판소 공소심 소송 사건 현황	고등재판소 공소심 소송 사건 현황	고등재판소 공소심 소송 사건 현황	가사사건 현황	가사사건 현황	가사사건 현황
	5.2.		의료 소송 장기화 요인	의료 소송 장기화 요인	민사·행정 소송 사건 개요 등	최고재판소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최고재판소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최고재판소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최고재판소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인사소송 현황 등	인사소송 현황 등	인사소송 현황 등
	5.3.		건축 소송 장기화 요인	건축 소송 장기화 요인	형사소송 사건 현황					가사사건 및 인사소송 사건 실정조사 결과	가사사건 및 인사소송 사건 실정조사 결과	가사사건 및 인사소송 사건 실정조사 결과
	5.4.		지적재판권 소송 장기화 요인	지적재판권 소송 장기화 요인						검토검증회 논의	검토검증회 논의	검토검증회 논의
	5.5.		노동 소송 장기화 요인	노동 소송 장기화 요인						향후 검토 사항	향후 검토 사항	향후 검토 사항
	5.6.				시책	사회적 요인						

보고서 / 목차		1회 (2005)	2회 (2007)	3회 (2009)	4회 (2011)	5회 (2013)	6회 (2015)	7회 (2017)	8회 (2019)	9회 (2021)	10회 (2023)	11회 (2025)
6		형사소송 사건 분석	형사소송 사건 분석	형사소송 사건 분석	재판의 적정·충실·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등	사회적 요인 검증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6.1.		공판전 절차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 절차 흐름	공판전 절차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 절차 흐름	총론	총론				고등재판소 공소심소송 사건 현황	고등재판소 공소심소송 사건 현황	고등재판소 공소심소송 사건 현황
	6.2.		공판전 절차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 사건 심리 현황	제3회 보고서가 지적한 장기화 요인의 계속적 검증		법적 분쟁 일반의 동향				최고재판소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최고재판소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최고재판소 상고심 소송 사건 현황
	6.3.			민사소송 사건 일반에 공통되는 장기화 요인에 관한 시책		재판외 분쟁처리의 전반적 상황						

목차 \ 보고서		1회 (2005)	2회 (2007)	3회 (2009)	4회 (2011)	5회 (2013)	6회 (2015)	7회 (2017)	8회 (2019)	9회 (2021)	10회 (2023)	11회 (2025)
	6.4.			개별 사건유형에 특징적 장기화 요인에 관한 시책		분쟁유형별 검토						
	6.5.			재판소 및 변호사의 집무대세 등에 관한 요인에 관한 시책	정리							
7			가사사건 분석									
	7.1.		첫머리									
	7.2.		유산분할 사건 현황									
	7.3.		유산분할 사건 장기화 요인									

보고서 / 목차		1회 (2005)	2회 (2007)	3회 (2009)	4회 (2011)	5회 (2013)	6회 (2015)	7회 (2017)	8회 (2019)	9회 (2021)	10회 (2023)	11회 (2025)
	7.4.		유산분할 사건 심리절차 패턴별 장기화 요인에 대하여									
	7.5.		정리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별첨 4] 사법제도개혁추진법 국문번역문

2001년 11월 16일 법률 제11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더욱 진전되고 그 외 안팎의 사회경제의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사법이 해야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2001년 6월 12일에 내각에 제출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의 취지에 따라 추진되는 사법제도의 개혁과 기반의 정비(이하 '사법제도개혁'이라 함.)에 관해 그 기본적인 이념 및 방침, 국가의 책무 및 그 외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더불어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는 것 등에 의해 이것을 종합적 및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법제도개혁은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바르고 공정한 절차 하에서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효적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 폭넓은 교양, 풍부한 인간성 및 직업윤리를 갖춘 다수의 법조인을 양성 및 확보하며, 그 외 사법제도를 뒷받침하는 체제의 강화 및 충실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를 향상시키며 이로써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 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를 지닌다.

제4조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책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의 사명 및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서 사법제도개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2장 기본방침

제5조 (기본방침) 사법제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토대로 추진하도록 한다.

1.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바르고 공정한 절차 하에서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효적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사에 관하여 그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사건 및 그 외의 사건에 대해 재판소에 있어서 절차를 더욱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고 재판소에 있어서 절차를 이용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며 재판 외에 있어서 분쟁처리제도를 확충함과 함께 형사에 관하여 재판소에 있어서 절차를 더욱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공적인 변호제

도를 정비하며 검찰심사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

2. 사법제도를 뒷받침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법조인의 대폭적인 증원, 재판소, 검찰청 등의 인적 체제의 강화, 법조인 양성 교육을 하는 대학원에 관한 제도의 정비, 그 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의 재검토,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능력 및 자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정비 등을 도모할 것.
3.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이 재판관과 함께 형사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도모할 것.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전 조에서 규정하는 기본방침을 토대로 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및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

제7조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 ① 정부는 정부가 사법제도개혁에 관해 강구해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이라 함.)을 정해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안을 작성하고 각의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전 2항의 규정은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해서 준용한다.

제4장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제8조 (설치) 사법제도개혁을 종합적 및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이하 '본부'라 함.)를 설치한다.

제9조 (소관사무) 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사법제도개혁의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에 관한 것.
2.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것.
3. 사법제도개혁의 종합적 및 집중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률안 및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 것.
4. 사법제도개혁의 추진에 관한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와의 연락 조정에 관한 것.

제10조 (조직) 본부는 사법제도개혁추진 본부장, 사법제도개혁추진 부본부장 및 사법제도개혁추진 본부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사법제도개혁추진 본부장) ① 본부의 장은 사법제도개혁추진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함)으로 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이를 맡는다.
② 본부장은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관 부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2조 (사법제도개혁추진 부본부장) ① 본부에 사법제도개혁추진 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이라 함)을 두고 국무대신이 이를 맡는다.
② 부본부장은 본부장의 직무를 돕는다.

제13조 (사법제도개혁추진 본부원) ① 본부에 사법제도개혁추진 본부원(이하 '본부원'이라 함.)을 둔다.
② 본부원은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국무대신이 맡는다.

제14조 (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① 본부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최고재판소 및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대해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설명 및 그 외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가 있다.
② 본부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 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국) ① 본부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그 외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관계가 있는 다른 직을 갖고 있는 자가 맡을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국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설치기한) 본부는 그 설치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두도록 한다.

제17조 (주임대신) 본부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내각법(1947년 법률 제5호)」의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제18조 (정령 위임)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5]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국문번역문

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07호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사법을 통하여 권리 · 이익이 적절히 실현되도록 하고, 그 외 요구되는 역할을 사법이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정하며 충실한 절차 하에서 재판이 신속히 행하여지는 것이 불가결한 점, 내외의 사회경제 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재판이 보다 신속히 행하여지는 것에 관한 국민의 요청에 답하는 것이 긴요하게 된 점 등을 고려, 재판의 신속화에 관해, 그 취지, 국가의 책임 및 그 외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1심의 소송절차를 비롯한 재판소에 있어서의 절차 전체의 일층 신속화를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의신속화) ① 재판의 신속화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2년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이를 종료하고, 그 외의 재판소에 있어서의 절차에 관해서도 각각의 절차에 응하여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이를 종료시킴을 목표로 하여, 충실한 절차를 실시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체제의 정비를 도모함에 의해 행하여지도록 한다.
② 재판의 신속화에 관련한 전항의 제도 및 체제의 정비는, 소송절차 그 외의 재판소에 있어서의 절차의 정비, 법조인구의 대폭적인 증가, 재판소 및 검찰청의 인적체제의 충실, 국민에 있어서 이용하기 쉬운 변호사 체제의 정비 등에 의해 행하여지도록 한다.
③ 재판의 신속화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실시됨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판의 신속화(전조에 규정한 재판의 신속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제4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전조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그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일본변호사연합회의책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의 사명 및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판의 신속화에 관해, 국민에 의한 변호사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 태세의 정비 기타 변호사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도록 한다.

제6조 (재판소의 책무) 수소재판소 기타 재판소에 있어서의 절차를 실시하는 자는, 충실한 절차를 실시함에 의해, 가능한 한 재판의 신속화에 관련된 제2조 제1항의 목표를 실현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제7조 (당사자 등의 책무) ① 당사자, 대리인, 변호인 기타의 재판소에 있어서의 절차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행하는 자(다음 항에서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는 가능한 한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제2조 제1항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권리는 성실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 등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최고재판소에 의한 검증) ① 최고재판소는, 재판의 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재판소에 있어서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의 상황, 그 장기화의 원인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종합적, 객관적, 그리고 다각적인 검증을 행하고, 그 결과를 2년마다 국민에게 명확히 하기 위해 공표하도록 한다.
② 전항의 검증의 결과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고재판소에 의한 검증의 결과의 최초 공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결과의 최초 공표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행하도록 한다.

(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의 상황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 201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호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	2014. 12. 30.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2. 27.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박원규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호	2015. 2. 27.
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황승태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양은상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최은정	2015. 6. 10.
8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황승태	2015. 6. 26.
9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5. 6. 30.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변지영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김형진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채연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변지영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장수영 이덕환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하민경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양시훈 최유경	2015. 12. 23.

▣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수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계인국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2016. 2. 26.
7	압수 ·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 하민경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 안문희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김주석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 양시훈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16. 11. 18.

▣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현덕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 김정환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7. 5. 17.
8	북한의 신분 · 공민 ·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조호성 김주완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변지영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윤정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오세용 박원규 이덕환 장수영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7. 11. 21.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표현덕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송현정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7. 12. 28.

▣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하민경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김정환 박준선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하상익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 표현덕	2018. 8. 31.
8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김현범 오세용 최유나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김주경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모성준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 김대홍 양은상 최유나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장지용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8. 12. 27.
15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이혜영	2018. 12. 28.
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성수	2018. 12. 28.
17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송현정	2018. 12. 31.

▣ 2019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이정은	2019. 1. 28.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9. 1. 30.
3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9. 2. 27.
4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하민경	2019. 2. 28.
5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이선미	2019. 3. 29.
6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	서현웅	2019. 6. 13.
7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종훈	2019. 6. 19.
8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김윤정	2019. 7. 24.
9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정	2019. 7. 29.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9. 8. 9.
11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오	2019. 8. 23.
1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	2019. 11. 6.
13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1. 25.
14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2019. 12. 18.
1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김현범	2019. 12. 27.
16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차성안	2019. 12. 31.
17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송현정	2019. 12. 31.

▣ 2020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0. 2. 19.
2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최용훈	2020. 2. 28.
3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이선미 박용철	2020. 3. 11.
4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20. 3. 17.
5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김효정 장지용	2020. 3. 20.
6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이종엽	2020. 3. 31.
7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0. 3. 31.
8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성민	2020. 4. 10.
9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성대규	2020. 4. 27.
10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0. 4. 29.
11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0. 5. 14.
12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김신유	2020. 6. 18.
13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오	2020. 7. 21.
14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	2020. 7. 24.
15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0. 9. 23.
16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봉철	2020. 11. 3.
17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백광균	2020. 12. 8.
18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	이지민	2020. 12. 22.
19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2020. 12. 23.
20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이은빈	2020. 12. 31.
현안 1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정성민 백광균	2020. 11. 6.

▣ 2021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김신유	2021. 2. 26.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박병민	2021. 3. 12.
3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 · 직렬 구조 개편 방안	이학구	2021. 3. 18.
4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강영재	2021. 3. 18.
5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정호경	2021. 3. 23.
6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2021. 3. 31.
7	체제 전환기의 국내 · 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과 통일 한국에의 함의	이혜영	2021. 3. 31.
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별책: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실무편람 (2019)]	이민형	2021. 4. 23.
9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	김동현	2021. 4. 30.
10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윤찬영	2021. 5. 11.
11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	성대규	2021. 5. 14.
12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 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1. 5. 24.
13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1. 5. 31.
14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2021. 8. 26.
15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나수경	2021. 9. 17.
16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박우경	2021. 9. 30.
17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이상훈 정성민 백광균	2021. 10. 1.
18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1. 10. 18.
19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	김정환	2021. 10. 29.
20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2021. 10. 29.
21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1. 12. 10.
현안 1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이재찬	2021. 10. 14.

▣ 2022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베트남 · 라오스 · 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2. 1. 10.
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민 이주연	2022. 1. 14.
3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강영재	2022. 2. 18.
4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박미정	2022. 3. 4.
5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김주석	2022. 3. 14.
6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이은빈	2022. 3. 17.
7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2022. 3. 22.
8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 이혜영	2022. 4. 14.
9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영	2022. 5. 6.
10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2022. 5. 20.
11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	이상훈	2022. 7. 15.
1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2022. 8. 5.
13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2022. 8. 16.
14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2. 8. 18.
15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2. 8. 22.
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박우경	2022. 10. 31.
17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2. 10. 31.
18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2. 11. 3.
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정 이학구	2022. 11. 11.
2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2. 12. 29.
현안 1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연	2022. 7. 8.
현안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정현희	2022. 12. 12.

▣ 2023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임종미	2023. 2. 10.
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3. 2. 13.
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김주석	2023. 2. 28.
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	신명훈	2023. 2. 28.
5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홍보람	2023. 3. 10.
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3. 3. 31.
7	법원의 압수물 보관 · 관리 개선방안	권경선	2023. 4. 21.
8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두얼	2023. 5. 19.
9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현섭	2023. 5. 30.
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권미연	2023. 6. 12.
1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탁상진	2023. 6. 26.
12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3. 8. 14.
13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3. 11. 30.
14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3. 12. 26.
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 · 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23. 12. 27.
16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서용성 이상훈	2023. 12. 28.
17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2023. 12. 28.
18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3. 12. 29.
19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3. 12. 30.
20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3. 12. 30.
21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방안	정승연	2023. 12. 30.

▣ 202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김혜진	2024. 2. 22.
2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4. 2. 26.
3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정현희	2024. 2. 28.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4. 2. 29.
5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4. 2. 29.
6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이종구	2024. 3. 11.
7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선	2024. 4. 24.
8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	임성민	2024. 5. 20.
9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이영창	2024. 5. 21.
10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진현섭	2024. 6. 3.
11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	탁상진	2024. 6. 28.
12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 · 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조미선	2024. 7. 8.
1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권미연	2024. 8. 27.
14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4. 9. 9.
1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안원주	2024. 9. 10.
16	인공지능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연구	허성욱	2024. 12. 11.
17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유영국	2024. 12. 26.
18	재개발 · 재건축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이종구	2024. 12. 27.
19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별책: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권형관	2024. 12. 31.
20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4. 12. 31.

▣ 202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대석	2025. 3. 5.
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5. 3. 5.
3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이혜림	2025. 4. 23.
4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봉철	2025. 5. 14.
5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신권철	2025. 5. 20.
6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류미리	2025. 5. 27.
7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조미선	2025. 7. 10.
8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박진영	2025. 7. 11.
9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민	2025. 7. 17.
10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심병준	2025. 7. 23.
11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5. 9. 25.
12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영창 홍보람	2025. 9. 26.
13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욱	2025. 12. 29.
현안 1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5. 4. 7.
현안 2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김효정	2025. 4. 8.
현안 3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5. 4. 11.
현안 4	몰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유인규	2025. 8. 20.
현안 5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을 중심으로 –	안원주	2025. 9. 10.
현안 6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홍보람	2025. 12. 12.
현안 7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서용성	2025. 12. 30.

▣ 202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김미란	2026. 1. 29.
2	유언증서 등록 · 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준	2026. 1. 30.
3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	이현호	2026. 2. 5.
4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영하	2026. 2. 12.
5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설동윤	2026. 4. 30.
6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 –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이혜림	2026. 5. 18.
7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6. 5. 27.
8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우용	2026. 6. 30.
9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6. 7. 16.
10	준거법의 지정, 조사 및 해석 · 적용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6. 7. 23.
11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6. 7. 24.
12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헌	2026. 7. 31.
13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유리	2026. 8. 6.
14	의료조력사 법제화에 관한 연구	김성돈	2026. 8. 19.
15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	박진영	2026. 8. 20.
현안 1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윤동현	2026. 3. 10.
현안 2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6. 3. 19.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

2026년 8월 5일 인쇄
2026년 8월 20일 발행

발 행 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 쇄 처 (주)홍디자인
TEL 02-464-5167

〈비매품〉

1. 본 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2.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423-9 95360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 9,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비매품
95360
9 791161 684239
ISBN 979-11-6168-423-9